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통한 KOICA의 대 아프리카 지원방안

최민경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통한 KOICA의 대 아프리카 지원방안

최 민 경

KOICA
한국국제협력단

목차 | Contents

약어	10
요약	13
서론	24
제 1 장 아프리카 경제와 무역	32
1. 아프리카의 경제현황	32
2. 아프리카의 무역관련 개발과제	38
2.1. 농업(Agriculture)	38
2.2. 인프라(Infrastructure)	43
2.3. 무역 및 투자(Trade and Investment)	45
2.4. 누적채무문제(Debt Problems)	52
3.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 및 경제협력	56
제 2 장 무역을 위한 원조(AfT)와 빈곤감소	66
1. 무역을 위한 원조의 개념	67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국제적 흐름	71
2.1. 시대별 추이	71
2.2. 공여기관의 무역을 위한 원조와 파리선언	81
3. 무역을 위한 원조의 규모	88
3.1. 공여기관의 무역을 위한 원조규모	90
3.2. 지역적 및 소득그룹별 분포	90
3.3. 무역을 위한 원조와 농업	93
4. 무역을 위한 원조와 민관협력(PPP)	94
5. 무역을 위한 원조의 과제	96
제 3 장 OECD/DAC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 98	
1. 유럽위원회(EC)	98
1.1. EC의 무역관련 원조정책 및 현황	99
1.2. EC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사례	105
2. 독일	108
2.1. 독일의 무역관련 원조정책 및 현황	108
2.2. 독일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사례	113

3. 미국	115
3.1. 미국의 무역관련 원조정책 및 현황	116
3.2. 미국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사례	124
4. 스웨덴	127
4.1. 스웨덴의 무역관련 원조정책 및 현황	127
4.2. 스웨덴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사례	134
5. 영국	136
5.1. 영국의 무역관련 원조정책 및 현황	137
5.2. 영국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사례	143
6. 일본	147
6.1. 일본의 무역관련 원조정책 및 현황	147
6.2. 일본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사례	154
7. 기타 회원국	159
7.1. 노르웨이	159
7.2. 덴마크	161
7.3. 캐나다	163
7.4. 핀란드	164
8. 선진공여국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66

제 4 장 KOICA의 대 아프리카 무역을 위한 원조(AfT) 방안 168

1. 우리정부의 '무역을 위한 원조' 방침	169
2. KOICA의 대 아프리카 지원과 무역관련 원조현황	172
2.1. KOICA의 대 아프리카 지원정책 및 실적	172
2.2. 우리정부의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TRTA/CB)' 실적	175
2.3. KOICA의 무역관련 원조전략 및 분야별 실적	177
3. 향후 추진방향	193
3.1. KOICA의 대아프리카 '무역을 위한 원조(AfT)' 의의	193
3.2. KOICA의 대아프리카 '무역을 위한 원조(AfT)' 전략	195
3.3. 대 아프리카 '무역을 위한 원조' 사업모델	208

결론 212

별첨(APPENDIX) 216

참고문헌 236

표 목차

〈표 1.1〉 아프리카의 국가유형별 GDP 성장률(1996~2005년)	34
〈표 1.2〉 아프리카의 10대 수출국(2006년도)	35
〈표 1.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열악한 인프라서비스	44
〈표 1.4〉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무역장벽	46
〈표 1.5〉 대 아프리카 FDI의 순 흐름	48
〈표 1.6〉 OECD/DAC의 사하라이남 부채탕감과 ODA규모 (2000~2005)	54
〈표 2.1〉 '무역을 위한 원조'의 정의 및 내용	67
〈표 2.2〉 '무역을 위한 원조'의 주요 국제회의 및 이니셔티브 (2000년대)	79
〈표 2.3〉 '무역을 위한 원조'의 추이(2002~2005년)	88
〈표 2.4〉 '무역을 위한 원조'의 10대 공여기관 (2002~2005년 평균)	90
〈표 2.5〉 대 아프리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실적 (2002~2005년)	91
〈표 2.6〉 아프리카지역의 '무역을 위한 원조' 수혜현황 (2002~2005년)	92
〈표 3.1〉 EC와 EU회원국의 '무역관련 지원(TRA)'실적	104
〈표 3.2〉 BMZ 무역프로그램의 개요	110
〈표 3.3〉 독일의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TRTA/CB)' 실적	112
〈표 3.4〉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상의 국가지위	117
〈표 3.5〉 '아프리카 글로벌 경쟁력강화 이니셔티브 (AGC)'의 자금배분	119
〈표 3.6〉 DFID의 무역관련 지원 추세	138
〈표 3.7〉 영국 무역산업부(DTI)의 '무역을 위한 원조' 정책	139
〈표 3.8〉 DFID의 '무역을 위한 원조' 우선분야	141
〈표 3.9〉 JICA의 무역 및 투자 개발전략목표	151
〈표 3.10〉 JICA의 무역관련 지원 안건(2008년 4월 현재)	154
〈표 4.1〉 KOICA 지역별/분야별 실적 총괄표(2007년도)	173
〈표 4.2〉 아프리카 지역 상위 5대 협력대상국(2007년도)	174
〈표 4.3〉 행정제도분야의 '무역을 위한 원조(AfT)'관련 사업현황(2007년도)	182
〈표 4.4〉 행정제도분야의 대 아프리카 AfT 세부현황(2007년도)	183

〈표 4.5〉 지역개발분야의 '무역을 위한 원조(AiT)'관련 사업현황(2007년도)	186
〈표 4.6〉 정보통신분야의 '무역을 위한 원조(AiT)'관련 사업현황(2007년도)	187
〈표 4.7〉 산업에너지분야 지역별 지원실적 (2007년도)	188
〈표 4.8〉 산업에너지분야 아프리카지원 세부내역 (2007년도)	189
〈표 4.9〉 KOICA의 다자간 '무역을 위한 원조' 실적(2007년도)	191
〈표 4.10〉 KOICA의 AiT 사업모델	208

그림 목차

〈그림 1.1〉 아프리카의 국가유형별 수출성장률 (2003-2006)	35
〈그림 1.2〉 아프리카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37
〈그림 1.3〉 아프리카지역의 무역 및 경제기구	38
〈그림 1.4〉 아프리카의 수출산품별 국제 농산물무역 비율(1985-2006)	40
〈그림 1.5〉 아프리카의 인프라 공공지출 감소추이	45
〈그림 1.6〉 지역별 금융 및 인프라부족 현황	49
〈그림 1.7〉 FDI의 지역별 유입(2000-2006년)	50
〈그림 1.8〉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역량 추이	58
〈그림 1.9〉 중국의 대 아프리카 수출입 추이 (1995-2005년)	59
〈그림 2.1〉 '무역을 위한 원조'의 유형범주화	68
〈그림 2.2〉 아프리카지역의 수출확대 장벽	70
〈그림 2.3〉 효과적인 '무역을 위한 원조' 파트너십	86
〈그림 2.4〉 무역을 위한 원조의 세부배분 추이 (2002-2005년)	89
〈그림 2.5〉 '무역을 위한 원조'의 지리적 배분 (2002-2005년 평균)	91
〈그림 2.6〉 '무역을 위한 원조'와 아프리카 농업원조의 관계	93
〈그림 3.1〉 EC와 EU회원국의 '무역관련 지원 (TRA)' 추이	104
〈그림 3.2〉 EC의 지역별 '무역관련 지원(TRA)' 현황(2001-2004)	105
〈그림 3.3〉 독일의 지역별 '무역을 위한 원조' 현황(2002년도)	112
〈그림 3.4〉 미국의 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무역역량강화 (TCB)'지원 추이	122
〈그림 3.5〉 미국의 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무역역량강화 (TCB)'지원- 분야별 비율	122
〈그림 3.6〉 케냐 칠리고추(African Birds Eye) 수출증대 프로세스	126
〈그림 3.7〉 Sida의 '무역관련 지원(TRA)' 추이(2004-2007)	132
〈그림 3.8〉 Sida의 '무역관련 지원(TRA)' 배분비율 (2007년도)	133
〈그림 3.9〉 Sida의 지역별 '무역관련 지원(TRA)' 현황	134

〈그림 3.10〉 영국의 주요 '무역을 위한 원조' 추이 (2001~2006)	143
〈그림 3.11〉 JICA의 무역 및 투자관련 협력사업 체계도	152
〈그림 3.12〉 일본의 AIT 규모(2002~2005년 평균)	153
〈그림 3.13〉 노르웨이의 다자기구에 대한 자금기여 (2007년도)	160
〈그림 3.14〉 핀란드의 '무역을 위한 원조' 행동계획 (2008~2011)	165
〈그림 4.1〉 KOICA의 대 아프리카 원조추이(2003~2007년)	173
〈그림 4.2〉 우리나라의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TRTA/CB)' 추이(2001~2007)	176
〈그림 4.3〉 OECD/DAC 주요 회원국과의 '무역관련 기술 지원 및 역량강화(TRTA/CB)'의 규모 비교 (2006년도)	176
〈그림 4.4〉 농업원조와 우리나라의 농업무역정책과의 관계	202

Box. 목차

〈Box 1.1〉 아프리카무역의 역사적 배경	52
〈Box 1.2〉 아프리카와 국제개발원조	55
〈Box 1.3〉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	61
〈Box 2.1〉 역량개발과 '무역을 위한 원조'	71
〈Box 2.2〉 도하개발어젠다(DDA)의 교섭분야	73
〈Box 2.3〉 '통합체제(IF)'란	78
〈Box 2.4〉 다자기구 및 지역개발기구의 '무역을 위한 원조'	86
〈Box 3.1〉 EU의 '공동농업정책(CAP)'	103
〈Box 3.2〉 EU의 대 아프리카 무역협정	107
〈Box 3.3〉 USAID의 지역별 '아프리카 글로벌 경쟁력강화 허브 (African Global Competitiveness Hubs)' 추진현황	123
〈Box 3.4〉 미국 MCC의 무역을 위한 원조	126
〈Box 3.5〉 Sida의 '아프리카 무역정책 훈련센터'	131
〈Box 3.6〉 영국과 네덜란드의 케냐 농산물 수출지원	146
〈Box 3.7〉 일본의 경제파트너십협정(EPA) 추진현황	150
〈Box 3.8〉 TICAD IV와 '무역을 위한 원조'	158
〈Box 4.1〉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컨퍼런스(KOAFEC)'와 유상원조	171
〈Box 4.2〉 KOICA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2008~2010)' 중 행정제도분야의 무역관련 지원 전략	179
〈Box 4.3〉 KOICA의 협력대상국의 무역개발니즈 사례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의 경우)	184
〈Box 4.4〉 우리나라의 최빈국(LDCs) 무관세 적용현황	207

약어(Acronyms)

별첨(APPENDIX) 목차

APPENDIX 1. 2008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국제개발지표(WDI)	216
APPENDIX 2. '무역을 위한 원조(AIT)': 공여국 및 주요 분야별(2002~2005년 평균)	217
APPENDIX 3. EU회원국의 '무역관련 원조(TRA)' 규모 (2001~2006)	218
APPENDIX 4. 「EU '무역을 위한 원조(AIT)' 전략」	220
APPENDIX 5. 우리정부의 제1차 Global Aid-for- Trade Review연설문	234

약 어	정식명칭	한국어역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기금
AfT	Aid for Trade	무역을 위한 원조
AGOA	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아프리카 성장기회법
AITIC	Agency for International Trade Information and Cooperation	국제통상정보협력기구
AMU	Arab Maghreb Union	아랍 마그레브 연합
AU	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BMZ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연방경제협력개발부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캐나다국제개발기관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 Southern Africa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SOs	Civil Society Organisations	시민사회조직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DDAGTF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도하개발어젠더 글로벌 신탁기금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국제개발부
EAC	East African Community	동아프리카 공동체
EC	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ern African Studies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EDF	European Development Fund	유럽개발기금
EIF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강화된 통합체제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직접투자
FEMCOM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s of Business in COMESA	COMESA 여성기업가협회연맹
GTZ	German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독일기술협력공사
HIPC	Highly Indebted Poor Country	고채무빈곤국

약 어	정식명칭	한국어역
IA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Group	미주개발은행그룹
IF	Integrated Framework	통합체제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	국제무역센터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JITAP	Joint Integrated Assistance Program	공동기술지원계획
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독일부흥금융금고
KOAFEC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컨퍼런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천년도전법인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천년개발계획
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비 농산물 시장접근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아프리카개발을위한새로운파트너십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파트너십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스웨덴국제개발협력기관
STDF	Standards and Trade Development Facility	규범 및 무역개발기금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TCB	Trade Capacity Building	무역역량강화
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아프리카개발회의
TRA	Trade-related Assistance	무역관련 지원
TRTA/CB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Capacity Building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약 어	정식명칭	한국어역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청
WAEMU	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서부아프리카 경제통화 연합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요 약

오늘날 많은 개도국들은 다자무역협상과 선진국들의 특혜시장접근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반의 미발달, 사회경제인프라의 부족, 무역역량부족 등으로 국제무역참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역자유화는 경쟁을 통한 효율적 자원분배, 재원 및 서비스의 선택기회 확대,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보호정책의 혜택을 누려온 개도국의 현지산업 및 기업들은 경쟁력부족으로 국제무역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해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가맹국 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원산지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유무역협정(FTA)가맹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인증 받을 필요가 있다. 반면 많은 개도국이 국제적 원산지규정의 충족을 위한 기술 및 지식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민족분쟁, 기아, 감염성 질환(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 낮은 취학률, 누적된 채무문제, 식량문제와 낮은 농업생산성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국내적 개발과제와 함께, 선진국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제도 및 정책, 정부의 역량, 거버넌스, 거시경제정책,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 및 부가가치산품의 발굴 등이 기타 개도국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들은 개도국과의 경제 및 무역통합과 개도국의 무역제도정비 및 역량강화 등 개도국의 무역활성화와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에 대비한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 AfT)'를 ODA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원조보다 무역(trade, not aid)"을 요청하는 개도국의 니즈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무역을 위한 원조(AfT)'에 대한 이해 및 정책이 부재하다. 특히 2006년 3월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시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the Korea's Initiative for Africa's Development)'를 계기로 최빈국 중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원조가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 보건의료, 지역개발 등 협력대상국의 기본적 니즈(BHN)가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일관적인 정책이 부재한 단편적인 무역관련(trade-related)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지역의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프리카의 무역개발현황과 국제원조기반 및 선진공여국의 무역 및 투자관련 지원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대 아프리카 빈곤감소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AfT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1장에서는 최근 석유 및 광물자원가격의 급등, 정치적 안정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자의 증가, 중국 및 인도 등의 신흥공여국의 투자증가 등의 요인으로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아프리카 경제가 국제무역시스템에 동참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을 농업과 인프라, 무역과 투자를 통해 검토하고, 특히 최근 중국 등 신흥공여국이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발원조가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아프리카의 일부국가는 석유 및 광물자원가격의 급등, 정치적 안정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자의 증가, 중국 및 인도 등의 신흥공여국의 투자증가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자원가격의 세계적인 급등과 민간자금 및 ODA를 활용한 인프라정비로 인해 지금까지 내륙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우송인프라 부족으로 채산성이 없었던 아프리카의 자원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세계은행의 2008년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에 의하면 200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약 5.6%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그 중 앙골라를 포함한 16개국은 18.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음이 보고되고 있다. 석유수출을 포함한 아프리카 전체의 수출무역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수출총액은 2005년 대비 21% 상승한 3,609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전 세계 무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 2.99%에 불과하며, 1960-70년대의 약 5%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프리카지역의 외환 및 시장접근성 향상, 해외직접투자(FDI) 유도, 기술전수, 국내생산성 및 고용촉진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국제무역시스템 참가를 지원하는 것, 즉 무역을 위한 원조(AfT)가 공여국 개발원조의 주요 분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어 세부적인 무역과제를 농업, 인프라, 무역 및 투자, 누적채무문제로 구분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우선 농업분야에서는 높은 인구증가율, 토양 및 환경악화로 인한 식량문제와 낮은 농업생산성 문제와 함께, 환금성작물 중심의 수출구조로 가격변동이 심하여 동일 작물을 재배할 시 농산물 가격파동이 일어날 리스크도 크다. 기타, 엄격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술부족 및 선진국의 농업보조금문제도 개도국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기회보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의 열악한 인프라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내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지역 간 무역통합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예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방기(Bangui)의 공장 또는 농장에서 출하한 수출 컨테이너가 인근 항만까지 우송되어 관세 및 행정, 항만절차 등을 거쳐 배에 선적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16일이라 한다. 반면, 중국, 말레이시아, 칠레의 경우 단 20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 아프리카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와 비효율적인 관세 및 행정시스템 현황을 가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무역 및 투자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선진국의 높은 관세 및 쿼터적용, 선진국 농산물(설탕, 면화 등)에 대한 과도한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무역시스템 왜곡, 선진국의 식품안전성 관련 환경기준, 위생기준 등의 비관세 장벽과 같은 국제적 무역장벽과 동시에 부패, 비효율적인 관세행정제도, 효과적인 재산권보호 시스템의 부재, 취약한 경제 및 금융 인프라(도로, 에너지, 수자원공급, 커뮤니케이션, 용자기회), 선진국과 비교할 때 불충분한 제품, 품질 및 식품안전성 보증서 작성 능력부족 등의 국내적 무역장벽에 직면해 있다. 마지막으로, 누적채무문제는 1차상품 가격의 국제적 하락과 구조조정정책의 실패와 같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국가의 공공투자 및 지출을 제한하고 국내실업과 경제침체를 장기화시킨다.

특히, 제1장에서는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 및 투자, 대외원조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고찰하였다. 2006년 11월, 중국은 제3차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rum of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에서 2009년까지

아프리카 원조규모를 2006년 수준의 배로 확대할 것을 표명하고, 아프리카연맹(AU) 회의센터 건립, 90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30억 달러의 우대차관제공, 수입업체에 대한 20억 달러의 우대신용대출, 고채무빈곤국(HIPCs)에 대한 부채탕감, 50억 달러규모의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 창설, 최빈국(LDCs)의 대중국 수출상품에 대한 무관세 품목 확대(190품목→440품목), 무역 및 경제협력지구의 설치 등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무역관계도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발전하여, 양국 간 무역규모는 1997년 56억 7천만 달러에서, 2000년 105억 달러, 2006년 554억 6천만 달러, 2007년 700억 달러로 약 12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원조는, 1960년대 이래 인권, 거버넌스, 민주주의 등을 원조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내정불간섭 및 호혜평등원칙) 원조의 일정조건(conditionality)을 전제로 부여하는 기타 공여국과 대조적이고, 용자로 인한 아프리카국가의 채무증가 및 중국의 자원확보 및 경제적 이익추구 전략 하에 원조를 집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식의 대 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 대외원조의 접근방법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식과 함께 일종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제1장에서 살펴본 제반 과제들에 대한 원조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구체적인 개념과 세계무역기구(WT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은행 등의 정책, 주요 회의를 통한 국제적 흐름, 규모, 빈곤감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등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국제원조구조(aid architecture)의 다양화의 흐름가운데 정부원조기관이 민간부문과의 협력(PPP) 아래 어떠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실시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우선 WTO 및 OECD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분야를 크게 무역정책 및 규범(trade policy and regulations), 무역개발(trade development), 무역관련 인프라(trade-related infrastructure), 생산역량강화(building productive capacity), 무역관련 조정(trade-related adjustment), 기타 무역관련 니즈(other trade-related needs)의 6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AfT는 특히, 2005년 12월에 개최된 제6차 WTO 홍콩 각료회의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 특별작업반'의 결성과 함께 처음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통합체제(Integrated Framework: IF)'의 확대, 최빈국(LDCs)산품에 대한 특별취급(무관세, 쿼터면제)합의와 신흥공여국을 포함한 각국의 구체적인 AfT 재원확대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2006년 초에는, WTO의 '무역을 위한 원조 특별반(Aid for Trade Task Force)'이 설치되었고, 파스칼 라미 WTO 사무국장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설치된 '통합체제(IF)'의 확대를 위한 특별반(task force)은 개도국의 조정비용(adjustment cost)부담 등 무역정책개혁의 부정적 측면을 원조로 대처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어 2007년 가을, WTO는 지역의 무역 및 재정부장관, 민간 주요인사, 공여기관 대표를 초청하여 남미와 캐리비언,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3개 지역의 '지역평가(regional review: Mobilizing Aid for Trade)' 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WTO, 세계은행, IMF, UNCTAD, UNDP의 정상과 각국의 무역·재정부 장관의 참가 아래 첫 번째 고위급 '무역을 위한 원조 국제평가(Global Aid for Trade Review)' 회의가 개최되어, 각 공여국 및 다자기구가 실시하고 있는 AfT 및 실시계획 중인 AfT에 대한 실행원칙이 제시되었다. 특히, 국제평가에서는 다자기구 및 각 공여국들은 파리선언의 5대 주요원칙 이행을 통한 AfT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다. 그 중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은 AfT에 있어 근간이며, 협력대상국 차원의 개발에 대한 확고한 정책주도성 및 협력대상국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는 세계통상체제 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바, 대부분의 공여기관은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국별 AfT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타, 협력대상국의 국가시스템 활용(alignment)과 공여기관간의 원조조화(harmonisation), 성과중심적인 관리(managing for results),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간 상호책임강화(mutual accountability)도 AfT의 주요 지침이 되고 있다.

이어 AfT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2년에서 2005년도의 무역을 위한 원조(AfT) 약 정금액은 평균 약 210억 달러로(ODA 총액의 약 25%), 2002년 178억 달러에서 2005년 217억 달러로 약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채탕감 및 긴급 구조 원조 등을 제외한 분야별 원조에 배분된 ODA(sector allocable ODA)는 동 기간 510억 달러에서 675억 달러로 약 27%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원조에 배분된 ODA에서 차지하는 AfT의 비중은 35%에서 32%로 감소되었다. OECD/DAC

회원국 중 AfT에 가장 많은 재원을 집중한 국가는 일본으로, AfT의 2002-2005년 평균은 약 47억 달러(공여국 전체 AfT 중 약 23%)였다. 그 뒤로 미국, 국제개발협력회(IDA), 유럽위원회(EC)가 가장 많은 AfT를 실시하고 있고, 이들 4개 공여국 및 기관은 전체 AfT금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한편, AfT는 정부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동반한 다 주체(multi-actor)원조이며, 궁극적인 무역주체는 기업인바,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등을 통한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AfT 참여는 ODA의 추가재원확보와 성공적인 AfT 이니셔티브를 이끌어내는 기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파트너십은 크게 1) 공여국 정부 및 다자기구의 대 협력대상국 AfT 지원(business to government)과 2) 현지기업의 생산 및 관리, 품질인증획득 기술협력, 유통망 지원과 같은 기업 대 기업(business to business)지원으로 분류되며, 기업 측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대상국 무역진흥의 결과 안정적인 지속적 무역시장 및 공급망 확보, 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위원회(EC), 독일, 영국 등 주요 OECD/DAC회원국(또는 공여기관)의 무역을 위한 원조정책과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정부가 향후 지향하여야 할 AfT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우선 유럽위원회(EC)는 시장접근성 향상과 무역자유화 등을 지원하는 대 개도국 무역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무역관련 지원(trade-related assistance: TRA)'이라 정의하고 있다. TRA에는 무역협정의 협상, 무역전략의 기안, WTO가맹, 현대적인 관세시스템의 개발, 국제생산기준의 적용, 민간기업의 수출시장진출, 공정무역(fair trade)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EC는 개도국이 국가개발전략 가운데 무역을 우선순위로 채택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명시하며, 개도국의 무역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에 발표한 '무역과 개발: 개도국의 무역을 통한 혜택지원(Trade and Development: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to Benefit from Trade)'에서 AfT의 주요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EC는 다른 EU회원국과 함께 EU가 2006년 10월 AfT에 관한 위원회결정과 2007년 10월에 정식채택 한 'EU 무역을 위한 원조(AfT) 전략(*EU Strategy on Aid for Trade: Enhancing EU support for trade-related needs in developing countries*)'을 AfT의 가이드라인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무역관련 지원(TRA)'을 '지속적인 경제개발(민간부문개발 및 경제정책 포함)',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선정 및 기관역량강화', '환경 및 수산업' 등의 분야별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크로스커팅 이슈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AfT에 대한 정책 및 전략문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독일 ODA의 우선순위인 '협력대상국의 경제개발 및 고용' 지원의 맥락아래, 농업과 기관역량강화(institution building) 부문을 중심으로 AfT를 실시하고 있다. BMZ의 대표적인 '무역프로그램'에는 1) 농업무역 프로젝트, 2) 무역정책 및 무역, 투자진흥 프로젝트, 3) 무역정책 및 무역진흥 지원기금인 'Monterrey Fund', 4) 민간협력(PPP) 프로젝트인 'Cotton made in Africa'가 있다. 그리고 GTZ는 1) 컨설팅 및 문서서비스 제공, 2) 교육연수, 3) 협력대상국의 지역경제 통합, WTO가맹 및 규범이행, 농업무역 정책 지원 등의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BMZ의 '무역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 미국이 2000년 5월 제정된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은 무역특혜제공을 통한 대 아프리카 지원책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역, 투자, 개발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아프리카 개발과 기업을 위한 무역(*Trade for African Development and Enterprise: TRADE*)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 A)'의 적용확대, 아프리카 기업의 국제무역 및 지역 내 무역확대, 사업환경 및 무역환경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2001년 10월 부시대통령에 의해 발표되었다. AGOA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다면 'TRADE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아프리카 기업의 비즈니스 연계강화를 통한 아프리카국가의 다자무역시스템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TRADE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부시대통령의 2006년 '아프리카 글로벌 경쟁력강화 이니셔티브(*African Global Competitiveness Initiative: AGCI*)' 제창을 통해 확대보완된다. 본 이니셔티브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 및 투자지원으로 5년간 2억 달러를 제공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이와 같

은 배경 하에, USAID는 분야별 부서로 '경제성장 및 농업, 무역국(Bureau for Economic Growth, Agriculture and Trade)'을 설치하고, 국내정부기관, 아프리카 지역기구,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AfT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 Sida의 공식적인 TRA 정책문서는 2005년에 발표된 '*Sida's Policy for Trade-Related Development Cooperation*'이다. 본 정책문서는 Sida 내부의 무역 정책 및 무역개발관련 지원 프로젝트의 계획 및 실행 시 공통된 목표와 분야,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Sida의 무역관련 지원방향은 크게 1) 무역정책 및 국제규범, 무역협정 지원 이니셔티브와 2)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기업 및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이니셔티브로 나뉜다. Sida는 이러한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1) 농산물무역(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2) 전력거래(electricity trade), 3) 거래비용(관세 및 운송비용), 4) '무역개발(trade development)', 5)연구 및 교육연수, 정책제정을 우선지원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영국은 AfT를 '기술지원, 역량강화, 제도적 개혁, 무역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관세수입에서 다른 수입재원으로의 전환에 드는 추가적 회계비용 등에 대한 조정비용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AfT의 목적은 개도국 국민들이 경쟁력 있는 무역주체(traders)가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및 국제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대상국의 지속적인 성장 및 빈곤감소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러한 영국의 AfT 목적 및 주요 정책은 DFID의 세 가지 '국제개발백서(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및 무역사업부(DTI)의 '무역 및 투자백서(White Paper on Trade and Investme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FID는 무역개혁(trade reform)이 장기적인 빈곤감소와 원조에 대한 의존감소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개도국의 국제무역참가를 저해하는 내부적 제약(열악한 운송 및 교통인프라, 분쟁, 부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무역지원 방향성을 1) WTO 도하개발어젠다, 2) 경제파트너십협정(EPA), 3) 무역을 위한 원조(AfT), 4) 무역과 개발관련 연구조사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일본은 개발원조와 함께 WTO체제 하의 무역자유화와 양자 간 및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 노동자의 입국허용을 포함한 경제파트너십협정(EPA)의

적극적인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 예로, 2008년 5월의 제4차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와 7월에 개최된 도야코(洞爺湖) G8정상회담에서는 특히 대 아프리카 원조지원 확대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향성이 표명되었다. 구체적인 전략에는 제6차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포함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아프리카산품의 마케팅지원, 최빈국(LDCs) 산품에 대한 무관세확대, 기업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빈곤감소 노력촉구 등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대개도국 공적원조와 함께, '원조보다 무역(trade not aid)'을 요청하는 개도국의 니즈에 상응하기 위해 개도국과의 경제 및 무역통합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일본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한편, JICA의 AfT는 인프라정비, 법제도정비, 산업인재 육성지원을 통한 개도국의 민간투자 유도와 경제개발 촉진에 기본이며,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APEC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개발전략목표는 크게 1) 국제적인 틀 속에서 무역 및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응력강화, 2) 무역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3)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로 나뉜다.

기타, 노르웨이 외교부는 2007년 11월, 개도국의 국제무역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기여하겠다는 공약한 본격적인 AfT 전략인 '노르웨이의 무역을 위한 원조 행동계획(Aid for Trade: Norway's Action Plan)'을 발표하였고, 덴마크는 2002년 EU 의장국 당시, 국제무역의 글로벌화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을 강화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성공을 위해, '무역과 개발-빈곤에서 벗어나는 방법(Trade and Development-A way out of poverty)'이라는 AfT 전략을 발표한다. 캐나다의 경우, 현지 민간부문개발(PSD)을 AfT의 최우선 분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핀란드는 2006년 5월 채택된 AfT 정책문서인 '핀란드 개발협력의 개발도상국 무역역량 지원전략(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Trade Capacity in Finnish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AfT의 증액과 주류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우리정부의 AfT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살펴보고, 무상 원조 실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AfT현황에 대

해 구체적으로 연구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 아프리카 무역지원전략을 모색하였다. 우리정부의 AfT에 대한 의지는 2006년에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Korea's Initiative for Africa's Development)'와 2007년 11월에 참가한 제1차 '무역을 위한 원조 국제평가(Global Aid for Trade Review)'회의의 발언문, WTO/OECD가 각 공여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 『Aid for Trade At a Glance 2007: 1st Global Review』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AfT에 대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AfT에 대한 의지 및 공약은 우리의 대외무상원조 정책에 그다지 반영되고 있지 못하며 또한, 전략적인 원조정책 및 계획 하에 수행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행정제도, 지역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분야의 AfT관련 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양자간 지원의 경우 OECD/DAC 회원국 및 WTO, UNCTAD, 세계은행 등의 다자기구의 AfT가 주로 최빈국(LDCs)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KOICA의 AfT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저소득국(LMICs)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업유형별로는 연수생초청사업의 형태가 가장 많았고, 분야별로는 행정제도분야의 비중이 70건으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KOICA의 AfT는 '무역관련 인프라구축'보다 주로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TRTA/CB)'를 중심으로 한 인식제고 연수(awareness training)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KOICA의 대 아프리카 AfT는, 행정제도 분야의 무역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아프리카의 인프라구축에 대한 비중이 기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행정제도 연수사업을 제외하고는 주로 보건의료 및 교육 등 사회개발 분야지원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향후 추진방향에서는 대 아프리카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의의와 함께, 대 아프리카 AfT 전략을 KOICA의 AfT 목적 및 전략 수립,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의 관점도입, 원조의 효과성제고, 개발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WTO/OECD의 AfT에 입각한 통계시스템 확

립, 아프리카 지역 내 무역활성화 지원, 우리의 경제개발경험 활용,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참여를 동반한 AfT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WTO/OECD의 5가지 AfT 범주에 입각한 KOICA의 양자 간 전략목표와 세부목표, 사업형태 등을 제시하며, AfT 접근방법(approach)은 각 사업 분야별 무역지원에 있어 횡단적(cross-cutting)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원조조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및 다자기구에 대한 자금출연 및 기술협력과 협력대상국의 무역 조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새로운 원조형태로 모색해 보았다.

서론

최근 국제사회는 ODA의 증액뿐 아니라 환경대책, 기술개발, 무역자유화 및 일반 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¹⁾ 지원 등 포괄적인 개발 협력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아래 무역자유화가 범지구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노동자의 왕래,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파트너십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의 움직임이 개도국과 선진국의 관계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들은 다자무역협상과 선진국들의 특혜시장접근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반의 미발달, 사회경제인프라의 부족, 무역역량부족 등으로 국제무역참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하협정(DDA)의 주요 의제인 선진국의 농산물자유화로 인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 대규모로 효율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한 국가들의 수출은 증대하는 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포함한 대다수 최빈국(LDCs)은 오히려 수출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 지적되고 있다.²⁾

또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무역특혜를 받아 온 개도국은 산업보호정책을 전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즉, 무역자유화는 경쟁을 통한 효율적 자원분배, 재원 및 서비스의 선택기회 확대,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보호정책의 혜택을 누려온 개도국의 현지산업 및 기업들은 경쟁력부족으로 국제무역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해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가맹국 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원산지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FTA 가맹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인증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이 국제적 원산지규정의 충족을 위한 기술 및 지식

1) 일반특혜관세제도(GSP)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일정 농수산물, 광공업산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비율(특혜관세)을 적용함으로써 개도국의 공업화와 수출소득 증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국제적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 해결을 위한 특별조치의 검토 및 합의에서 도출되었다. EU는 최근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기수입을 제외한 전 품목에 무관세 및 무제한적인 시장접근을 허락하는 Everything but Arms Initiative(EBA)를 실시하고 있다.(단, 바나나와 설탕, 쌀에 대한 보호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규정됨)

2) 秋山孝允 笹岡雄一編著 (2006)

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편, 해외직접투자(FDI)의 자유화는 해외시장진출 기회확대, 개도국의 외화수입 및 고용증대, 선진국의 기술이전 등의 긍정효과와 함께 경쟁력 없는 현지산업의 억압,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 확대,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상승 등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자유화를 통한 각국 경제통합은 국제적인 조류이기는 하나, 일률적인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는 개도국의 자립적인 경제성장에 있어 마이너스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식량문제, 환경문제 등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들은 개도국과의 경제 및 무역통합과 개도국의 무역제도정비 및 역량강화 등 개도국의 무역활성화와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에 대비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를 ODA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원조보다 무역(trade, not aid)"을 요청하는 개도국의 니즈와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경우 민간부분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및 해외직접투자(FDI)와 수출증대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천년개발목표(MDGs)달성을 위한 주요 견인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민간부분에 제공한 국내신용(domestic credit), 해외직접투자의 순유입, 상장회사의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 등의 민간부분 활성화 지표를 공표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투자환경과 민간부분개발을 위해 어떠한 투자가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근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족분쟁, 기아, 감염성 질환(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 낮은 취학률, 누적된 채무문제, 식량문제와 낮은 농업생산성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국내적 개발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식량문제와 낮은 농업생산성은 인간안보와 빈곤감소를 위협하는 치명적 요소로, 아프리카지역 취업인구의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평균 45%) 높은 인구증가율과 토양 및 환경악화 등으로 인해 남아프리카와 짐바브웨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표(HDI)에 의하면 최하위 31개국 중 29개국이 아프리카로,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인구의 약 40%이상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적 빈곤에 처해있다.³⁾ 1인당 국민총소득(GNI)으로 분류하면 905달러 이하의 저소득국(LICs)은 아프리카53개국 중 34개국에 해당된다.⁴⁾

이러한 아프리카의 개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00년 유엔의 MDGs 채택 이후 보건 의료, 교육, 안전한 식수제공 등 인간개발 및 사회개발지원 통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유엔은 MDGs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하라이남 인구는 45.9%(1999년)에서 41.1%(2004년)로 줄어들었으나, 2015년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확대와 함께 최빈국산품 수출을 저해하는 선진국의 고관세 및 쿼터⁵⁾ 등의 제약(supply-side constraints)과 비합리적인 원산지규정 문제 등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⁶⁾ 즉, 이는 개도국의 국제무역체제 동참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개발협력을 통해 정당한 보건의료, 교육분야 등의 인프라지원과 역량강화정책도 개도국의 예산부족으로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의미한다.⁷⁾ 유엔 및 191개 회원국이 동의한 MDGs Goal 8의 세부목표로 '규칙에 의거하고, 예측가능하며 비차별적인 열린 무역 및 금융시스템의 개발'과 '최빈국들의 특별한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무관세 및 무쿼터 확대' 등이 설정된 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선진국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정비, 제도 및 정책정비,

3) Jean-Marc Faurès and Guido Santini (2008)

4) World Bank (2008a)

5) 쿼터(quota)란,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의 일종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수입할 수 있는 수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6) United Nations, Africa and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2007 UPDATE

: Goal8 Target 12 개방적이고 국제적 규율에 근거하며,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개방무역 및 금융체제 발전 Target 13 최빈국의 특별요구 수용,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쿼터면제 접근, 고채문빈곤국에 대한 부채 탕감 증진 프로그램, 공적 쌍방 부채의 취소, 빈곤감소 공약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지원증가

7) 물론 경제성장이 지속적인 빈곤감소의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경제성장률이 동일하다 해도 각 개도국의 민주화 및 거버넌스, 시장개방도, 거시경제적 안정도, 빈곤층의 사회 및 경제자본에 대한 접근성 등에 따라 빈곤감소실적은 상이하게 달라진다.

정부의 역량구축, 선정(good governance),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운영,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 및 부가가치산품의 발굴 등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는 자본과 기술부족으로 자구적인 개발노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ODA 및 민간자금을 활용한 아프리카 국가의 도로와 항만 등의 광역 인프라환경정비 등이 지원되었을 경우, 지역 내 물류활성화 및 무역 등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외부민간투자의 유인제가 되어 지역의 소득증대 및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역자유화가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

최빈국(LDCs)의 지속적인 빈곤감소는 일회성 개발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닌 지속적인 가계소득 증대(sustainable livelihood) 및 경제성장을 통해 달성될 수 있고, 최빈국의 수출 및 수입증진, 무역개방 등의 국제무역확대는 이러한 빈곤감소 프로세스를 가속화한다.⁸⁾ 실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는 수출과 직접투자의 증가, 정부의 수출진흥 및 국내시장보호, 산업정책 등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고, 1990년대 이래 개발경제학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검증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한 예로, Frankel and Romer는 각국의 지리적상황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외부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무역의 중력모델(gravity model)에 근거하여 각국의 국제무역 중 지리적 요인에 의해 외부적으로 결정되는 무역의 규모를 추측 계산하였다.⁹⁾ 즉, 무역상대국과의 거리 및 인구규모, 면적, 내륙국인지 해안에 밀접한 국가인지, 국경을 접하고 있는지 등의 지리적인 요인으로 추정되는 무역비율을 추정 계산하여 그 비율을 조작변수로 활용함으로써 무역과 소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그들의 논증에 의하면 GDP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율을 1% 확대함으로써 1인당 소득수준은 적어도 0.5% 증가한다고 한다.

반면, 무역자유화가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은 각 개도국의 비교우위 산업, 토지소유의 유무, 노동자의 숙련도, 교육수준, 직종이동가능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Rodríguez and Rodrik은 지리적 요인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감염성질환, 식민지화 경험, 분쟁, 천연자원 보유 등 무역 이외에 여러 요인을 각 국가의 현황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¹⁰⁾ 이와 같은 찬반논의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무역촉진이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결과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상승과 빈곤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근간이 되고 있다.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이상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과 빈곤감소의 상관관계에 대한 제반 논의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는 최근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빈곤감소와 전 세계적인 무역질서의 유지 및 강화에 있어 중요한 국제적 테마로 대두되고 있다.¹¹⁾ 그리고 공여국의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공헌도도 단순한 ODA 총액의 확대가 아니라 무역 및 투자촉진, 개도국의 노동자수용, 기후변동 등 크로스커팅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원조의 효율성달성 노력 등 포괄적인 협력양상을 통해 평가받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AfT에 대한 이해 및 정책이 부재하다. 특히, 2006년 3월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시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Korea's Initiative for Africa's Development)'를 계기로 최빈국 중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원조가 확대되고 있으나, 대외무상원조의 경우 교육, 보건의료, 지역개발 등 협력대상국의 기본적 니즈(BHN)가 중점지원 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있고, 일관적인 정책이 부재한 단편적인 무역관련(trade-related) 지원만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7년 9월 혁신적 개발재원으로 도입한 연간 2천만 달러 규모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도 주로 HIV/AIDS, 말라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의 감염성질환 퇴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8) UNCTAD (2004), UNIDO (2007)
9) Frankel, Jeffrey A., and David Romer (1999)

10) Rodríguez F. and Rodrik D. (2001)
11) OECD/DAC (2001)

따라서 우리나라도 개도국의 영세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과 농업생산량 증대 및 해외직접투자(FDI)의 활성화를 통한 수출증대 정책 등의 '경제성장을 동반한 지속적인 빈곤감소방안(pro-poor growth)'이 빈곤층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초적인 생활환경의 개선과 함께 아프리카개발에 있어 전략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는 현재 ODA와 무역자유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외원조정책을 검토해야할 시기에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보고서는 아프리카지역의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프리카의 무역개발현황과 국제원조기관 및 선진공여국의 무역 및 투자관련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대 아프리카 빈곤감소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Aft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1장에서는 최근 석유 및 광물자원가격의 급등, 정치적 안정으로 인한 외국자본투자의 증가, 중국 및 인도 등의 신흥공여국의 투자증가 등의 요인으로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경제가 국제무역시스템에 동참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을 농업과 인프라, 무역과 투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최근 중국 등 신흥공여국이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발원조가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 제2장에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개념과 함께 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유엔 등의 주요 정책과 규모를 고찰함으로써 무역관련 원조가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 및 필요성, 그리고 Aft와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과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하겠다.

제3장은 유럽위원회(EC) 및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영국, 일본 등의 국제개발원

조기관의 무역관련 원조정책을 조사·분석할 것이다. 특히, 대 아프리카에 대한 지속적인 빈곤감소에 착목하여 각 공여기관의 Aft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KOICA가 지향하여야 할 대 아프리카 무역원조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끝으로, 마지막 장에서는 KOICA의 대 아프리카 지원과 무역관련 원조현황을 조사·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KOICA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현황을 사업분야(sector)별로 분석하고, 향후 추진방향으로 KOICA의 Aft원조 전략과 함께 기존 사업형태 및 신규 원조프로그램(modality)도입, 원조의 효율성제고의 프레임워크 활용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 아프리카원조 방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국제원조기관 및 선진공여국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의 정책과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빈곤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지 하에 집필하고 있으며, 자본 및 금융투자의 자유화가 개도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경쟁력 없는 기업의 도산, 단기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과 통화금융위기 등)에 대한 심층적인 개발경제학적 분석은 깊게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나, 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과 관련된 세부원칙 수정의 추진(특히 국내의 관세상한 설정과 관세감축을 통한 식량수출국의 시장접근성 향상)은 국내의 농수산물정책과의 충분한 정책조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의제임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국제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은 국내 농산물시장 보호정책과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우리나라는 국내농업보호를 고려해 일부 농산물을 '특별품목(special product)' 등으로 분류해 일괄적인 관세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특별 세이프 가드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미국, 브라질 등의 농산물 수출국은 특별품목의 대폭적인 축소와 관세절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국제무역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무역관련 원조는, 국내의 관세절하 및 각종 정부보조금 삭감정책에 대한 다양한 찬반여론으로 유추할 때 국내의 '정책의 일관성(policy coherence)'형성에 난항이 예상되는 분야임이 틀림없다.

제1장 아프리카 경제와 무역

제1장에서는 아프리카의 최근 경제와 무역현황을 개관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무역체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저해하는 무역관련 개발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국제원조질서를 무시한 원조정책을 전개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하는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원조와 국익과의 조화, 그리고 우리가 모색해야 할 대 아프리카 원조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아프리카 경제와 무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구소련의 사회주의적 경제개발계획의 영향으로 수출대체공업화를 지향하여, 공업화를 위해 농업 등의 산업을 일시적으로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러한 농업경시 정책으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대량인구 유입이 초래되었고,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용작물의 장려는 자국 식량 생산을 감소시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980-2000년 초반에 걸쳐 아프리카의 인구가 4억에서 7억으로 증가한데 반해, 1인당 GDP는 1980년대 약 1,000달러에서 2002년에는 약 500달러까지 반감하였다. 산업구조면에서도 기술자본집약적 제조업보다는 노동집약적 단순가공형 업종의 절대적 비중이 높고, 대부분의 국가가 농산물, 광물, 원유 등의 1차 산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의 일부국가는 석유 및 광물자원가격의 급등, 정치적 안정으로 인한 외국자본투자의 증가, 중국 및 인도 등의 신흥공여국의 투자증가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자원가격의 세계적인 급등과 민간자금 및 ODA를 활용한 인프라정비로 인해 지금까지 내륙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우송인프라 부족으로 채산성이 없었던 아프리카의 자원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세계은행의 2008년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에 의하면 200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약 5.6%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그 중 앙골라를 포함한 16개국은 18.6%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음이 보고되고 있다.¹²⁾ 분쟁 종식 및 정치적 안정으로 연 5%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 국가는 아프리카 53개국 중 23개국(2005-2007년 평균 예상치)에 달한다.¹³⁾

아프리카 지역의 수출규모

최근 석유수출을 포함한 아프리카 전체의 수출무역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수출총액은 2005년 대비 21% 상승한 3,609억 달러를 차지하였다.¹⁴⁾ 한 예로 르완다의 경우 고품질의 커피생산과 구매자연결 지원을 통해, 2005년 미국에 대한 커피수출을 166% 확대할 수 있었다.¹⁵⁾ 세계은행의 WDI에 의하면 2000-2006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상품무역(merchandise trade)은 연평균 18% 확대되었고, 특히 차드, 적도 기니아, 앙골라, 수단, 콩고민주공화국의 연평균 상품무역 확대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⁶⁾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부 국가들이 공업화에 성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업화의 핵심에는 섬유산업의 발전이 있다. 예를 들어, 레소토,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는 최근 십여 년 사이에 섬유공업의 성장과 수출을 통해 공업화를 진전시

12) World Bank(2008b) Regional Fact Sheet from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Sub-Saharan Africa

13) AfDB/ OECD (2007)

14)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2008)

: 2006년도 전 세계 수입총량은 전년도 대비 약 15.2% 증가하였음

15) World Bank (2008a)

: 참고로 우간다는 어류, 케냐는 생화 및 청과류, 모잠비크는 참새우, 보츠와나는 쇠고기, 말리는 망고, 부르키나파소는 면화 외에 참깨, 건조 망고, 캐슈넛트, 카리테 너트, 버터 등의 농수산물물을 유럽,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16) World Bank (2008b) Regional Fact Sheet from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Sub-Saharan Africa

켜왔다.¹⁷⁾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도 공업발전에 동반되는 임금상승, 저숙련 및 저임금 노동력 상태의 고착, 국내 연관 산업의 미약한 발전, 특혜잠식(preference erosion)¹⁸⁾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아래 표 1.1은 최근 10년간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GDP성장률을 세 부류로 분류한 것으로 분쟁 중 또는 분쟁종식 국가들의 성장률이 저조한데 반해, 특히 석유 등의 자원수출을 통해 국제무역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성장률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아프리카의 국가유형별 GDP 성장률 (1996-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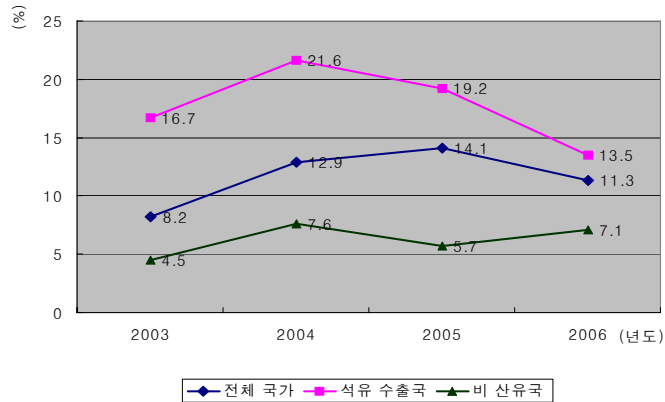
저 경제성장 국가 연 GDP성장률 4%이하 (인구의 36.7%)		다변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가 연 GDP성장률 4%이상 (인구의 35.6%)		석유 수출국 (인구의 27.7%)	
국 가	GDP 성장률(%)	국 가	GDP 성장률(%)	국 가	GDP 성장률(%)
잠비아	3.80	모잠비크	8.3	적도기니	30.8
기니아	3.70	르완다	7.6	차드	9.0
니제르	3.50	상투메프린시페	7.1	앙골라	8.5
말라위	3.30	보츠와나	6.7	수단	6.3
모리타니아	3.30	우간다	6.1	나이지리아	4.3
토고	3.30	카보베르데	5.8	콩고 공화국	3.4
마다가스카르	3.20	말리	5.8	가봉	1.1
레소토	3.00	탄자니아	5.3		
케냐	2.90	에티오피아	5.2		
에리트레아	2.41	시에라리온	5.2		
세이셸	2.30	부르키나파소	5.0		
코모로	2.13	모리셔스	4.8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0.85	가나	4.7		
기니비사우	0.47	베냉	4.6		
부룬디	0.43	세네갈	4.5		
콩고 민주공화국	0.08	카메룬	4.2		
짐바브웨	-2.20	감비아	4.2		
		나미비아	4.0		

【출처】 World Bank (2008a)

17) 박복영 외 (2007)

18) 특혜(관세)잠식이란, 낮은 특혜관세로 EU 등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개도국이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관세하향으로 특혜관세와 일반관세의 차이, 즉 특혜마진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모리셔스 등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영연안(ACP) 소규모 국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이다.

〈그림 1.1〉 아프리카의 국가유형별 수출성장률 (2003-2006)



【출처】 World Bank (2008a)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

아프리카 수출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남아프리카, 알제리, 나이지리아, 리비아, 앙골라 등 10대 수출국이 아프리카지역 전체의 총 수출량의 약 81%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프리카의 현저한 수출성장률이 석유 및 광물자원수출국 등의 일부 국가들의 급격한 수출확대에 기인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석유수출국의 차드의 경우 무역규모로는 10대 수출국에 포함되지 않으나, 1997-2006년의 연평균 수출성장률은 약 59%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2〉 아프리카의 10대 수출국 (2006년도)

10대 수출국	수출액 (US 백만 달러)	아프리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누적비율
남아프리카	58,421	16%
알제리*	52,822	31%
나이지리아*	52,000	45%
리비아*	38,300	56%

주: *는 주요 석유수출국을 의미함

【출처】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2008)

계 속 〈표 1.2〉 아프리카의 10대 수출국 (2006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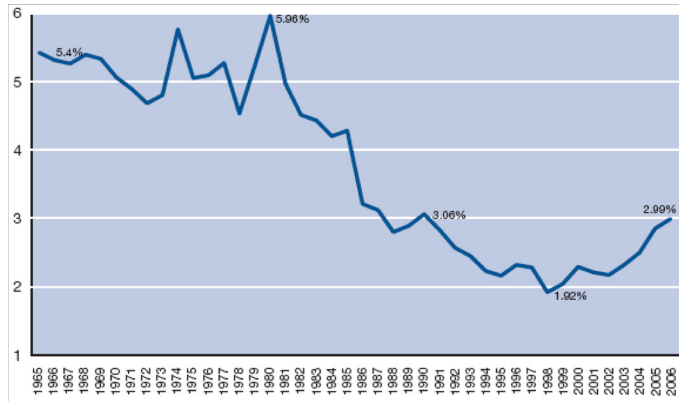
10대 수출국	수출액 (US 백만 달러)	아프리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누적비율
앙골라*	35,100	66%
이집트	13,702	69%
모로코	12,559	73%
튀니지	11,513	76%
적도기니	8,900	79%
코트디부아르	8,715	81%

아프리카의 무역규모

그림 1.2를 보면 이러한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전 세계 무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 2.99%에 불과하며, 1960-70년대의 약 5%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도 세계무역량의 1%를 약 1억 1,700만 달러로 상정할 때 이는 G8국가들의 대 아프리카 개발원조금액의 6배 이상에 해당되므로, 아프리카 지역의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증가하는 것이 개발원조가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지역의 외환 및 시장접근성 향상, 해외직접투자(FDI) 유도, 기술전수, 국내생산성 및 고용촉진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국제무역시스템 참가를 지원하는 것, 즉 '무역을 위한 원조(AfT)'가 공여국 개발원조의 주요 분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2〉 아프리카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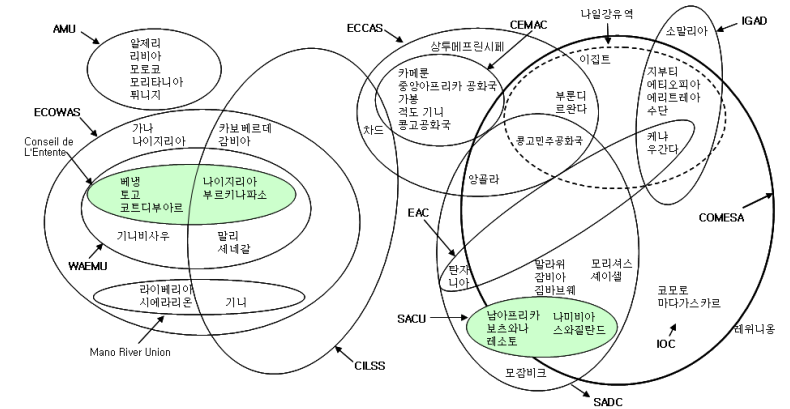
【출처】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2008)

아프리카지역의 무역통합(regional integration) 현황

대부분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는 비교적 경제규모가 적고, 국내 시장경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지역경제통합은 국내시장의 확대 및 특화(specialization),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국내 경제성장 촉진의 측면에서 기대되고 있다. 주요 지역공동체에는 '아랍 마그레브 연합(Arab Maghreb Union: AMU)',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 Southern Africa: COMESA)',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ern African Studies: ECOWAS)', '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ACU)',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서부아프리카 경제통화 연합(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WAEMU)' 등이 있다.

그림 1.3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러나 각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지역협정은 각 국가의 고 관세 및 비효율적인 통관절차 등의 문제와 함께 아프리카의 무역업자들에게 있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바, 아프리카 내의 무역 및 경제기구의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하다.

〈그림 1.3〉 아프리카지역의 무역 및 경제기구



【출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05)

2. 아프리카의 무역관련 개발과제

2.1. 농업(Agri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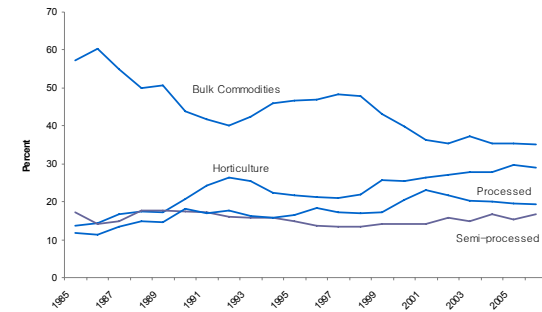
아프리카 경제는 농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이상에 해당되는 국가는 약 30개국에 이른다. 인구의 약 60%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과거 40년

간 아프리카가 1헥타르(ha) 당 7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곡물수확량을 증대시키는 동안, 아시아 및 중남미는 1톤에서 3톤으로 생산량을 증대시켰다고 보고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사하라이남의 2004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75년보다 0.6% 감소하였다.¹⁹⁾ 또한, 1960년대 후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신품종개발과 비료도입으로 '녹색혁명'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은 1961년 이래 토지생산성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²⁰⁾ 남아프리카와 짐바브웨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식량을 수입하고 있어, 높은 인구증가율, 토양 및 환경악화와 함께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문제와 낮은 농업생산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가 채 안되며 국제무역의 약 2%(1970년 약 4%)에 불과하나, 국제무역이 이 지역의 GDP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다. 농업은 아프리카의 주요 수출 분야로 동부아프리카(East Africa)의 전체 수출량의 47%, 남부아프리카(Southern Africa)의 14%, 서부아프리카(West Africa)의 10%를 각각 차지한다.²¹⁾ 그러나 지난 30년간 이 지역은 국제무역시장에서 점차 소외되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농산물 무역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의 5.4%에서 2006년 3.2%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²²⁾

19) Jean-Marc Faurès and Guido Santini (2008)
20) FAO日本事務所 (2003)
21) Jean-Marc Faurès and Guido Santini (2008)
22) OECD (2008)

〈그림 1.4〉 아프리카의 수출산품별 국제농산물무역 비율(1985-2006)



【출처】 OECD (2008)

감소의 주원인은 곡물(bulk commodities)이 더 이상 국제농산물무역의 주요항목이 아니게 된 데 있다. 실제로 지난 25년간 가공식품, 원예농산물(생화, 과일, 야채 등) 무역은 곡물무역량의 약 두 배가량 증가하여 비농산물 수출에 필적하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 1차산품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도국(약 3분의 2가 아프리카)은 점점 국제시장에서 그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 특히, 주요 생산작물(옥수수, 기장, 사탕수수, 카사바, 쌀 등)의 수확량감소와 환금성작물(커피, 면화, 홍차, 코코아 등)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 및 수출 감소는 식량부족위기와 함께 아프리카의 빈곤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환금성작물은 가격변동이 심하여 동일 작물을 재배할 시 농산물 가격파동이 일어날 리스크도 크다. 또한, 빈약한 인프라 자본과 과도한 정부의 가입, 고 자본비용 등으로 농산물가공분야의 경쟁력약화는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아프리카의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촉진을 위해 농업인프라 정비, 농업생산기술 향상지원, 인재육성, 관개시설정비 및 이용추진, 환금성작물의 다양화, 농산물관련 산업개발을 통한 부가가치창출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과 개도국이 국제무역 및 지역무역 수입관세를 절하하고, 선진국이 국내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농업무역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소득 및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시장정비와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정보제공 등 지역 내의 무역활성화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시장경제화 추진은 경쟁에서 이길 자원과 기술, 지식, 정보가 부족한 소작농들이 경쟁격화 가운데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농촌지역의 빈부격차와 빈곤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에, 원조프로그램의 실시에도 있어 생산량증대뿐만 아니라 수확 후의 처리 및 가공, 저장, 운송, 판매 등 소작농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자금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성(food safety management)에 대한 전문적인 인증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아프리카의 농산물수출국은 EurepGAP²³⁾, SQF 2000, 식품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영국 소매업연합(British Retail Consortium) 등의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생산역량향상 인프라 및 기술지원과 함께 포괄적인 무역지원의 관점이 농업부문에서도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엄격한 원산지규정 문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수입품이 FTA를 체결한 가맹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기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FTA하에 가맹국 간 특혜관세율(WTO원칙인 최혜국대우를 밀도는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 FTA 가맹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인증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원산지규정이 무역협정마다 다를 경우 각 협정규율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 발생하므로 그 절차가 복잡하다.²⁴⁾ 또한, 이러한 작업은 개도국기업에게 막대한 시간과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3) EurepGAP(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이란,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된 농산물관리 기준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 중의 화학제 및 중금속, 미생물 등에 대한 관리사항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체계를 말한다. 2007년 9월부터 GlobalGAP이라 불리고 있다.

24) 최근 양국 간 무역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무질서적인 FTA는 무역상대별로 다른 규범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역실무가 혼돈되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여러 국가 및 기관과 다수의 FTA 및 경제파트너십협정(EPA), 기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관계로 원산지규정이 중복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EU의 경우 최빈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하고 있는 반면, 무역특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EU의 엄격한 원산지기준은 최빈국의 시장참여기회를 좀처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²⁵⁾ 이에 많은 공여국들은 개도국의 엄격한 원산지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원으로 ODA를 활용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보조금 문제

말리와 부르키나파소는 1인당 GNI가 각각 460달러, 440달러로 최빈국에 해당된다. 베냉과 차드와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들은 주로 면화생산을 통해 국제시장경제에 참가하고 있으며, 면화는 수출수입의 40%이상(GDP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백만 주민들의 생계유지뿐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작물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선진국의 목화 생산자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세계적인 과잉생산과 가격변동이 초래되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등의 최빈국이 유일한 무역기회를 박탈당해 국제무역에서 배제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에 의하면 2001-2002년까지 지출된 목화보조금은 58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동시기의 목화무역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었다.²⁶⁾ 또한, 2003년 당시 선진국은 개도국의 농업부문에 연 약 10억 달러의 원조를 실시한 반면, 자국 농업에 대해 하루 10억 달러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여 국내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초래하였다.²⁷⁾ 이러한 배경 하에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의 농산물 생산과 수출증대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철폐와 개도국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기회보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25) UNDP (2005)

26) <http://www.icac.org/index.html>

27) 白井早由里 (2005)

2.2. 인프라(Infrastructure)

아프리카의 열악한 인프라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국내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지역 간 무역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예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방기(Bangui)의 공장 또는 농장에서 출하한 수출 컨테이너가 인근 항만까지 우송되어 관세 및 행정, 항만절차 등을 거쳐 배에 선적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16일이라 한다. 반면, 중국, 말레이시아, 칠레의 경우 단 20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 아프리카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와 비효율적인 관세 및 행정시스템 현황을 가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 항만, 통신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는 국제시장의 접근성 및 수출확대에 있어 필수적이며, 국가경제발전뿐 아니라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도로건설 및 정비는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와 함께 식량부족 및 재난지역에 대한 신속한 긴급원조물자 유송, 긴급환자 수송 등을 지원함으로써 다각적인 지역의 빈곤감소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인프라정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MDGs의 달성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할 수 있다.

Sachs는 2004년 개도국의 MDGs달성에 관한 주요 보고서에서 아프리카 개발전략에 있어 교육, 보건 등의 인간개발과 함께 협력대상국의 민간부문개발과 인프라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²⁸⁾ 그는 동보고서에서 아프리카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본보유량을 경제의 지속적인 악순환을 정지시키고 자립적인 성장에 이르는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관리와 인적자본 및 기초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big push)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OECD는 경제인프라(운송,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상하수도, 관개시설)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 및 거래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빈곤감소에 필수적인 활발한 경제활동을 촉진한다고 밝히며, 인프라구축이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성장(pro-poor growth)'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⁹⁾

28) Sachs, J.D. et al. (2004)

29) OECD (2006c)

그러나 아프리카지역은 전력, 도로, 항만, 정보통신 등의 경제인프라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인바, 지역 내 인프라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지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최소 20%정도 뒤쳐져 있으며, 서비스의 질과 공급량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지역 내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감소와 고비용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지역의 부족한 인프라정비를 위해서는 운용보수 비용을 포함하여 1년에 약 170~220억 달러(GDP의 5%, 최빈국은 9%)가 필요하다고 산정되고 있다.³⁰⁾ 그러나 매년 국내의 및 민관에 의한 지출금액은 약 100억 달러에 불과하여, 지역인프라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연간 70~120억 달러, 즉 GDP비율의 4.7%에 이른다. 최근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식수, 정보통신, 교통인프라 분야의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컨소시엄 결성 등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가 저조하다.

〈표 1.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열악한 인프라서비스

서비스 문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개도국
전기 <i>Electricity</i>		
전기연결 지연 (일수)	79.9	27.5
정전 (연간 일수)	90.9	28.7
정전으로 손실된 발전량의 가치 (회전율)	6.1	4.4
자가 발전기로 유지되고 있는 기업 (전체비율)	47.5	31.8
정보통신 <i>Telecommunications</i>		
전화기소유의 지연 (일수)	96.6	43.0
전화연결 지연(연간 일수)	28.1	9.1

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6개국, 개도국 5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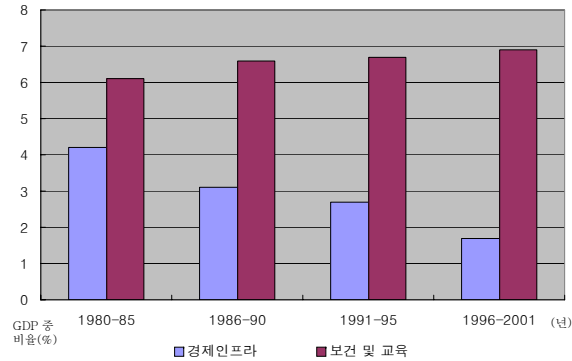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2008a)

이와 같이, 아프리카의 인프라환경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최근 20년간 보건의료 및 교육 등 MDGs와 관련된 사회부문의 공공지출은 증가한 반면, 인프라를 위한 공적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데 있다.³¹⁾

30) World Bank (2008a), OECD(2006a)

〈그림 1.5〉 아프리카의 인프라 공공지출 감소추이

(단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OECD (2006c)

한편, 최근 다자기구의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개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무상원조가 아닌 저금리의 차관으로 제공되고 있어 이미 고채무에 허덕이고 있는 저개발국가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 세계은행은 동부 아프리카의 무역 및 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1억 9,900만 달러의 유무상 패키지를 제공한바 있다. 그러나 그 중 1,500만 달러만이 무상으로 제공되었을 뿐, 나머지 1억 8,400만 달러는 유상, 즉 부채의 형태로 제공되었다.³²⁾

2.3. 무역 및 투자(Trade and Investment)

무역의 자유화는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재화 및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해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호정책 아래 충분한 경쟁력을

31) OECD (2006c)

32) Dominique Njinkeu, et al, (2008)

갖추지 못한 현지산업 및 기업의 도태와 관세수입의 감소, 개도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한 선진국 시장의 폐쇄성,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1차산품의 가격 폭락현상 등의 문제점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해외직접투자(FDI)의 자유화는 자본유입과 해외시장 참여기회 및 외화수입, 세수입, 고용기회의 확대, 기술이전효과 등이 기대되는 반면, 경쟁력없는 현지산업 및 기업의 도태, 농촌과 도시의 빈부격차 심화, 독점 및 과점으로 인한 물가상승, 현지 기업가정신에 대한 압박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2.3.에서는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과제들을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자.

〈표 1.4〉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무역장벽

국제적 장벽	국내적 장벽
· 특히,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선진국의 높은 관세 및 쿼터적용 (경사관세³³⁾, 원산지규정 등) · 선진국 농산물(설탕, 면화 등)에 대한 과도한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무역시스템 왜곡 · 선진국의 식품안전성 관련 환경기준, 위생기준 등의 비관세 장벽	· 부패, 비효율적인 관세행정제도, 효과적 인 재산권보호 시스템의 부재 · 취약한 경제 및 금융 인프라(도로, 에너지, 수자원공급, 커뮤니케이션, 운차기회) · 선진국과 비교할 때 불충분한 제품 품질 및 식품안전성 보증서 작성 능력

【출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05) 참조 작성

무역정책개혁의 지연

1960-1990년대의 개도국 무역관련 정책논의는 개도국에게 시장접근성의 특혜를 부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당시 개도국의 주된 관심은 GATT(당시)의

33) Tariff Escalation(경사관세)란, 자국(自國)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거나 낮게 부과하고 완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제품의 가공도가 높을수록 관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의미한다.

호혜주의 원칙과 상관없이 자국의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위한 양적 규제를 둘 수 있는지에 있었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후 극히 제한된 무역정책을 전개하였다. 케냐의 경우 한때 국내의 수입대체품 생산자들이 허용한 '이의없음 증명서(no objection certificates)'가 있어야만 국내 수입이 허용되는 등 극히 제한적인 무역이 실시되었다.³⁴⁾ 이러한 비호의적이고 왜곡적인 무역규제는 1980년대에 국내 수입대체품의 급격한 가격상승과 비효율적인 희소자원 배분, 특권층의 초과이윤, 농촌 빈곤심화 등을 초래하였다. 당시 개도국의 왜곡적인 무역규제를 시정하기 위한 무역개혁은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조정정책(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의 주요 분야였다. 또한, 많은 공여국들도 원조의 대가(conditionality)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개혁을 요구하였으나, 대부분이 원조를 얻기 위한 일시적 개혁이었을 뿐 지속적인 개혁으로 연계되지는 못하였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일부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현저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기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무역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대다수의 국가가 내륙국이고 열대성기후라는 자연적 요건 이외에, 다민족 다언어국가라는 문화적 배경과 취약한 국내 경제정책, 국제무역을 위한 시장개방성 부족, 낮은 정부의 저축률, 높은 관세율과 빈번한 비관세조치 등의 경제적 요인이 존재한다.³⁵⁾ 특히, 뇌물, 부패의 만연 등 정치적 불안정의 문제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결국 FDI의 유입을 저해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저조한 직접투자현황

선진국의 대 아프리카 해외직접투자(FDI)는 해외자금유입 및 최신설비를 갖춘 공장건립으로 인한 기술도입효과, 생산 확대에 의한 노동소득과 고용증대, 외국계기업의 생산 확대에 따른 세수입 증대 등이 기대되고 있다.³⁶⁾ 저축률과 개발투자가 저조한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이러한 세수입의 증대는 국가재정에 도움이 된다.

34) Jan Willem Gunning, et al, (1994)

35) 清田博幸 (2001)

36) 반면 FDI의 부정적인 측면에는 1)외국기업의 협력대상국 경제지배, 2)상이한 문화 및 가치와 접촉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마찰과 노동분쟁 문제, 3)환경파괴, 4)협력대상국의 경제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 및 사업의 도입 등이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FDI를 개도국의 경제구조전환의 원동력이자 경제 및 자유무역 발전의 중요요소로 평가하고 있다.³⁷⁾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국내 이미지개선 및 투자진흥기관의 설립을 통해 외국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선진국의 대 아프리카 FDI를 확대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있어 중요한 논제라 할 수 있다. 이어 구체적인 대 아프리카 FDI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자.

세계적으로 FDI의 흐름이 2005년 약 27%에서 2006년 약 38%로 상승한 가운데 대 아프리카 FDI는 풍부한 석유 및 광물자원, 중국의 직접투자와 부유한 서아시아 산유국의 정보통신 및 항만, 터미널 건설과 운영 등의 영향으로 2006년도에 전년도 대비 약 20% 증가하였다.³⁸⁾ 2006년도에 아프리카에 유입된 FDI는 2004년 대비 두 배 증가한 36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³⁹⁾ 2002년 몬테레이선언 전후의 대 아프리카 FDI의 순 유입금액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약간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5〉 대 아프리카 FDI의 순 흐름

	몬테레이회의 이전 (1998-2001)	몬테레이회의 이후 (2002-2005)
순 FDI 흐름 (현재가격, US 백만 달러)		
아프리카	11.9	18.1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아프리카	9.7	13.4
북아프리카	2.2	4.7
순 FDI 흐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		
아프리카	2.1	2.4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아프리카	2.9	2.8
북아프리카	1.0	1.7

【출처】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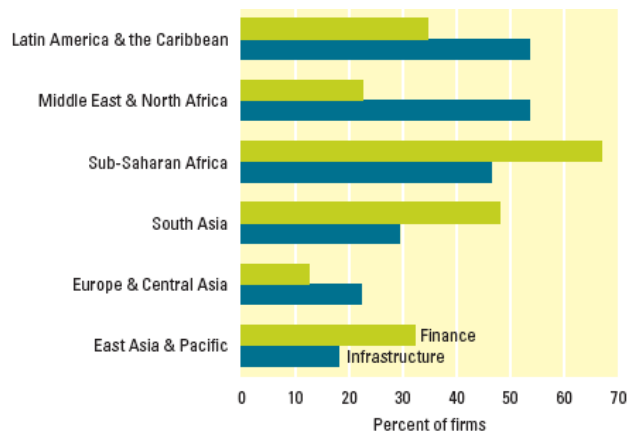
37) 清田博幸 (2001)

38)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2008): 대부분의 FDI는 천연자원 및 서비스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한 예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의 투자회사에 의해 베냉, 가나,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수단 등의 GSM 모바일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다.

39) UNCTAD (2007)

활발한 금융시장은 자발적인 리스크분담을 통해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용자기관 및 투자가와 기업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국내 및 해외투자의 부족은 기업의 비용과 리스크부담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혁신과 생산성향상에 대한 동기저하와 국내 기업활동 부진으로 인한 실업 및 저성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기능부족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에서 현저하고,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기타 개도국에 비해 투자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그림 1.6)

〈그림 1.6〉 지역별 금융 및 인프라부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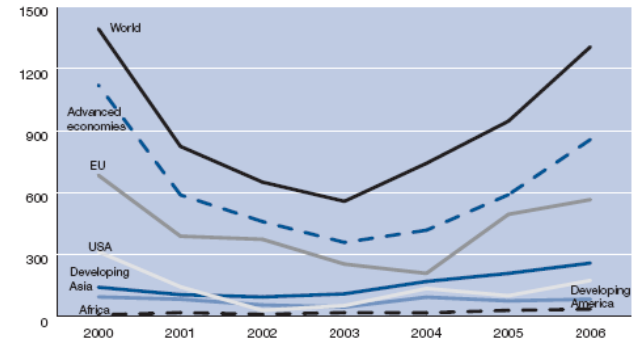
* 기업의 비율(percent of firms)이란, 금융시장과 전력 및 정보통신, 교통 등의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기업활동에 "중요한(major)" 또는 "심각한(severe)" 장애가 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출처】 World Bank (2004)

또한, 최근의 FDI의 증가경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의 해외민간자본유입은 기타 지역에 비해 아직 현저하게 낮아 공적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그림 1.7). FDI는 금액 면에서는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FDI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3.1%에서 2006년 2.7%로 오히려 감소하여, 다른

개도국에 비해 훨씬 저조하다.⁴⁰⁾ 게다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무역(수출과 수입)의 약 60%가 FDI 유입량이 풍부한 천연자원과 규모가 큰 국내시장, 정치적 안정과 양호한 거시경제정책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의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⁴¹⁾

〈그림 1.7〉 FDI의 지역별 유입 (2000-2006년)



【출처】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2008)

민간자본유입을 통한 개도국의 무역과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정비(인프라정비, 거버넌스 지원, 관세절차개선 등)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상기에서 언급한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ODA를 활용하여 인프라정비와 선정, 재산권 보장, 정치 및 거시경제의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젠더와 무역

개도국의 여성들은 가계수입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음에도

40) UNCTAD (2007)

41) 선진국의 FDI유입이 활발한 국가들은 대체로 1)무역자유화개혁을 통한 경제개발, 2)매력있는 민영화 프로그램의 실시, 3)최신 채광 및 투자코드(code)의 도입, 4)FDI관련 국제협정의 적용, 5)그 밖의 투자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우선적인 도입, 6)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고관들에 의한 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불구하고 무역에 있어 종종 배제되어왔다. COMESA 여성기업가협회연맹(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s of Business in COMESA: FEMCOM)의 2007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여성의 5%만이 지역시장경제 및 수출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⁴²⁾ 경제의 80%를 농업에 의존하는 말라위의 경우, 생계의 4분의 1은 여성들이 책임지고 있으며, 식자율은 남성이 72%이상인데 반해 약 44%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말라위 여성들은 농업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영세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비공식적인 국경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아프리카 여성들의 무역참여를 제한하는 장벽에는 세관직원들의 차별의식과 수출절차 및 품질관리기술, 포장, 수입관리 등의 무역지식 부족, 시장조사능력 결핍 등이 있다. 게다가 여성의 경우 담보자산 부족으로 충분한 용자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생산품에 대한 공정한 경쟁에서 제외되기 쉽고, 나아가 자본력과 여성기업가 조직의 역량부족으로 공동경영참가도 용이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의 국제무역참여와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배려한 무역역량강화 기술지원(예를 들어, 지역무역체제 및 수출규율, 품질관리, 시장정보, 경영노하우 제공을 위한 교육연수 등) 및 재정지원을 통해 여성들의 공식적인 지역무역체제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42) COMESA (2008)

〈Box 1.1〉 아프리카무역의 역사적 배경

15세기 이후 미대륙개발을 위한 대서양노예무역이 이루어지기까지, 유럽과 아프리카는 비교적 동등한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300년간 지속된 대서양 노예무역의 결과, 1850년대에 노예무역이 종료되었을 때 광대한 아프리카 대륙에 남겨진 인구는 단 5,400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 후 서구열강들의 식민 지쟁탈의 결과 아프리카는 1차 상품의 공급과 광물자원채굴지역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아프리카 지역은 1차 상품과 자원 생산을 위해 개발되었고, 대륙은 유럽 등의 선진국에 의해 분단되었다.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의 정치적 통일(Pan-Africanism)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을 달성하였으나, 구종주국에 대한 종속은 계속되고 선진국의 공업제품의 원료를 제공하기 위한 수직적 무역과 단일재배경제가 고착되게 된다. 당시 3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수출수입의 75%이상을 1차 상품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약 12개국은 지금도 단일 상품에만 수출을 의존하고 있다.

이어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알제리 등의 산유국을 제외한 외화부족 국가들의 경제는 더욱 축소되었다. 또한, 석유파동 이후 초래된 산유국의 막대한 오일머니는 선진국의 은행 등을 통해 개도국에 흐르게 된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 선진국의 장기적인 저성장이 지속되자,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 및 광물자원 등의 수요도 정체되게 되었다. 이는 1차 상품의 장기적인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수출수익을 통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상환은 더욱 어려워졌다.

【출처: 田中太朗他 (2005) 중】

2.4. 누적채무문제(Debt Problems)

아프리카의 누적채무문제는 1차상품 가격의 국제적 하락과 구조조정정책의 실패와 함께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국가의 공공투자 및 지출을 제

한하고 국내산업과 경제침체를 장기화시킨다. 즉, 높은 채무부담은 각종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이는 다시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계은행과 IMF에 의해 고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s)⁴³⁾으로 지정된 41개국 중 33개국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 위치해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융자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채무가 대부분이고, 90년대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일반적이었던 단기자금의 유입이 비교적 적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누적채무문제가 표면화됨에 따라 기타 개도국에 비해 민간용자의 비율이 작고, 선진국과의 양자 간 공적채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공적용자와 민간용자가 동시에 감소하여 지역전체의 원조의존성이 비교적 높다 할 수 있다.⁴⁴⁾ 외채상환을 위해서는 수출신장을 통한 외화획득이 필요하나, 주요 수출품을 2-3품목의 1차 산품에 의지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단일재배 경제는 국제시장가격의 급락으로 부채가중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수출비중의 2-2.5배가되면 채무상환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수출비중의 6-7배의 누적채무문제가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89년 미국 재무장관 브래디에 의해 채무삭감구상(Brady Plan)이 제안되었고, 이후 각 채권국 및 국제기관은 상환기간의 연장(rescheduling), 부채삭감 등에 착수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부채탕감 계획에는 '확대 고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Enhanced Highly Indebted Poor Country Initiative)'와 2005년 글렌이글스 G8정상회담에서 제안된 '다자간 부채탕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부채탕감계획만으로는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증대와 성과 있는 빈곤감소 효과를 창출하기에 불충분하므로, 부채탕감을 포함한 ODA 등의 공적원조가 확대되어야 한다.⁴⁵⁾ OECD/DAC의 경우 2000-2005년에 걸쳐 대 아프리카 원조를 두 배 이상 확대하였으나, 확대금액의 약 절반은 부채탕감 금액으로 다액의 부채탕감을 받은 나이지리아를 제외하면 실제적인

확대율은 그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부채탕감지원과 GNI대비 0.7%의 순ODA 확대 및 추가적인 개발재원의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6〉 OECD/DAC의 사하라이남 부채탕감과 ODA규모(2000-2005)

(단위: 10억 US달러)

년도	부채탕감 무상	부채탕감 차감금액 (offsetting entries)	순 부채탕감 무상	순 ODA 총액
2001	1.23	0.43	0.80	8.14
2002	1.28	0.30	0.98	8.17
2003	2.96	0.37	2.59	11.40
2004	6.48	0.39	6.10	17.24
2005	9.46	1.51	7.94	22.51

주: 부채탕감 차감금액이란 총 부채탕감 무상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금액 등을 의미함.

【출처】 World Bank (2008a)

이상 아프리카의 수출과 무역, 해외직접투자 등의 경제현황과 농업, 인프라, 무역 및 투자, 누적채무문제 등 관련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아프리카지역,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관련 지원(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 민간투자의 중간재, 부채탕감 등)의 필요성에 대해 모색할 수 있었다. 이어 제3절에서는 최근 자원 외교와 경제협력강화를 목적으로 대 아프리카 무역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현황을 개관하도록 하겠다. 신흥공여국인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 현황을 진단하는 것은, 중국원조가 아프리카경제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장차 지향하여야 할 AfT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가 될 것이다.

43) 1996년에 IMF 및 World Bank는 1인당 GNP가 659달러 이하(1993년 시점), 부채총액이 연간 수출액의 2.2배 이상 혹은 GNP의 80% 이상(1993년 시점)인 국가를 고채무빈곤국(HIPC's)으로 지정하였다.

44) 田中太朗他 (2005)

45)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2007)

〈Box 1.2〉 아프리카와 국제개발원조

○ 1970년대

- 아프리카 지역은 "큰 정부"의 시기로 정부사업 및 공기업의 비정상적 확대, 1차산품 가격의 장기적인 하락으로 인플레이와 재정적자, 정치적 불안정, 기후변동으로 인한 가뭄과 홍수에 시달림

○ 1980~1990년대 전반

- 세계은행, IMF의 거시경제성장과 시장자유화를 골격으로 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이 30개국 이상에서 실시됨
- 동서냉전 하에 ODA의 자금량이 급속히 확대되었음

○ 1990년대

- "원조피로(aid fatigue)"로 선진공여국의 원조 감소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거버넌스는 악화됨
- 거버넌스 개선 및 민주화 추진 국가를 대상으로 원조가 집중됨(1990년 Huston Summit이 계기)
- 세계은행의 '포괄적 개발프레임워크(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CDF)와 빈곤감소전략문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가 대두됨

○ 2000년대

- 1999년 Köln 정상회담 고채무빈곤국(HIPCs) 합의, 2000년의 MDGs 채택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부활
- 2001년 9.11테러로 미국의 테러대책과 관련된 빈곤감소전략 강화
- 2001년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n Economic Development: NEPAD)' 제정
- 2002년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 탄생
- 2003년 Evians 정상회담에서 Africa Agenda 채택과 TICADIII 개최
- 2005년 UNDP Millenium Project 및 아프리카위원회(Commission for Africa: Cfa)에서 보고서 발표(빈곤 및 에이즈, 분쟁 등의 아프리카문제의 중요성과 그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강조됨)
- 2005년 7월 Gleneagles 정상회담, 9월 Millenium 정상회의 개최로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선진국원조의 확대가 합의됨
- 2008년 5월 TICAD IV, 7월 도야코 G8정상회담과 WTO 각료회의 등에서 아프리카 빈곤감소와 무역활성화관련 의제가 논의되었음

3.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 및 경제협력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개도국 개발원조는 OECD/DAC회원국과 세계은행, 유엔 등의 국제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한국, 중국, 인도 등 수원국의 지위를 벗어난 국가들이 신흥공여국(emerging donors)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원조사회에서 그 지위를 새롭게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 중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에너지 및 천연자원 수요의 급증 등을 배경으로, 최근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획득을 겨냥한 대 아프리카 원조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국의 무역 및 투자의 확대는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나, 중국의 영향력의 확대가 아프리카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목이 필요하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강화

중국의 아프리카 지원은 1950년대의 냉전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세계적인 무역의 자유화, WTO가입으로 인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배경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03년 12월에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제2차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채택된 "Addis Ababa 행동계획(2004-2006)"은 양국 간의 인적자원개발, 농업, 인프라구축과 함께 투자 및 무역협력 강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동 포럼과 동시에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비즈니스 회의'에서는 약 100여개의 중국기업 대표들이 아프리카 기업들과의 비즈니스기회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토의하였다. 이어 중국은 2006년 1월 중국 최초의 '아프리카 정책문서(African Policy Paper)'를 작성하고, 중국과 아프리카 간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의 전개를 세계적으로 공표하였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정치적 평등, 상호신뢰, 상호협력⁴⁶⁾, 호혜적 경제협력, 문화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아프리카와의 관계가 중국의 외교 전략에

46) 1)정치적 상호협력: 고위급관리의 방문, 입법부 간의 교류, 정당간의 교류, 국제문제에 있어서의 협력, 지방정부 간의 교류 등. 2)경제적 상호협력: 무역, 투자, 금융 협력: 농업협력, 인프라, 자원협력, 관광사업 협력, 채무 면제, 경제적 지원 등. 3)교육, 과학, 문화, 보건, 사회면에서의 상호협력: 인적자원의 개발과 교육협력, 과학 및 기술협력, 의학 및 보건으로 협력, 대중매체 협력, 행정협력, 영사관계 협력, 시민자원의 교류, 환경협력, 구제 및 인도적 지원 등. 4)평화와 안전: 군사적 협력, 분쟁해결과 평화유지활동, 사법 및 경찰협력, 기타 안전보장협력 등

있어 핵심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6년 11월 중국은 제3차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rum of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에서 2009년까지 아프리카 원조규모를 2006년 수준의 배로 확대할 것을 표명하고, 아프리카연맹(AU) 회의센터 건립, 90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30억 달러의 우대차관제공, 수입업체에 대한 20억 달러의 우대신용대출, 고채무빈곤국(HIPCs)에 대한 부채탕감, 50억 달러규모의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 창설, 최빈국(LDCs)의 대중국 수출상품에 대한 무관세품목 확대(190품목→440품목), 무역 및 경제협력지구의 설치 등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문화협력 분야에서는 15,000명의 아프리카 전문가양성, 100명의 중국인 고급 농업전문가의 파견, 10개의 특별 농업기술 전시센터의 설치, 3억 RMB 무상지원을 통한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센터 건립, 300명의 봉사단파견, 아프리카 학생을 위한 중국정부의 장학금지급(현재 연간 2000명에서 2009년까지 4000명으로 확대) 방침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같은 해 중국은 약 50개국의 아프리카 정상을 초청해 '중국-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자원외교를 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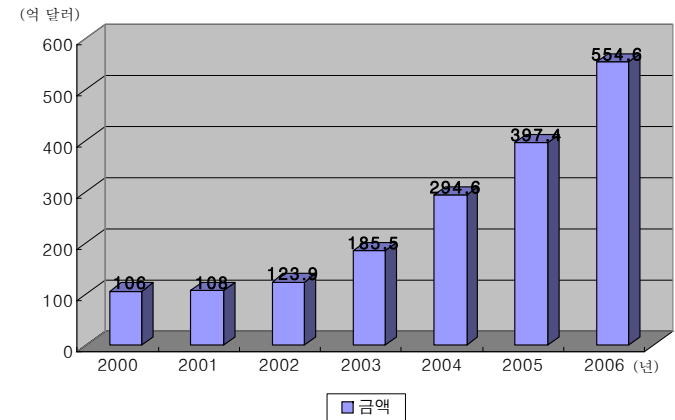
이러한 일련의 흐름 가운데,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2007년 아프리카 8개국 순방가운데 약 53개 협정을 조인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파트너십 및 자원외교를 위한 아프리카 원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⁴⁷⁾ 이러한 중국의 대아프리카 원조강화의 주요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수요 및 신규 수출시장 필요성의 증대 등이 있다. 반면, 아프리카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석유 및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외부의 기술 및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 지역 간의 경제적 니즈는 일치하고 있다.

47) 후진타오는 2008년 카메룬, 라이베리아, 수단, 잠비아,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모잠비크, 세이셸의 8개국을 순방하였다. 순방가운데 농업기술시험센터(모잠비크),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센터(라이베리아), 산부인과 및 소아과병원 건립(카메룬) 등 다수의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었고, 특히 중국의 아프리카 분쟁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며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표명하였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역현황

중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무역관계도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발전하여, 양국 간 무역규모는 1997년 56억 7천만 달러에서, 2000년 105억 달러, 2006년 554억 6천만 달러, 2007년 700억 달러로 약 12배가량 증가하였다.⁴⁸⁾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약 62%가 석유와 가스이며, 비 석유광물과 금속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약 13%) 수출품의 대부분이 1차 산품이다. 반면, 아프리카는 중국으로부터 공장생산물(약 45%)과 기계 및 교통장비(약 31%)를 수입하고 있다.⁴⁹⁾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적인 무역구조는 1차산품의 가격폭락 등의 불안정한 국제가격변동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수출과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국-아프리카 간의 무역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림 1.8〉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역량 추이



【출처】 宋志勇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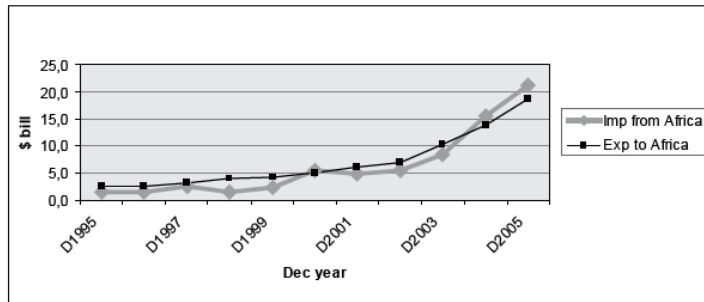
48) Africa Institute of South Africa (2006)

49) Jian-Ye Wang (2007)

한편, 그림 1.9의 2005년도의 수출과 수입액을 살펴보면,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수입된 금액은 약 211억 달러,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187억 달러에 이르러 2003년 이래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지역에 있어 EU와 미국에 이은 최대 무역국이다. 그러나 중국이 아프리카를 향후 중동을 대체할 에너지 공급처이자 수출 시장으로 인식하여 정치와 경제외교를 결합하고 있고, 독점적인 자원개발권 획득을 위해 취약한 거버넌스 국가와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⁵⁰⁾

〈그림 1.9〉 중국의 대 아프리카 수출입 추이 (1995-2005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 Africa Institute of South Africa (2006)

2007년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는 약 800여개의 중국기업과 중국인 75만 명이 진출해 있으며, 특히 석유 및 의류제조업체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국영기업은 가봉과 잠비아 등의 자원채굴에 착수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2006년도 광물연료 수입의 약 24%를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아프리카지역에 의존하고 있다.⁵¹⁾ 이러한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직접투자는 2006년도에만 약 11억 8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확대가 늘 아프리카에서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다.

50) 세종연구소 (2008)

51) 平野克己 (2007)

잠비아의 반 중국 시위와 중국의 석유이익착취에 대한 나이지리아의 폭탄공격,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중국 석유개발현장 습격사건 등의 사례는 중국의 아프리카정책에 대한 아프리카국가들의 반감 및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아프리카의 일련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은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전반적으로 환영받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중국의 직접투자 현황

중국의 국가통계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에 의하면, 중국의 2005년도 대 아프리카 직접투자는 전년도 대비 5%증가한 3억 9,200만 달러였다. 중국의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의 집계에 의하면 2000-2006년의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 누적금액은 약 66억 달러로, 원자재관련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프라건설 및 섬유분야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중국에 투자하는 800여개 기업 중 100여 기업만이 공기업이고, 나머지 민간기업은 무역, 제조 및 가공,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농업과 천연자원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⁵²⁾ 이러한 중국기업의 활발한 아프리카 진출의 배경에는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의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이 있다. 동 기금은 중국정부의 해외진출 전략의 일환으로서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중국기업에게 용자를 제공한다. 반면, 모리셔스, 남아프리카 등의 아프리카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도 광물 및 제지,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들어 중국과 아프리카 기업들 간에 활발한 투자 및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 간략하게 최근 중국이 대 아프리카 원조와 정치 및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 기업들의 비즈니스와 투자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양상을 개관하였다. 이어 3.1에서는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현황과 그것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 및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52) Jian-Ye Wang (2007)

〈Box 1.3〉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

2006년 말, 중국 국무원(Chinese State Council)은 중국개발은행의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China-Africa Development Fund)'의 설립을 수락하였다. 약 50억 달러규모에 이르는 개발기금은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개발, 투자, 경제 및 무역활동을 지원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본 기금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업 및 제조, 에너지, 교외 인프라정비 프로젝트에 제공되고 있어, 아프리카 개발프로젝트 및 그와 관련된 중국기업에 대한 상업적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즉, 본 기금은 주요 목적은 아프리카의 인프라개발을 위한 재정협력이나, 실질적으로는 중국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는 "세계진출(*going global*)"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8년 1월 에티오피아, 가나, 짐바브웨와 9천 달러 상당의 공식적인 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중국의 Overseas Constructions Co Ltd.의 협력아래 2008년 5월 에티오피아에서 유리공장설립 프로젝트가 실시되었고, 가나에서는 Shenzhen Energy Investment Co Ltd.가 200MW 규모의 가스 전력발전소 건립에 착수하였다.

3.1.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

대 아프리카 원조는 중국의 외교전략의 핵심 중 하나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설립(1949년) 이래 아프리카 원조는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는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이 총괄 조정하며, 상무부, 외무부, 아프리카 지역 중국 재외공관, 중국 수출입은행이 각각 관련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10대 아프리카 원조제공국은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에티오피아, 적도 기니, 가나, 모잠비크, 수단, 잠비아, 짐바브웨이나, 이들 국가 외에도 실질적으로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원조유형에는 무상원조, 기술협력, 무이자 차관, 양허성 차관, 부채탕

감이 있다. 무상원조는 주로 프로젝트를 통해 현물(in-kind)로 제공되고 있고, 기술협력은 교육, 보건 의료, 농업, 환경보존, 군사 분야의 전문가파견과 연수생초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⁵³⁾ 주로 기술협력과 인재육성을 통해 아프리카의 국제무역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원조규모, 분야 등의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OECD/DAC은 중국의 2006년도 아프리카 원조규모를 약 10억불로 추정하고 있다.⁵⁴⁾ 한편, 중국이 2001년도에 WTO 및 OECD의 통계데이터에 보고한 Aft 결과에 의하면, 중국은 '무역정책 및 규범'과 '무역개발' 지원에 약 1,100만 달러의 ODA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⁵⁵⁾

2006년 현재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실시한 원조프로젝트는 약 800건이 넘으며, 금액은 약 444억 RMB(약 57억 달러)에 달한다. 부채탕감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2년 내에 아프리카 31개국을 대상으로 약 105억 RMB(약 13억 달러)에 이르는 156건의 부채탕감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이 2년 뒤 순조롭게 이행되었다. 또한, 2006년 제3차 포럼에서 아프리카 고채무 빈곤국(HIPCs) 및 최빈국(LDCs) 33개국을 대상으로 100억 RMB(약 13억 달러)의 추가적인 부채탕감이 발표된 이래, 2007년 5월 현재 중국은 이들 국가 중 11개국과 부채탕감조약을 체결하였다.⁵⁶⁾ 그러나 중국은 DAC 회원국의 부채탕감 프로그램을 적용받지 못한 국가와 대규모 부채탕감을 받은 국가들에게 새로운 차관을 제공하고 있어, 이는 DAC 회원국으로부터 '만성적인 부채(debt sustainability)'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중국은 자국의 원조가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하여 아프리카 내 고용촉진과 세수입의 증가, 신기술도입 등의 효과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현지 노동자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중국은 경제적 이익착취라는 중상주의정책을 전개하고 있을 뿐, 아프리카의 인권과 환경문제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⁵⁷⁾ 예를 들어 중국의 지원을 통해 수단정부는 다르푸르

53) Martyn Davies, et al. (2008)

54)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3897(08.10.2)

55) OECD/WTO (2007) : 중국은 1998년부터 아프리카의 경제 및 행정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56) Jian-Ye Wang (2007)

57) Africa Institute of South Africa (2006)

(Darfur)지역의 학살을 지속하였고, 짐바브웨의 무가베(Mugabe)정권은 국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해 중국정부는 내정불간섭원칙을 표명하며, 중국의 아프리카지원이 과거 식민지와 달리 현지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반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향후 단순한 경제적 이익 추구의 관점을 넘어, 아프리카의 인권 및 민주화와 MDGs달성 등의 국제적 개발논의에 더욱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의 특징과 과제

첫째, 중국의 원조는 1960년대 이래 인권, 거버넌스, 민주주의 등을 원조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내정불간섭 및 호혜평등원칙) 원조에 일정조건(conditionality)을 전제로 부여하는 기타 공여국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중국은 OECD/DAC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DAC회원국에게 요청되는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인권 침해 및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는 국가에게도 원조를 제공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DAC회원국의 협의 및 국제적 원조논의의 장에 중국의 참가를 유도해, 특히 취약국가(fragile states)의 빈곤, 부패, 분쟁, 채무문제의 해결에 있어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둘째, 중국은 대 아프리카 지원전략은 중국의 자원확보 및 경제적 이익추구 전략과 일치한다.⁵⁸⁾ 최근 중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족과 치열한 국내 시장경쟁 등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매년 확대하는 한편, 중국기업들의 무역, 농업, 인프라건설, 광업 및 관광 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주요 협력대상국 또한, 앙골라, 수단, 나이지리아, 잠비아 등의 주요 자원보유국과 남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집트와 같이 중국의 정치·외교전략 상 중요한 국가에 집중되어

58) 小林啓明 (2007)

: 1999년 2월에 발간된 "기업의 해외에서의 국외 가공무역 및 조립업무전개의 장려에 관한 통달"은 우대차관 및 합작사업 협력기금 제공 등 대외원조자금을 활용한 협력대상국 기업과의 협력 생산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원조자금이 투자촉진에 활용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제11차 5개년계획(2006-10) 제9편 "국제지역경제협력" 37장 "국제경제협력의 적극적인 전개"에서는 "走出去(going global)"정책의 일환으로 개도국원조의 증액을 통한 경제기술협력 추진이 명기되어 있다.

있어, 중국원조는 세계적인 빈곤감소 노력 및 MDGs의 달성보다 경제적, 외교적 목적에 주안을 둔 상업적 야망의 발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받고 있다.⁵⁹⁾

셋째, 대부분의 선진공여국이 정부원조와 경제협력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대외원조를 전개함에 있어 경제협력과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⁶⁰⁾ 즉, 중국의 아프리카지원은 서유럽 공여국의 원조와 대조적으로, 일본이 초기에 동남아시아에 시행한 무역과 투자, 원조를 종합한 경제성장 지향적 모델과 유사하다. 실제로 인프라지원은 아프리카원조의 약 79%이며, 36개국에서 260여개의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⁶¹⁾

마지막으로, 중국 상무부는 자국의 원조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중국원조 현황의 파악과 분업(division of labor) 등의 원조협조 및 조화가 용이치 않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양허성 차관을 포함한 전반적인 원조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OECD/DAC 등의 공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3.2. 세계은행과 OECD 등의 중국원조에 대한 견해

중국원조가 아프리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정리하면, 중국의 투자는 아프리카의 수출 및 민간부문을 활성화하여 아프리카의 빈곤감소에 공헌하고 있다. 반면, 1) 거버넌스가 열악한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민주화의 촉진을 저해함, 2) 투명성이 없는 원조로 실재를 파악하기 어려움, 3) 용자로 인한 아프리카국가의 채무증가, 4) 값싼 중국제품의 유입으로 현지산업 발전이 저해될 위험성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제3절의 마지막으로 세계은행과 OECD 등의 국제기관이 중국원조의 대 아프리카 원조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59) Martyn Davies, et al. (2008)

60) 따라서 선진공여국이 독립적인 대외원조기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의 대외원조는 외교부, 상무부, 위생부, 농업부, 교육부 등의 정부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61) 渡直信他 (2007)

세계은행의 견해

세계은행은 중국의 수출이 국내 실업증가, 현지 경쟁 산업의 도태 등 아프리카 국내 산업에 미칠 타격과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우려하여 관세 및 국내시장, 무역 등의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⁶²⁾ 관세개혁이란, 아프리카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중간수입제에 대한 아프리카의 관세철폐를 통해 아프리카 수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내시장 개혁이란, 국내 기업 간의 경쟁촉진과 제도강화, 인프라 및 인적, 물적 자본 등의 아프리카의 공급자로서의 제약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역개혁은 아프리카의 무역절차를 개선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말한다.

OECD의 견해

OECD는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야기되는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기회를 환영하는 한편, 정치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에 대한 부적절한 이익배분을 회피해야 하며, 아울러 지속적인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⁶³⁾ 또한, OECD는 중국을 포함한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아프리카가 무역자유화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을 위한 원조(AfT)'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2008년 10월, OECD/DAC는 중국의 대 아프리카 대외 원조정책 모니터링 강화의 일환으로 '중국-DAC 공동연구반(China-DAC Study Group)'을 설치하였다.

62) Harry G. Broadman (2007)

63) OECD (2006d)

제2장 무역을 위한 원조(AfT)와 빈곤감소

공적원조와 마찬가지로 국제무역은 MDGs의 추진 및 달성을 가속화하는 촉매역할을 한다.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은 다자무역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급격한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불공평한 무역규범과 국내 및 국가 간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는 개도국의 국제무역의 혜택 수혜를 통한 경제사회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UNDP는 오늘날 약 6억 8천만 명이 거주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이 세계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 천만 명의 벨기에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선진국 수출 시 직면하는 무역장벽은 선진국 간의 무역장벽에 비해 3-4배나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⁶⁴⁾ 따라서 보다 공정한 무역규범의 확립과 개도국의 시장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⁶⁵⁾

제2장에서는 이러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구체적인 개념과 세계무역기구(WT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은행 등의 정책, 주요 회의를 통해 살펴본 국제적 흐름, AfT의 규모, 빈곤감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원조구조(aid architecture)의 다양화의 흐름가운데 정부원조기관이 민간부문과의 협력(PPP) 아래 어떠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실시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다.

64) UNDP (2005)

65) 시장접근성의 향상에 관해서는 특히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 상품 수입 시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를 통한 개도국의 수출능력 및 경쟁력 향상이 국제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및 쿼터면제를 통한 시장접근성의 향상은 WTO뿐만 아니라 유엔의 천년개발계획(MDGs) 및 최빈국행동동맹회(Programme of Action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cade 2001-2010)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1. 무역을 위한 원조의 개념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국가개발전략 중 무역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은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로 간주된다. AFT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나, 통상적으로 '개도국의 무역을 돕는 지원, 또는 특별히 무역협정을 통해 얻는 혜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의미한다.⁶⁶⁾ 여기에는 무역역량 강화 및 저소득 국가가 시장참여에 있어 직면하는 공급자 측면의 제약(supply-side constraints)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WTO 및 OECD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 분야를 크게 다음의 6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⁶⁷⁾

- 무역정책 및 규범(trade policy and regulations)
- 무역개발(trade development)
- 무역관련 인프라(trade-related infrastructure)
- 생산역량강화(building productive capacity)
- 무역관련 조정(trade-related adjustment)
- 기타 무역관련 니즈(other trade-related needs)

〈표 2.1〉 '무역을 위한 원조'의 정의 및 내용

무역정책 및 규범	개도국의 국제무역시스템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협력대상국의 무역관련 행정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 1) 협력대상국 정부의 광범위한 무역정책 체계화, 2) 무역협상참가, 3) 무역규율 및 기준의 이행 등에 대한 현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무역개발	기업들이 무역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비즈니스 지원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말함. 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금융 및 투자의 활성화, 시장분석, 전자상거래 실시지원 등이 포함됨
무역관련 인프라	도로 및 항만건설 등의 인프라정비
생산역량강화	협력대상국의 상품생산 및 서비스제공 역량의 개선
무역관련 조정	수입관세인하 및特惠시장접근 철폐로 인해 야기되는 국가재정의 불균형 문제 등 협력대상국의 무역정책개혁에 수반되는 조정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기타 무역관련 니즈	PRSP를 비롯한 국가개발계획에서 무역 관련 우선순위로 분류된 활동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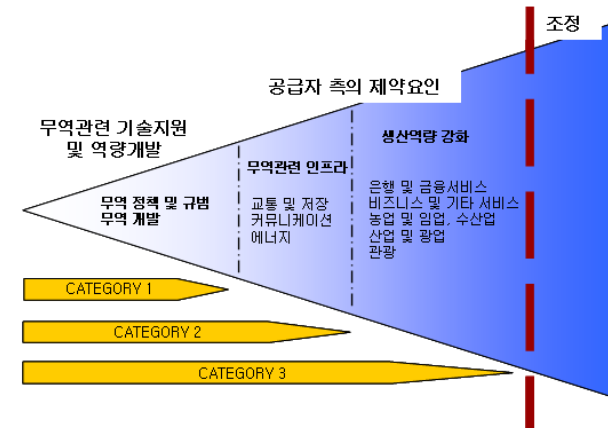
66) Dominique Njinkeu, et al. (2008)

67) WTO/OECD (2007b), WTO (2007)

상기의 일련의 무역지원은 무역 및 직접투자의 축진이 협력대상국의 고용증대 및 민간부문 활성화, 신기술의 개발 및 유입을 촉진시켜 최종적으로는 협력대상국의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전형적인 경제성장 지향형 협력모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무역정책 및 규범'과 '무역개발'지원이 전형적인 무역관련 기술원조 및 역량강화와 중복되는 반면, '무역관련 인프라'와 '생산역량강화', '무역관련 조정'원조는 AFT로 인해 확대된 지원이다. 따라서 AFT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무역관련 지원 메커니즘을 WTO의 다자 간 무역자유화의 논의 가운데 강화구축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공여국의 경제성장 지원과 AFT를 어떻게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나, OECD는 일반적으로 그림 2.1과 같이 AFT를 세 가지('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 '무역관련 인프라정비', '생산역량강화')로 유형범주화하고 있다.⁶⁸⁾

〈그림 2.1〉 '무역을 위한 원조'의 유형범주화



【출처】 OECD (2006a)

68) OECD (2006a)

OECD에 의하면, 협력대상국 정부의 무역정책 및 규범, 기타 무역개발을 지원하는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TRTA/CB)'와 '무역관련 인프라정비'는 보편적으로 AfT의 범주에 포함된다. 반면, 협력대상국의 다자무역시스템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supply-side constraints)을 해결하기 위한 '생산역량강화'(카테고리 3)와 협력대상국의 조정비용(adjustment cost) 지원은 공여국에 따라 AfT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과 IMF, 기타 선진공여국은 도하라운드의 진행과 보조를 맞추어 수출상품의 다양화, 협력대상국의 재정개혁 등의 조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AfT는 양자 간 원조, 또는 WTO 및 지역개발은행과 같은 다자 기구 및 지역금융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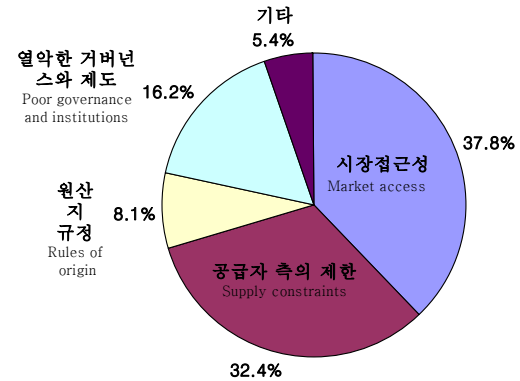
이상을 정리하면, AfT란 다자무역체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개도국의 무역자유화 및 무역장벽 해소를 지원하는 무역관련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주요 목적인 전형적인 성장지향형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AfT에 대한 인식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선진공여국의 AfT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식하는 국제무역장벽과 그들이 요청하는 AfT가 무엇 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 정의되고 있는 AfT가 얼마나 협력대상국의 니즈에 합치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우선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제무역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가 2007년도에 아프리카 53개국의 중앙은행 및 경제개발관련 부서의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32개국 57명이 응답)에 의하면,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들은 수출신장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제한된 시장접근성(37.8%)과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공급자 측의 제한(32.4%)을 지적하고 있다.⁶⁹⁾

69) ECA Survey of African Policymakers on the Monterrey Consensus, March and April 2007

〈그림 2.2〉 아프리카지역의 수출확대 장벽



【출처】 ECA Survey of African Policymakers on the Monterrey Consensus, March and April 2007

이러한 수출확대 장벽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공여국에게 1) 협력대상국이 국제무역 참가 시 직면하는 제약(supply-side constraints)을 극복하기 위한 역량강화(생산역량강화 및 인프라정비 포함), 2) 무역조정 및 실행 등 무역시스템 동참에 있어 드는 추가비용 지원, 3) 무역정책개발 및 규율제정 프로세스 참가에 대한 지원을 AfT의 3대 분야로 요청하고 있다.⁷⁰⁾ 따라서, OECD와 WTO가 정의하는 '무역정책 및 규범', '무역관련 인프라', '생산역량강화' 등의 지원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관련 요청사항(니즈)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아프리카 국가들은 AfT가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반복하는 일련의 구호에 멈추지 않을 것 과 공여국의 조건제한(conditionality)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70) Carin Smaller (2006)

〈Box 2.1〉 역량개발과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 및 국제원조기구는 인프라구축 지원, 생산역량 강화, 민간기업의 무역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무역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 중 무역관련 역량지원은 개도국의 지속적인 국제무역시스템 동참에 기여함으로써, 개도국이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무역의 혜택 가운데 국가소득을 확대하며, 나아가 국제무역 규범 및 의무를 준수할 수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무역역량 강화는 개도국이 국제무역 프레임워크 및 프로세스에 적극 동참하는데 있어 느끼는 선진국과의 역량의 차이(capacity gaps) 지원한다.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국제적 흐름

최근 선진국의 무역관련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원조협조와 효과성제고를 위한 국제원조구조(aid architecture)관련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2절에서는 Aft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주로 2000년대의 무역자유화 및 아프리카개발관련 주요 회의와 이니셔티브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알아보자.

2.1. 시대별 추이

개발과 무역의 관계는 무역자유화관련 정책의 수립을 통해 개도국의 세계경제 참여를 지원코자 한 1980년대의 IMF 및 세계은행의 무역관련 지원프로그램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빈곤감소 전략의 등장과 함께 대부분의 개발원조가 보건의료 및 교육, 공공지출관리 등에 집중되어 인프라 및 농업, 무역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개도국들이 빈곤감소를 위해 자국의 경제성장률 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발표된 '유엔 밀레니엄 무역 특별반(UN Millenium Task Force on Trade)'의 보고서는 무역이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MDGs의 빈곤 감소 목표 달성을 가속화한다는 이론을 지지하였다.⁷¹⁾

2001년

2001년 11월 카타르(Qatar)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일명 도하라운드)는 21세기의 무역자유화 논의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다자무역협상이자 개도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발문제를 핵심의제로 도입하게 된 주요 라운드이다. 이후 개발도상국의 무역관련 제도, 인적자원, 공급능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41-43항)라는 논의는 오늘날까지 WTO 협상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도하라운드 이후 공여국 및 다자기구는 개발도상국 및 체제이행 국가의 효율적인 국제무역시스템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관련 기술 지원 및 역량강화를 확대하고 있다.

도하라운드에서는 1986-1993년까지 계속된 우루과이(Uruguay)라운드의 뒤를 이어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삭감과 관세인하를 통한 농산물 무역자유화, 기타 비 농산물, 서비스시장 개방, 무역규범, 환경 등의 협상의제와 방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무역자유화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부원칙에는 농산물 및 비 농산물(NAMA)⁷²⁾분야의 관세인하,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삭감, 특별품목(SP) 인정수준 등이 포함되며,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무역자유화협의를 위해 개도국의 의무사항에 대해 '특별하고도 차별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 treatment: S&D)'를 하고 있다.⁷³⁾ 이어 12월 19-20일에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대 개도국 기술협력기금인 '도하개발어젠다 글로벌 신탁기금(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DDAGTF)'의 설치가 승인되었다. 그러나 도하라운드는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해대립으로 오늘날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해 4월, OECD는 아이슬란드, 터키, 멕시코,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2개 회원국과 유럽위원회(EC)의 참가 하에

71) Dominique Njinkeu, et al, (2008)

72) NAMA는 비 농산물 시장접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의 약자이다.

73) S&D는 WTO 협정 상 개도국을 배려한 조항으로 개도국의 의무면제, 경과조치의 부여, 기술지원 등의 규정이 포함된다.

'OECD 무역역량개발에 관한 DAC 가이드라인(The DAC Guidelines Strengthening Trade Capacity for Development)'을 채택한바 있다.⁷⁴⁾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무역역량개발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가,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 확보, 사업종료 후에도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역량강화, 공여국간 협조,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공여기관으로서의 역량강화, 개도국의 무역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자금제공 및 기술협력 등이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Box 2.2〉 도하개발어젠다(DDA)의 교섭분야

농업: 국내 농업보조금, 수출경쟁, 시장에 대한 접근성관련 교섭
비 농산물분야: 농산물 이외의 모든 품목(광공업품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와 삭제
서비스: 외국자본 규제 및 인적이동, 국경을 넘는 무역 등의 자유화교섭
개발: 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 및 지원책 등을 논의
규율: 반덤핑(antidumping), 보조금 등에 관한 교섭
원활한 무역: 투명한 무역절차 및 예측가능성과 형평성 제고, 간소화 및 신속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 교섭
기타 지적재산권 및 무역과 환경과 관련된 교섭이 있음

2002년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유엔 '개발재원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는 미국, 유럽연합 등의 ODA증액 선언과 혁신적인 개발재원, 민관협력(PPP)을 통한 외부 민간재원의 유인 등 개발재원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개발재원은 원조자금 외에 개발도상국의 국내 자금 동원, 민간투자자와 무역 촉진, 채무탕감, 국제무역확대 등 제반 수단을 통해서 확충되어야 함이 강조되어,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무역 및 투자 등의 성장지향형 협력이 중요하다는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재확인되었다.

또한, 같은 해 WTO와 OECD의 협력 아래, 무역관련 역량강화 및 기술원조에 대

74) OECD (2001)

한 정보제공과 공동실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WTO/OECD 무역역량강화 데이터베이스(Trade Capacity Building Database: TCDBD)'가 창설되었다.

2003년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에 이어 선진국의 농산물 생산과 수출증대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철폐와 개도국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기회보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도하라운드에서 개도국의 요청이 수렴된 신 무역규범합의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데 반해, 칸쿤에서는 무역규범개정에 있어 의견대립으로 인해 그다지 교섭의 진전을 꾀하지는 못하였고,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에도 실패하였다.

2005년

2005년 7월, 스코틀랜드 글렌에글스(Gleneagles)에서 G8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선진국들은 아프리카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한 본격적인 ODA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회의에서 G8정상들은 2010년까지 자국의 ODA를 2004년 대비 두 배로 확대할 것과 다른 공여국들과 함께 대 아프리카 총 ODA를 250억 달러까지 증액할 것, 자격을 갖춘(eligible) 고채무빈곤국(HIPCs)의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개발협회(IDA), 아프리카개발기금(ADF)에 대한 100% 부채탕감 등을 공약하였다. 국제사회는 유엔 총회를 통해 몬테레이선언의 재원확대계획이 그다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재정부족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MDGs 달성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제6차 WTO 홍콩 각료회의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 특별작업반'의 결성과 함께 처음으로 AfT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국제적 장을 마련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통합체제(Integrated Framework: IF)'의 확대, 최빈국(LDCs) 산품에 대한 특별취급(무관세, 쿼터면제)합의와 신흥공여국을 포함한 각국의 AfT 재원확대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미국은 무역관련 지원을 2010년까지 27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하였고, EU는 2010년까지 무역관련 지원을 위해 연 20억 유로(EC 10억 유로, EU회원국 10억 유로)수준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할 것을 공약하였다. 또한, 홍콩회의에서는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삭감과 관련하여 목화수출업자에게

지불하던 보조금의 삭감이 협의되었다. 즉, 미국 등의 선진국은 목화에 대한 모든 수출보조금을 2006년도에 철폐할 것과 최빈국(LDCs) 목화에 대해 무관세 및 쿼터면제 조치를 제공할 것이 결정되어, 목화생산에 대한 왜곡된 무역현황을 시정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AfT가 도하라운드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나 도하라운드의 성공 자체가 개도국에 미치는 혜택을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과⁷⁵⁾, 이러한 선진공여국의 원조가 협력대상국의 자체적인 국제시장접근 노력과 성과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2006년

2006년 초, WTO의 '무역을 위한 원조 특별반(Aid for Trade Task Force)'이 설치되었다. 이는 2005년의 홍콩 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의 무역부 장관들이 WTO 사무총장에게 AfT의 집행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특별반의 설치를 요구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같은 해 7월, 특별반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을 바탕으로 WTO 및 공여국, 협력대상국에 대한 32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한편, 파스칼 라미 WTO 사무국장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설치된 '통합체제(IF)'의 확대를 위한 특별반(task force)은 개도국의 조정비용(adjustment cost)부담 등 무역정책개혁의 부정적 측면을 원조로 대처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개도국이 관세율인하로 관세수입의 감소가 초래되었거나 국내보조금개혁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식량 판매량이 감소했을 경우 안전책(safety net)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정책개혁과 조정비용에 대한 지원은 개도국의 공급능력 및 무역관련 인프라구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중요한 과제이다. WTO협정의 실시는 빈곤국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만일 도하어젠다가 실행되었다면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지역의 관세 상실금액은 약 100억 달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약 17억 달러에 이르렀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⁷⁶⁾

75) 2007년 11월 2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First Global Aid for Trade Review'의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의 연설 중

76) Carin Smaller (2006)

2007년

IF의 관리기관인 IFWG(Integrated Framework Working Group: 이후 IF Interim Board로 승계)과 IFSC(Integrated Framework Steering Committee)는 2007년 5월 1일 회의에서 '강화된 통합체제(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EIF)' 종합계획에 대한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 본 종합계획은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 제기된 이래, 약 19개월간의 이행팀(Transition Team)과 세 개 관련팀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17개 공여국이 스톡홀름에 모여 5년간 '강화된 통합체제 신탁기금(Enhanced IF Trust Fund: EIFTF)'을 위해 1억 1,300만 달러를 출연할 것을 공약하였다.

이어 2007년 가을, WTO는 지역의 무역 및 재정부장관, 민간 주요인사, 공여기관 대표를 초청하여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3개 지역에서 '지역 평가(regional review: Mobilizing Aid for Trade)'회의를 개최하였다. 평가회의에서는 무역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개도국이 글로벌화 및 지역통합을 통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관점 하에, 3개 지역의 개발에 있어 무역역량구축과 무역확대, 지역 및 국가차원의 무역전략 수립이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그동안 개도국에 대한 직접적인 양자지원이 중시되고 있던 가운데, 국경 간 인프라구축 및 지역통합 등을 통한 지역차원의 지원이 강조된 것은 특이할 만하다. 나아가 동 평가회에서는 협력대상국 및 지역의 수출확대와 무역경쟁력 강화, AfT 재원확대 및 효과적인 활용, 국내외 민간투자 등 민간재원의 활용, 파리선언원칙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확립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어 11월에는 WTO, 세계은행, IMF, UNCTAD, UNDP의 정상과 각국의 무역·재정부 장관의 참가 아래 첫 번째 고위급 '무역을 위한 원조 국제평가(Global Aid for Trade Review)'회의가 개최되어, 각 공여국 및 다자기구가 실시하고 있는 AfT 및 실시계획 중인 AfT에 대한 실행원칙이 제시되었다. 주요 실행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AfT가 파리선언의 원조의 효과성제고와 MDGs의 빈곤감소전략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전략 및 원칙 아래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AfT는 협력대상국의 시민사회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현지의 주인의식(local

ownership)과 현지 국가개발계획 아래 우선순위결정 및 재정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재원배분 시 현지의 빈곤감소, 고용창출, 양성평등이 강조되어야 함
- AfT 프로그램은 협력대상국의 빈곤층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격한 경제정책변화를 요구해서는 안 됨
- AfT에 있어 공여국 제품의 구매와 컨설팅 및 업체의 활용을 요청해서는 안 됨
- AfT로 인해 협력대상국의 부채가 가중되어서는 안 됨
- AfT는 공여국의 무역협상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협력대상국의 진정한 경제개발과 공정무역실현에 기여하여야 함
- AfT 프로그램의 평가는 상호책임원칙 하에 협력대상국의 참여를 동반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또한, 2007년도에는 AfT의 투명성강화가 AfT의 양적 및 질적 제고에 직결된다는 관점 하에, WTO와 OECD가 OECD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데이터베이스로의 통합 등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해였다.

2008년

WTO의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2008년 2월 WTO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CTD)' 회의에서 2008년도의 AfT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에서는 전년도 '무역을 위한 원조 국제평가'회의에서 지적된 모니터링 개선, 구체적인 실행, 개도국의 주인의식 강화를 골자로 각 구체적인 확대계획이 제시되었다. WTO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는 AfT의 흐름만이 아니라 이니셔티브의 효과(impact) 및 성과(result)까지 측정될 전망이며, 각 이니셔티브와 계획은 국가별 및 지역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같은 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세계무역기구(WTO),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A)는 '무역을 위한 원조 작업반(AfT Working Group)'을 설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아프리카 무역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WTO 사무국은 2008년 10월, 최빈국(LDCs)의 개발목적과 무역을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강화된 통합체제(EIF)' 사무국을 설립하고,

잠비아 통상산업부 통상교섭대표 Tembo씨를 초대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으로 선임하였다. EIF 사무국은 개도국 정부와의 조정 및 실무지원의 중심으로, WTO 본부에 위치하나 여타 WTO 사무국과는 별도의 지위에 있다.

〈Box 2.3〉 '통합체제(EIF)'란

'통합체제(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for LDCs: IF)'는 1997년 최빈국(LDCs)이 스스로 무역니즈를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설치된 대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협력 프레임워크로, 49개 최빈국 중 46개국 이 지원을 받았다. IF는 1) '무역통합진단연구(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ies: DTIS)'를 통한 무역장벽 분석, 2) 세계은행의 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 등의 협력대상국 국가개발계획에 무역을 포함시킴, 3) 무역관련 지원의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 IF는 최빈국의 무역개발니즈와 공여국의 지원을 연결하기 위한 IMF, ITC, UNCTAD, 세계은행, WTO, UNDP의 국제이니셔티브이다. IF는 DTIS를 위한 자금지원(한 국가 당 30만 달러)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지원(한 국가 당 백만 달러)의 두 가지 펀딩 스킴으로 나뉘며, 최빈국에 대한 자금지원은 다자간 IF 신탁기금(Trust Fund) 또는 공여국 및 지역기구, 다자기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2005년 9월, IMF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는 IF의 강화 및 추가적 재원확보에 대해 논의하였고, 2006년 6월 특별반(Task Force)은 '강화된 통합체제(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EIF)'를 제안하였다. EIF에서는 추가적인 재원확대(처음 5년 간 4억 달러규모)와 함께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공여국 간의 원조조화를 통한 모니터링과 평가강화 등 파리선언의 이행을 중시하고 있다.

〈표 2.2〉 '무역을 위한 원조'의 주요 국제회의 및 이니셔티브 (2000년대)

연 도	주요 국제회의 및 이니셔티브
2000	(6월) 코토누(Cotonou)협정이 EU와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연안(ACP) 국가 간에 체결되어, EU와 ACP 국가 간의 경제파트너십협정(EPA)이 시작됨
2001	(4월) 'OECD 무역역량개발에 관한 DAC 가이드라인(<i>The DAC Guidelines Strengthening Trade Capacity for Development</i>)' 채택
	(11월) WTO 제4차 각료회의, 도하(Doha) 라운드가 시작됨
2002	(3월) 개발재원의 확대 및 혁신적 개발재원의 도입을 위한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가 이루어짐
	(11월) 'WTO/OECD 무역역량강화 데이터베이스(Trade Capacity Building Database: TCBDB)' 창설

계속 〈표 2.2〉 '무역을 위한 원조'의 주요 국제회의 및 이니셔티브 (2000년대)

연 도	주요 국제회의 및 이니셔티브
2003	(9월)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선진국의 농산물 생산과 수출증대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철폐와 개도국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기회보장이 본격적으로 논의됨
2005	(7월) 스코틀랜드 글렌이글스(Gleneagles)에서 G8 정상회의가 개최됨
	(12월) 제6차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Aft 이니셔티브가 제창됨
2006	(5월) 공여국의 개발재원확대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1회 아프리카 개발재원 각료회의(African Ministeri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가 개최됨
	(7월) WTO의 '무역을 위한 원조 특별반(Aid for Trade Task Force)'의 권고 보고서 제출
	(7월) '통합체제(Integrated Framework: IF)'의 확대를 위한 특별반(Task Force)이 결성됨
2007	(1월)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
	(4월) 몬테레이선언 이행을 통한 아프리카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Africa Progress Panel(APP)이 설립됨
	(6월) OECD와 WTO가 공동으로 공여국과 협력대상국의 Aft전략과 정책, 실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실시함
	(6월) 독일 하일리겐담(Heiligendamm) G8정상회담에서 선진국들이 NEPDA Infrastructure Consortium for Africa(ICA)지원을 공약함
	(9-10월) WTO의 남미와 캐리비언,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지역에서 Aft '지역평가(regional review)'회의가 개최됨
	(11월) WTO, 세계은행, IMF, UNCTAD, UNDP와 각국의 무역재정부 장관의 참가 아래 첫 번째 '무역을 위한 원조 국제평가(1st Global Aid for Trade Review)' 고위급 회의가 개최됨
2008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세계무역기구(WTO),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는 '무역을 위한 원조 작업반(AFT Working Group)'을 설립
	(7월) 제7차 WTO 각료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으나 잠정타협안 합의 실패, 협상 결렬
	(10월) '강화된 통합체제(EIF)' 사무국 설립

2.2. 공여기관의 무역을 위한 원조와 파리선언

이상 2000년대의 AfT의 흐름을 도하라운드의 국제적 전개와 함께 개관하였다. 우리는 일련의 다자통상교섭의 장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배려의 필요성이 명확히 인식되는 가운데, 각 공여기관의 무역 및 투자협력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에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AfT의 국제적 흐름가운데 공여기관이 어떠한 전략과 정책을 시행·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여기관의 무역을 위한 원조

OECD와 WTO는 2007년 6월 AfT전략과 정책, 실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⁷⁷⁾ 26개 공여국과 13개 다자원조 및 지역기구의 설문조사의 답변에 의하면,⁷⁸⁾ 대부분의 공여국 및 기관이 2005년의 WTO 홍콩차로회의를 계기로 WTO 특별작업반(Task Force)의 정의에 입각한 AfT전략을 수립하였거나 수립할 계획이며, AfT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선 공여기관은 공통적으로 지역무역활성화가 개도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착목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등 지역수준의 전략책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USAID는 2003년 보츠와나의 가보로네, 가나의 아크라, 케냐의 나이로비 등에 무역허브(Southern Africa Global Competitiveness Hubs)를 창설하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니즈를 반영한 무역경쟁력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에는 아프리카지역의 통합과 EU회원국과의 경제파트너십협정(EPA)체결 등의 무역역량강화를 실시하는 UNDP 이니셔티브에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77) 공여국 설문지 <http://www.oecd.org/dataoecd/15/26/39120395.pdf>
협력대상국 설문지 <http://www.oecd.org/dataoecd/16/17/39124158.pdf>
설문결과: WTO/OECD (2007b)

78) 공여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공여기관: 국제 무역정보 및 협력기구(AITC), 아시아은행(ADB),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SCAP), 유럽재건개발은행(EBRD), 유럽위원회, 유엔식량기구(FAO), 미주개발은행(IADB), 국제통화기금(IMF), UNCTAD/WTO 국제무역센터(ITC), 이슬람개발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

두 번째,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2005년 홍콩 서약(Hong Kong pledge)을 바탕으로 AfT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13억 달러에서 2010년까지 27억 달러로 두 배 증액할 것을, 일본은 2006-2008년 사이에 무역, 생산, 배분관련 인프라정비에 100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공약하였다. 그리고 유럽위원회(EC)는 2010년부터 무역정책 및 규범, 무역개발을 위해 매년 10억 유로수준으로 지원할 것을, 영국은 2010년까지 무역관련 양자원조를 연간 1억 파운드씩 증액할 것을 각각 약속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증액은 약정하지 않고 있으나, 아프리카 최빈국(LDCs)의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체제(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EIF)'와 다양한 양자 및 다자프로그램에 AfT를 반영할 것을 표명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여국 및 국제원조기관의 AfT는 무역정책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국가 간 무역대화를 강화하며, 개도국의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고 평가되고 있다.⁷⁹⁾

파리선언과 무역을 위한 원조

여기서는 각 공여국들이 파리선언 이행을 통한 AfT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파리선언의 5대 주요원칙⁸⁰⁾을 통해 살펴보자.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

협력대상국 차원의 개발에 대한 확고한 정책주도성 및 협력대상국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는 세계통상체제 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바, 대부분의 공여기관은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국별 AfT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⁸¹⁾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역진흥(trade facilitation)이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계획에 있어 우선순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유럽위원회(EC), 핀란드, 미주개발은행(IADB)의 경우 협력대상국과의 지속적인 정책대화를 통해 무역개발의 중요성을 제고

79) OECD (2006b)

80) 1)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 2)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에 공여국 원조의 일치(alignment), 3) 공여국간 원조 조화(harmonisation), 4) 성과중심 관리(managing for results), 5)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간의 상호 책임 강화(mutual accountability)

81) OECD (2006a)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AfT를 실시해 온 국가들이 경제 인프라구축과 무역생산역량 강화 등의 무역개발을 각국의 주요 국가정책으로 삼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 뉴질랜드와 프랑스의 경우,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무역개발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무역역량강화와 관련된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대상국 정부의 무역개혁 지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원에 관해서는, 무역과 다른 경제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협력대상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협력대상국 내 정책대화를 통해 빈곤감소전략(PRS)과 같은 국가차원의 개발전략에 AfT를 반영(mainstreaming)하는 것은 협력대상국 주도의 명확하고 전략적인 원조를 가능케 함으로써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⁸²⁾ 미국은 70개 이상의 현지 및 지역 사무소를 통해 협력대상국 이해관계자와의 정책대화를 실시하고 있고, 유럽위원회(EC)는 정기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미주개발은행(IADB)은 매년 차관레벨의 정책대화를 통해 무역 및 지역통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⁸³⁾ 영국과 독일의 경우, 세계은행, 유럽위원회(EC) 등 다자기관을 협력대상국과의 정책대화의 주요 통로로 삼고 있다.

협력대상국의 국가시스템 활용(alignment)

대부분의 공여기관은 협력대상국의 정부조달시스템이나 공공재정관리(PFM) 시스템을 활용한 AfT를 지향하고 있으나, 협력대상국 정부의 공공재정 시스템의 효과성과 투명성, 신뢰성에 따라 그 활용여부는 달라진다.

82) UNCTAD (2004)

83) 지역 내의 무역통합을 통해 아프리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치열한 국제무역에서보다 수출상품의 다양화를 추진하기가 용이해진다. 상품다양화 촉진 및 기업개발, 지역안보를 위해서는 관세절하 및 제도적 인프라구축 등을 통한 지역 내 무역통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1980년에 남부아프리카 9개국에 의해 설립된 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SADC)는 대표적인 아프리카의 지역통합 이니셔티브로, 지역 내(남아프리카 및 모리셔스와 같은 비교적 발달한 국가에서 최빈국(LDCs)에 이르기까지)의 FDI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http://www.sadc.int/>를 참조)

공여기관간의 원조조화(harmonisation)

공여기관간의 AfT 원조조화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공동 기술지원계획(Joint Integrate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JITAP)'이 있다. JITAP은 1998년 WTO, ITC, UNCTAD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위한 공동 기술협력 프로그램으로,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가나, 케냐,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말라위, 세네갈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ITAP는 IF와 같이 13개 공여기관의 신탁기금(trust fund)으로 운영되며, 제네바의 대표부와 2개 지역(코트디부아르와 우간다)의 조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역할에는 공여기관의 원조자원 투입 및 의견조정⁸⁴⁾, 각국의 프로그램(인적자원개발,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내법 및 인프라정비 등) 실시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IF와 달리 JITAP는 대상국을 최빈국(LDCs)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국제무역센터(ITC), 일본,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에서는 국별원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동협의과정의 이용 및 공동분석이 정례화 되어 있는 반면, 포르투갈과 한국, 스페인 등은 아직 공동협의를 통한 원조계획 수립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AfT를 위해서는 성공사례 및 혁신적인 원조방안의 공유, 현지에서의 프로그램 접근방법(PBAs)과 공동미션 수행 등 공여국간의 협조(co-ordination)가 필수적이다. AfT 프로그램을 주요임무 실행하는 지역기구 및 다자기구에 대한 재정지원도 개도국 지역 내 경제통합과 무역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원조조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성과중심적인 관리(managing for results)

AfT는 인프라정비, 무역생산역량강화 등 다양한 지원분야로 구성되기에 명확한 목표 및 일정계획을 수립하기가 용이치 않다. 미국은 명확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평가

84) 본부와 각 공여국 간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주로 인터넷(Internet-based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Facility)이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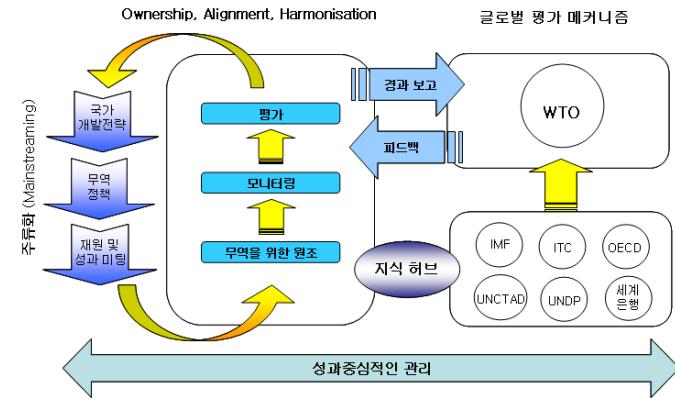
체계 확립양상은 각 협력대상국의 실정에 따라 다름을 강조하였고, 일본은 AfT의 성과는 인프라정비만 하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단시일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 등 장기간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공여기관간의 통일된 AfT 세부 평가방법은 없으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칠레,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세계은행 등이 AfT의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원조조화와 상호책임강화 등의 효율성 제고의 노력이 성과관리에 있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강화된 통합체제(EIF)'의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간 상호책임강화(mutual accountability)

마지막으로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간의 상호책임과 개발재원활용의 투명성강화가 AfT에 있어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호주와 칠레, 덴마크,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AfT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평가할 시 협력대상국 및 지역기구, 기타 공여기관과 공동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 매년 개최되는 역내 무역장관모임에서 '태평양지역 무역진흥 프로그램(Pacific Regional Trade Facilitation Programme)'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림 2.3〉 효과적인 '무역을 위한 원조' 파트너십



【출처】 OECD (2006a)

〈Box 2.4〉 다자기구 및 지역개발기구의 '무역을 위한 원조'

□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UNCTAD는 1964년 창설 이후, 개도국 및 체제이행국의 효과적인 다자무역통합을 위해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왔다. 개도국의 국제무역시스템 통합을 위한 주요 지원활동에는 정부 간 정책대화, 합의도출(consensus building), 연구·분석,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등이 있다. UNCTAD는 2005년의 'WTO 무역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족을 계기로, 이듬해 AfT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및 범지구적 차원의 AfT를 보완하는데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와 지역무역통합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최근 UNCTAD는 국제무역센터(ITC) 및 WTO와의 대 아프리카 공동 무역진흥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실시,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대학과의 공동보고서 작성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UNCTAD의 기술협력은 대부분 공여국의 자금지원(2006년도, 3,220만 달러, 전체 재원의 약 91.4%)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⁸⁵⁾

□ 국제통상정보협력기구(Agency for International Trade Information and Cooperation: AITIC)

AITIC은 스위스 개발원조정책의 일환으로, 1998년 국제무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less advantaged countries: LACs)들의⁸⁶⁾ 무역자유화와 다자무역시스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업무는 LACs, 즉 공급자 측의 (supply-side) 역량강화와 무역관련 인프라지원이며, WTO협정과 공여국의 ODA를 통한 AfT의 활성화를 중시하고 있다.

□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 ITC)

ITC는 AfT 어젠다 중 '무역정책 및 규범', '무역개발', '생산역량강화'를 기본골격으로 1) 수출활성화를 위한 무역환경조성 정책수립, 2) 수출업자에 대한 서비스제도의 강화, 3) 소규모 수출업자들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ITC는 아프리카를 중점 협력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아프리카연합 위원회(AU Commission),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A), NEPAD, 기타 아프리카 지역 경제공동체와의 정치·재정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ITC의 핵심지원 분야에는 수출 전략의 계획 및 실행지원, 정책결정자의 수출정책 및 제도수립 지원, 중소수출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역량강화, 무역정보제공 및 시장분석능력 강화, 소기업의 국제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강화 등이 있다.

□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

2001년 7월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는 아프리카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증시킨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 세계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NEPAD는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평화, 안전보장, 민주주의, 선정과 함께 아프리카시장의 접근성(market access)확대와 국내지축 및 투자증대, 세계무역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해외직접투자의 유치, 부채탕감 등 무역관련 정책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⁸⁷⁾

85) UNCTAD (2008)

86) LACs에는 50개 최빈국(LDCs) 및 몇몇 저중소득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이 포함되어 있다.

87) NEPAD (2005)

3. 무역을 위한 원조의 규모

2002년에서 2005년도의 무역을 위한 원조(AfT) 약정금액은 평균 약 210억 달러로(ODA 총액의 약 25%), 2002년 178억 달러에서 2005년 217억 달러로 약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⁸⁸⁾ 그러나 부채탕감 및 긴급 구조원조 등을 제외한 분야별 원조에 배분된 ODA(sector allocable ODA)는 동 기간 510억 달러에서 675억 달러로 약 27%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원조에 배분된 ODA에서 차지하는 AfT의 비중은 35%에서 32%로 감소되었다. 이는 첫 째, 1990년대에 많은 OECD국가들 사이에서 민관협력(PPP)의 확대와 함께 공공재 국유화모델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협력대상국의 MDGs를 중심으로 한 빈곤감소전략(PRS)이 사회부문(social sector)에 대한 지출을 상대적으로 확대했으며, 고채무빈곤국(HIPCs) 이니셔티브 또한, 부채탕감의 조건으로 사회부문 개발에 주안을 두어 경제개발 부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표 2.3〉 '무역을 위한 원조'의 추이 (2002-2005년)

	2002	2003	2004	2005	측정지 평균 (2002-2005) 규모 및 비율
분야별 원조에 배분된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	1.6	1.0	0.7	1.0	1.1
경제인프라					
교통 및 저장	4,955	4,942	6,600	7,325	5,956
커뮤니케이션	318	563	848	441	543
에너지	4,148	4,230	6,407	4,408	4,798
소 계	9,421	9,735	13,855	12,174	11,296
분야별 원조에 배분된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	18.5	16.2	19.8	18.0	18.1

88) WTO/OECD (2007b) : 단, OECD와 WTO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역관련 인프라의 경우 협력대상국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에 필요한 인프라정비와 명확한 구분을 하는 것이 용이치는 않다. 또한, CRS(Creditor Reporting System)는 WTO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범위로 규정하는 무역관련 조정과 기타 무역관련 니즈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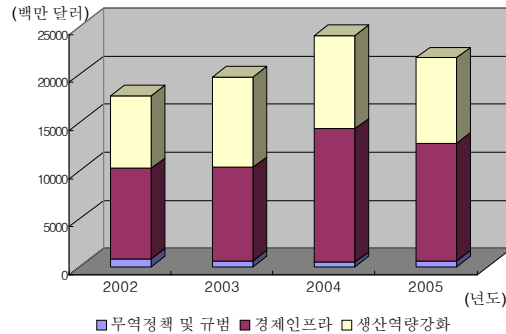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추정치 평균 (2002-2005) 규모 및 비율
생산역량강화*					
은행 및 재정서비스	1,227	1,332	1,210	1,263	1,258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1,126	1,421	1,818	1,056	1,355
농업, 임업, 수산업	3,788	4,623	4,172	4,457	4,260
산업, 광업 및 건설	1,402	1,921	2,496	1,977	1,949
관공업	45	91	63	164	91
소계	7,587	9,388	9,759	8,918	8,913
분야별 원조에 배분된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	14.9	15.6	13.9	13.2	14.4
총 무역을 위한 원조(AfT)	17,826	19,738	24,092	21,745	20,850
분야별 원조에 배분된(sector allocable) ODA	51,051	60,232	69,973	67,528	62,196
AfT가 전체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율(%)	34.9	32.8	34.4	32.2	33.6

* 주: 무역생산역량강화에는 무역개발(trade development)이 포함됨. 양자 및 다자원조 포함, 약정금액. 단위는 US 백만 달러(2005년 불변가격)

【출처】 WTO/OECD (2007b)

한편 AfT 추정치 연평균의 세부배분 구성을 살펴보면 '무역정책 및 규범'에 대한 기술협력이 약 6억 달러, '생산역량강화'가 약 89억 달러, '무역관련 인프라정비'가 약 112억 달러로 인프라정비를 위한 지원이 가장 큰 부분(약 54%)을 차지하였다.

〈그림 2.4〉 무역을 위한 원조의 세부배분 추이 (2002-2005년)



주: 양자 및 다자원조 포함. 약정금액. 단위는 10억 US달러(2005년 불변가격)

【출처】 WTO/OECD (2007b) Data를 활용하여 제작성

3.1. 공여기관의 무역을 위한 원조규모

한편, OECD/DAC 회원국 중 AfT에 가장 많은 재원을 집중한 국가는 일본으로, AfT의 2002-2005년 평균은 약 47억 달러(공여국 전체 AfT 중 약 23%)였다. 그리고 일본의 총 원조에서 차지하는 AfT의 비중은 무려 62%에 달한다. 그 뒤로 미국, 국제개발협회(IDA), 유럽위원회(EC)가 가장 많은 AfT를 실시하고 있고, 이들 4개 공여국 및 기관은 전체 AfT금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공여국들의 분야별 양자 간 총 ODA에서 차지하는 AfT의 평균 비중은 약 31%이다. 미국과 EC가 협력대상국의 무역정책 및 규범에 대한 이해제고에 힘쓰고 있는 반면, 일본과 IDA는 자본집중적인 경제인프라 정비와 무역생산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상원조의 비율도 높다.

〈표 2.4〉 '무역을 위한 원조'의 10대 공여기관 (2002-2005년 평균)

(단위: US 백만 달러, 2005년 불변가격)

	AfT 약정금액 (commitments)	전체 AfT에서 차지하는 비율	AfT 약정금액 중 유상원조 비율
일본	4,764	22.8	82.0
미국	3,423	16.4	...
IDA	3,099	14.8	91.8
EC	2,403	11.5	12.8
독일	1,140	5.4	48.1
아시아개발기금(AsDF)	724	3.5	96.8
영국	711	3.4	...
프랑스	660	3.2	60.5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574	2.7	96.2
네덜란드	512	2.4	...

【출처】 WTO/OECD (2007b)

3.2. 지역적 및 소득그룹별 분포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의 대 아프리카 AfT 총액은 평균 약 63억 달러로 동기간의 전체 AfT 평균 약 210억 달러의 약 30%를 차지한다.⁸⁹⁾

반면, 아시아지역은 AfT 총액의 약 51%로 가장 많은 무역관련 원조를 수혜하였다. 아시아의 높은 AfT 비율은 주로 대규모의 경제인프라 지원에 기인한다.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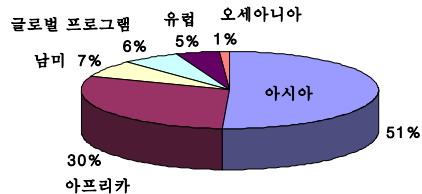
〈표 2.5〉 대 아프리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실적 (2002-2005년)

(약정금액, 2005년 불변가액)

	2002	2003	2004	2005	측정치 평균 (2002-2005) 규모(US 백만 달러)	측정치 평균 (2002-2005) 비율(%)
아프리카						
무역정책 및 규범	525	170	152	313	290	1
경제인프라	2,438	3,399	3,252	3,472	3,208	15
생산역량강화	2,377	3,019	2,955	2,588	2,735	13
소계	5,340	6,588	6,359	6,373	6,233	30
남미	1,620	1,215	1,513	1,444	1,448	7
아시아	8,145	9,854	14,015	10,424	10,610	51
유럽	1,175	653	418	1,815	1,015	5
오세아니아	181	162	272	202	204	1
글로벌 프로그램	1,366	1,266	1,515	1,217	1,341	6
전체 AfT	17,826	19,738	24,092	21,745	20,850	100

【출처】 WTO/OECD (2007b)의 Data를 활용하여 계산 및 재작성

〈그림 2.5〉 '무역'을 위한 원조'의 지리적 배분 (2002-2005년 평균)



【출처】 WTO/OECD (2007b)의 Data를 활용하여 작성

89) WTO/OECD (2007b)

90) 아시아의 경제인프라 지원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인프라 재건이 포함된다.

2002-2005년 평균 아프리카국가 중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국가는 이집트(약 5억 달러)와 에티오피아(약 4억 7천만 달러)로, 탄자니아, 케냐,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가나, 우간다, 세네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아프리카지역의 무역을 위한 원조 최대수혜 13개국은 표2.6과 같고, 이집트와 우간다, 튀니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2002년 대비 2005년 원조금액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아프리카지역의 '무역'을 위한 원조' 수혜현황 (2002-2005년)

(약정금액, 2005년 불변가액)

	소득그룹	2002	2003	2004	2005	측정치 평균 (2002-2005) 규모(US 백만 달러)	전체 부문별 ODA 중 AfT 비율(%)
이집트	Lower-Middle	619	480	540	389	507	51
에티오피아	LDC	367	542	422	564	474	42
탄자니아	LDC	203	210	361	487	315	24
케냐	Other low income	30	260	529	360	295	27
모잠비크	LDC	202	328	280	289	275	37
마다가스카르	LDC	160	407	164	269	250	58
가나	Other low income	174	259	239	239	228	24
우간다	LDC	243	66	321	229	215	29
세네갈	LDC	84	239	213	247	196	40
부르키나파소	LDC	67	379	173	147	192	44
튀니지	Lower-Middle	521	64	106	59	188	42
나이지리아	LDC	186	78	234	240	185	14
잠비아	LDC	136	162	243	151	173	29

【출처】 WTO/OECD (2007b)의 Data를 활용하여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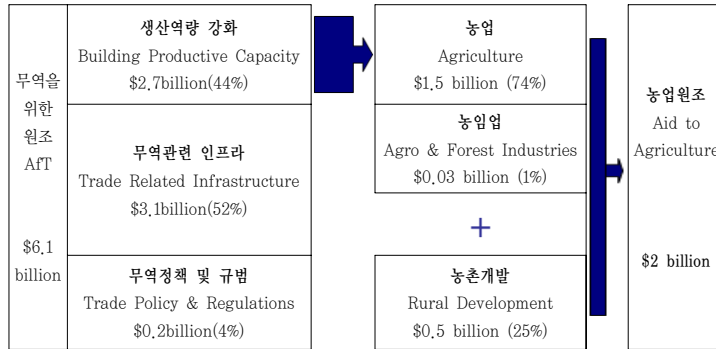
한편, 2002-2005년 사이의 소득그룹별 평균 AfT 배분을 살펴보면, '기타 저소득 그룹(OLICs)'으로 구분되는 소득군의 AfT가 최빈국(LDCs)과 중저소득국(LMICs)의 합에 비해 2.5배나 높았다.⁹¹⁾ 최대 AfT의 수혜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 속하나, 소득그룹별로는 기타 저소득그룹에 속하며, 전체 AfT의 수혜비중 중 약 10%를 차지한다.

91) WTO/OECD (2007b)

3.3. 무역을 위한 원조와 농업

아프리카의 경우 생산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원조의 절반이상이 농업부문으로 2002-2005년 사이에 연간 약 20억 달러가 지원되었다.⁹²⁾

〈그림 2.6〉 '무역을 위한 원조'와 아프리카 농업원조의 관계



주: 2004년도 금액(2004 constant price) 기준, 2002-2005년도 평균 【출처】 OECD (2008)

한편, 아프리카 농업원조는 과거 15년간 26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ODA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에서 5.4%로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관련 원조의 성과가 불투명한 것과 자유경제를 위한 구조조정용자 등으로 국제원조패턴이 변모해 온 것에 기인하며, 농업관련 원조는 감소한 반면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관련 ODA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농업이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공여국의 농업부문 원조는 식량안보와 식량증산의 관점에서 창업 및 마케팅, 투자관련 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92) OECD (2008)

4. 무역을 위한 원조와 민관협력(PPP)

AfT는 정부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동반한 다 주체(multi-actor)원조이며, 그 중 궁극적인 무역주체는 기업인바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등을 통한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AfT 참여는 ODA의 추가적 재원확보와 성공적인 AfT 이니셔티브를 이끌어내는 기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즉, 민간기업의 개도국 내 기업 활동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무역확대로 연계되어 결과적으로 현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일 협력대상국 정부가 무역협상 가운데 새로운 무역기회를 창출하여도 기업의 참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개도국은 무역확대를 통한 혜택을 향유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특히, 선진국기업 및 개도국 내 다국적기업은 ODA를 통한 AfT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가운데 개도국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기업의 파트너십은 크게 1) 공여국 정부 및 다자기구의 대 개도국 AfT 지원(business to government)과 2) 현지기업의 생산 및 관리, 품질인증획득 기술협력, 유통망 지원과 같은 기업 대 기업(business to business)지원으로 분류된다.⁹³⁾ 기업 측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대상국 무역진흥의 결과 안정적인 지속적 무역시장 및 공급망 확보, 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중소기업 진흥 및 활발한 기업 활동은 협력대상국의 수출역량강화와 국내 소득증대로 확대되리라 기대되고 있는바, 향후 정부 대 정부의 AfT에서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민간기업의 활발한 무역참여와 투자촉진, 민관협력(PPP)이 동반된 원조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을 위한 원조의 민관협력(PPP) 사례

민간부문의 협력은 공적원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의 공급망(supply chain)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오늘날 개도국에서는 무역

93) Marc Proksch and Noordin Azahari (2007)

자유화로 인해 선진국 농산물의 개도국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한편, 개도국의 소규모 농가는 국내 슈퍼마켓 등 국내 공급망에서 제외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판매·유통 및 공급망의 문제는 ODA로만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무역관련 과제를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지원하는 민관협력(PPP)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독일 GTZ는 2000-2003년 독일 Mars사와 베트남 영세재배농가의 지속적인 카카오생산을 위해 카카오재배 기법 및 전략도입, 조달시장개선과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증진, 마케팅지원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였다.⁹⁴⁾ "지속가능한 카카오생산(Sustainable cacao production)" 프로젝트에서 GTZ는 종자보관법 지도 및 농부들에 대한 기술자문 등을, Mars사는 생산, 가공, 마케팅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및 기술적 지원 등을 담당하였다.⁹⁵⁾ PPP의 결과, 베트남의 카카오 생산능력 향상이 향상되었고 농가의 수입 또한 증대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GTZ의 또 다른 무역관련 PPP 사례에는 아프리카의 면화개발지원 프로젝트로 유명한 "Cotton made in Africa(2005-2010)"가 있다. 아프리카의 세계 면화생산량은 약 8%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베냉과 부르키나파소의 경우 면화수출이 GNP의 약 75%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소작농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약 2천만 명이 면화재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농가들이 미국과 EU의 국내 면화보조금으로 인한 국제시장가격의 폭락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GTZ는 기타 개발협력기구 및 Accenture, Dunavant SA, Otto Group, Tom Taylor 등의 무역회사들과 함께, 친환경적이고 사회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프로젝트는 민간기업의 참가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지속적인 공급망구축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94) GTZ 웹사이트 Projects: Brief descriptions를 참조(<http://www.gtz.de/en/leistungsangebote/23283.htm>)

95) 한편 Mars사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조달시장의 확대 및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의 효과가 창출되었다.

5. 무역을 위한 원조의 과제

첫 째, 공여국의 무역생산역량강화 지원이 공여국의 국익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⁹⁶⁾ 즉, 원조가 자유화의 대가로 제공됨으로써 개도국들이 과도한 자유화와 시장개방 요구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AfT는 WTO 도하라운드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FTAA 협상에서 기술협력 및 재정지원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AfT를 개도국이 FTAA 협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⁹⁷⁾ 그 밖에 공항, 항만, 전력, 수자원 등의 급격한 민영화로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의 과도한 진출이 초래되어 개도국의 국내기업이 축소될 위험성과 농업분야의 수출진흥 정책을 우선시한 나머지 개도국 내의 식량안보가 위협될 가능성 등이 있다. 따라서 AfT는 도하개발어젠다(DDA)의 협상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도국의 이점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뒤 시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AfT가 현재의 불공평한 WTO체제의 개혁과 반드시 연관되는 것은 아닌바, WTO체제의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AfT 자체가 개도국의 빈곤을 경감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진국주도의 무역구도를 시정하고 개도국이 세계무역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도국의 세계시장 참여와 함께 지원책(safety net)을 특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많은 공여국들이 AfT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으나, ODA의 GNI대비 0.7%의 논의와 같이 그 금액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2006년도 공여국의 약정 금액은 약 40-86억 달러이나, 2004년도 시점의 OECD의 계산에 의하면(조정비용 제외) 약 228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계되고 있다.⁹⁸⁾ 아울러 일부 개도국들은 원조자금이 무역부문에 할당됨에 따라 의료보건 및 교육 등

96) UNDP (2005)

97) Dominique Njinkeu, et al. (2008)

98) Carin Smaller (2006)

중요 개발부문의 예산이 삭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AfT의 재원확대는 MDGs 달성의 주요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추가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협력대상국의 무역정책 및 우선순위(priority)에 적합한 원조와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의 확립 등 파리선언에 부합하는 AfT의 실행을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WTO, UNCTAD, FAO, UNDP 등의 유엔기구, 세계은행 및 IMF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파리선언 실행을 위한 공통의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여국들은 AfT 니즈파악에 있어 현지사무소 및 개도국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사업발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과제에는 취약한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구조, 기타 개발원조 프로그램(민간부분개발, 농촌개발 등)과의 시너지효과가 부족한 단편적인 AfT 사업의 실시, MDGs 및 '국가 빈곤감소 목표' 달성 등의 빈곤감소 전략과의 명확한 연계성 부재 등이 있다.⁹⁹⁾

이상, 공여국의 AfT는 협력대상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원조 프로그램화, 공여국과 협력대상국의 파트너십, 공여국 간의 원조 조화 결여 등의 과제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의 도입 등 원조의 효과성 제고의 노력과 함께 개선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특히, 개도국이 자국의 무역개발관련 우선 과제 및 필요한 역량강화 분야(trade capacity for development)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무역관련 지원전략과 행동계획을 개도국의 국가개발 및 빈곤감소 전략에 반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99) OECD (2006b)

제3장 OECD/DAC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

우리는 제1장에서 아프리카 지역이 다자무역시스템에 동참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아프리카의 경제현황과 농업 및 인프라, 무역 및 투자, 누적채무문제 등의 다양한 무역관련 과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무역이 개도국의 경제성장 및 개발, 빈곤감소의 원동력이 되며, 무역의 활성화 및 제1장에서 언급한 제반 무역관련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공여국 및 다자기구들이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본 장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독일, 영국 등 주요 OECD/DAC회원국의 구체적인 무역을 위한 원조정책과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지원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정부가 향후 지향하여야 할 AfT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유럽위원회(EC)

유럽위원회(EC)는 시장접근성 향상과 무역자유화 등을 지원하는 대 개도국 무역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무역관련 지원(trade-related assistance: TRA)'이라 정의하고 있다.¹⁰⁰⁾ TRA에는 무역협정의 협상, 무역전략의 기안, WTO가맹, 현대적인 관세시스템의 개발, 국제생산기준의 적용, 민간기업의 수출시장진출, 공정무역(fair trade)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TRA는 무역관련 조정비용지원까지 포함하는 AfT에 비해서는 협소한 개념이나, WTO/OECD가 규정하는 AfT의 범주와

100) European Commission (2006)

대부분 유사하다 할 수 있다. TRA의 형태에는 기술자문, 교육훈련, 기자재제공 등이 있으며, 지역 및 정부, 특수기관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EC의 TRA는 EuropeAid를 통해 집행되며, 2005년도에 동 기관을 통해 실시된 신규 TRA 프로젝트는 150개 이상에 달하였다. EC는 같은 해 7월의 G8 정상회담에서 TRA를 연간 10억 유로 규모로 확대할 것을 공약하였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이러한 EC의 공약에 동참하여 제6차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2010년까지 매년 20억 유로규모(EC 공약 포함)로 확대해 나갈 것을 표명한바 있다. 이러한 EC의 TRA 자금조달은 EU 회원국의 자금과 '유럽개발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 EDF)'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¹⁰¹⁾

1.1. EC의 무역관련 원조정책 및 현황

EC는 개도국이 국가개발전략 가운데 무역을 우선순위로 채택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명시하며, 개도국의 무역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2년 11월에 발표한 "무역과 개발: 개도국의 무역을 통한 혜택지원(*Trade and Development: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to Benefit from Trade*)"는 Aft의 세 가지 주요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⁰²⁾

- WTO 가맹과 다자무역협상 지원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WTO 협상의 이행지원
- 정책개혁 및 경제효율성, 다자무역시스템 참여 확대를 위한 투자지원

이어 2003년에는 EC직원들의 무역관련 원조프로젝트의 디자인, 계획, 실시와 기타 선진공여국과의 조화 및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EC TRA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C Trade-Related Assistance*)"이 발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EC는 무역과 개발관련 내부 작업반(Task Force)을 형성하여 TRA의 성공사례분석, 가이드라인 작성, 전반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립, 평가 등을 실시한바 있다. 또한, 2004년도에는 개도국의 수출 진흥 상담데스크를 설치하여 EU의 수입규범 및 무역통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C의 아프리카 및 카리브, 태평양(ACP)지역에 대한 무역관련 원조정책

EC의 아프리카 및 카리브, 태평양(ACP) 국가들에 대한 TRA는 크게 1) 'TradeCom 기금(facility)'을 통한 지원과 2) ACP 국가들의 WTO 등의 다자무역시스템 통합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우선 'TradeCom 기금'은 ACP국가들의 무역전략 수립과 이행능력강화, 효과적인 국제무역협상 참여지원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본 기금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현지의 무역정책수립을 위한 조사분석능력의 강화
- 협상진행 중에 국별 무역정책전문가 및 지역별 무역정책전문가를 모집하여 일 시간의 기술원조를 제공함
- 무역지원서비스 대상지역의 제도보강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이어, EC의 ACP 국가들의 WTO 등의 다자무역시스템 통합을 위한 지원양상을 살펴보자. EC의 다자무역시스템 통합지원은 2005년의 제6차 홍콩각료회의를 계기로 시작되었고, ACP 국가들의 이익과 우리가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협상가운데 원활하게 반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프로그램은 주로 WTO 무역협상과 각 협약의 이행에 초점을 두고, 특히 ACP지역의 최빈국(LDCs)을 대상으로 한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Aft 전략 및 추진현황

여기서는, EU가 어떠한 공통전략 아래 각 국의 Aft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101) 제9차 EDF(2003-2007)은 ACP국가들에게 152억 유로를 제공하였고, 제10차 EDF(2008-2013)는 227억 달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EDF는 코토누협정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는 EU-ACP지역간의 경제파트너십 협정(EPA)의 협상 및 이행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102) WTO/OECD (2007a)

우선, EU는 2006년 10월 AfT에 관한 위원회결정과 2007년 10월의 정식채택 이후, 'EU 무역을 위한 원조(AfT) 전략(EU Strategy on Aid for Trade: Enhancing EU support for trade-related needs in developing countries)'을 EU회원국 및 EC의 가이드라인 문서로 규정하고 있다.¹⁰³⁾ 즉, EC의 AfT는 EU의 공동전략을 바탕으로 수립, 전개되고 있다. EU의 공동 전략은 최빈국(LDCs)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규범을 바탕으로 한 국제무역시스템 통합 및 빈곤감소를 위한 무역의 전략적인 활용을 목표로 한다. 본 전략은 중-단기 우선 행동강령으로, 1) EU전체의 AfT 규모 확대(scaling-up), 2) 빈곤층의 성장을 동반한(pro-poor) AfT, 3) 효과적인 AfT 모니터링과 보고지원, 4) 원조의 효과성원칙에 근거한 EU 및 회원국의 AfT 역량강화를 중점요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공동 전략에 맞추어 각국의 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한편, EU 회원국들은 '개발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에 맞게 AfT를 수립·추진하여 개도국의 MDGs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가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는 무역, 환경, 안전보장, 농업, 수산업, 글로벌화, 이민, 연구 및 기술개혁, 정보사회, 교통, 에너지 분야가 있다. 한 예로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의 농업부문을 지원할 때 자국과 협력대상국 간의 무역의 왜곡화를 최소화하여 개도국의 농업발전에 기여해야 하기에, EU는 AfT를 실시함에 있어 국내기타 부처 및 기관의 국가정책과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들은 단순한 협력대상국의 경제성장이 아니라, 빈곤감소의 일환으로 AfT가 실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¹⁰⁴⁾ 따라서 회원국들은 AfT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empowerment) 및 임금향상 등의 여성개발을 AfT의 크로스커팅 분야로 채택할 것을 전략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의 AfT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말 현재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AfT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⁰⁵⁾ 회원국들의 AfT현황은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영국의 6개

국으로 구성된 첫 번째 그룹은 유럽이사회(council)의 권고에 따른 AfT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슬로베니아의 6개국으로 구성된 두 번째 그룹은 EU전략의 일부를 선택하여 추진 중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AfT 전략을 소개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인 이행 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는 처음으로 3년간의 '오스트리아 개발협력계획(2007-2009)'에 AfT를 포함시켰고, 체코슬로바키아는 2008년도부터 '무역관련 지원(TRA)'을 예산에 별도 구분하였으며, 에스토니아는 '도하개발어젠더 글로벌 신탁기금(DDAGTF)' 및 '강화된 통합체제(EIF)'에 대한 기여를 공약하였다. 단, 불가리아와 키프로스, 몰타는 2010년까지 특별한 AfT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 첫 번째 그룹은 EU원조의 약 75%를 차지하며, EC를 포함할 경우 전체 원조의 약 83%에 달한다.

EU 회원국들의 2006년도 '무역관련 지원(TRA)'실적은 6억 4천만 유로로, EC의 TRA 9억 4천만 유로를 포함하면 동년도 TRA 총규모는 15억 8,234만 유로에 달한다.¹⁰⁶⁾ 회원국의 TRA는 2001-2004년도 평균인 3억 5,800만 유로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2010년까지 회원국의 AfT를 연간 10억 유로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2배가량의 증액이 필요한 실정이다.

103) 2007년 10월 15일 Council Conclusions (APPENDIX 4, 참조)

104)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7.5.15) 'Aid for Trade-Conclusions of the Council and the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meeting within the Council'

10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8)

106) 상동 (2008)

〈Box 3.1〉 EU의 '공동농업정책(CAP)'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195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의 공동농업정책으로, 농민들의 적정 생활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들에 대한 양질의 식품을 공정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AP은 15개 회원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단일시장, 역내 농산물 우선, 공동 재정부담 등 크게 세 가지 기본원칙 아래 시행된다. 기존의 CAP은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던 시대엔 생산량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나, 2003년도에 개혁을 통해 농업보조금을 생산량과 분리시켜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촌개발로 재원을 돌리는 등 대대적으로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CAP개혁이 아프리카지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아시아-카리브-태평양(ACP) 연안지역의 열악한 수출경쟁력과 코토누협정으로 인한 비호혜적 무역특혜의 점진적인 철폐 가운데, CAP개혁은 EU시장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수출수입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에 반발하는 아프리카국가들을 대상으로 EU는 지역경제통합과 개발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발전과 빈곤감소에 공헌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U는 2008년부터 7년간 230억 유로의 개발원조와 '경제파트너십협정(EPA)'을 통한 아프리카의 경제구조개혁과 무역정책지원 등을 표명하였다. 2007년 12월, 케냐와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가 회원국인 '동아프리카공동체(EAC)'와 EU간의 EPA체결을 통해, 2008년부터 EU의 쌀과 설탕을 제외한 농산물시장이 자유화되었고, EAC의 경우 2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시장을 자유화해야만 한다. 아울러 EU는 최빈국(LDCs)의 무기를 제외한 전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무관세 및 쿼터면제제도(Everything-but-Arms: EBA)를 시행하여 최빈국의 유럽시장 접근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EC의 ACP지역에 대한 '무역관련 지원(TRA)'규모

EC는 일본, 미국, IDA에 이은 최대 AIT 지원주체로, 2001-2006년까지의 총 TRA 규모는 약 54억 7,238만 유로(연평균 약 9억 유로)였다.¹⁰⁷⁾ EU회원국의 TRA

¹⁰⁷⁾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8)

24억 8,113만 유로를 포함하면 2001-2006년의 총 EU TRA는 79억 5,351만 유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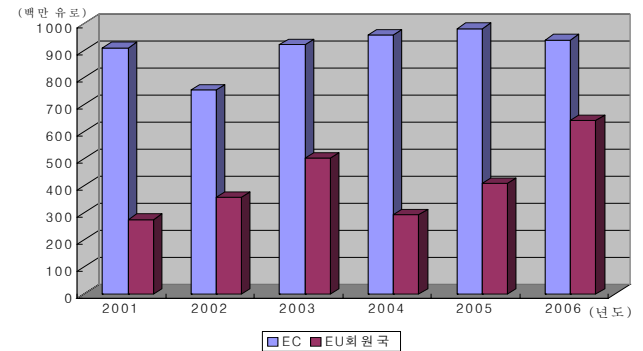
〈표 3.1〉 EC와 EU회원국의 '무역관련 지원(TRA)'실적

(단위: 백만 유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01-'06	전체 EU TRA 중 비율('01-'06)	연평균 TRA
EC	912.44	755.00	922.52	958.06	983.46	940.90	5472.38	68.8	912.06
EU회원국	275.34	358.24	504.23	293.52	408.37	641.44	2478.13	31.2	413.52
합계	1187.78	1113.24	1426.75	1251.58	1391.83	1582.34	7953.51	100.00	1325.59

【출처】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8) 참고 작성

〈그림 3.1〉 EC와 EU회원국의 '무역관련 지원(TR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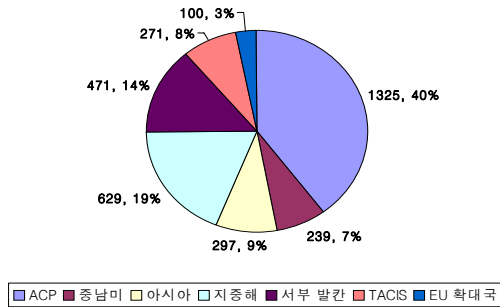
【출처】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8) 참고 작성

한편, TRA의 최대 수혜지역은 대부분의 최빈국(LDCs)이 위치한 ACP지역이며, 2001-2004년까지의 TRA 원조규모는 13억 2,500만 유로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¹⁰⁸⁾

¹⁰⁸⁾ European Commission (2006)

〈그림 3.2〉 EC의 지역별 '무역관련 지원(TRA)' 현황(2001-2004)

(단위: 백만 유로, %)



주1: TACIS란, 동유럽과 CIS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주2: EU 확대국은 Bulgaria, Moldova, Cyprus, Poland, Czech Republic, Romania, Estonia, Slovakia, Hungary, Slovenia, Latvia, Turkey, Lithuania, Ukraine, Malta임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06)

1.2. EC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사례

EC의 대 아프리카 TRA는 2003년 5월 EC가 발표한 '유럽위원회의 무역관련 지원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uropean Commission Trade Related Assistance)'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사례1 '탄자니아 수산물 보건위생기준 강화 프로그램 (2003-2008)'

EU는 수입품에 대한 엄격한 보건위생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도국에게 있어 기술적인 수출장벽, 즉 비관세 수출장벽이 되기도 한다. EU는 탄자니아 수산물의 EU 시장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건위생기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탄자니아의 대 EU 수산물수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탄자니아는 2001년 이래 EU의 수산물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위생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EU의 보건위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수산물 수출은 그다지 확대되지 못하였다. 이에 EC는 2003년 5월 '유럽 수산업강화 프로그램(European-funded Strengthening Fisheries Programme)'을 실시하여 탄자니아의 위생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법률 및 규범, 검역매뉴얼의 개정, 검역조직의 설립, 약 50명의 검역관 및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 생산라인과 가공시설의 평가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현지 가공환경개선 및 검역시스템 정비를 통해 현지 기술수준향상 및 대 EU 수출확대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례2 '마다가스카르 바닐라산업 활성화 프로그램(1997-2006)'

마다가스카르의 주요 수출품목인 바닐라산업은 물가상승 및 생산성저하로 하향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에, EC는 바닐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바닐라생산의 90%를 차지하는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약 5백만 유로의 '유럽개발기금(EDF)'을 제공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1) 신규 재배기술전수, 농장개발 및 확대를 통한 생산성향상, 2) 제품의 품질개선, 3) 품질보장 테스트,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라벨부착("Vanilla from Madagascar") 등의 홍보기법개발, 4) 도매시장의 투명성제고 및 생산자들의 시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EC는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바닐라생산자뿐만 아니라 지역관련 기구 및 '정부 바닐라 수출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Vanilla Exporters)' 등의 유통망을 포함한 포괄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EC의 지원을 통해, 사향산업이었던 바닐라생산 및 수출이 활성화되어, 마다가스카르의 경제에 있어 바닐라는 주요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무역개방 과정에서 바닐라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원료생산자들의 수입이 증대하였고, 2천 ha이상의 생산이 증대되었으며, 농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와 모니터링을 통해 바닐라의 품질이 향상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약 7만 명에 이르는 생산자들의 생계가 보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Box 3.2〉 EU의 대 아프리카 무역협정

아프리카 국가들은 19세기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등의 식민 지통치 가운데 지역 내 자급자족형 농업에서 수출지향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전환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1958년 로마조약과 EEC의 설립, 1964년 야운데(Yaunde)협정, 1975년 로메(Lomé)협정, 2000년 코토누(Cotonou)협정을 거치며 유럽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긴밀한 무역협력관계는 지속되어 왔다.

□ 로메협정의 주요 특징(단위: 백만 유로)

- 두 지역 간의 경제발전단계의 차이를 인정하고 '비호혜적 무역특혜(non-reciprocal trade preference)'가 도입됨. 아시아카리브해-태평양(ACP) 연안지역은 산품을 무관세로 EU시장에 수출할 수 있으며, EU산품의 ACP국가 수출은 통상적인 최혜국대우로 이루어짐
- ACP국가에 대한 '수출수입 안정화제도(system for the stabilization of export earnings)'가 도입되어, 농산물 및 광물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정체로 EU 국가들의 수입이 감소할 경우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이 실시됨
- 그러나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로 인해 ACP국가들의 특혜차의 축소와 수출감소가 초래되어, EU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6년 7.6%에서 1998년 3%로 감소됨¹⁰⁹⁾

□ 코토누협정의 주요 특징

- 로메협정의 비호혜주의 통상특혜의 점진적 철폐와 빈곤감소를 위한 최빈국(LDCs)의 경제발전지원, 최빈국(LDCs)인 ACP국가들에 대한 특혜대우, 지역자유무역협정(EPA) 구상의 도입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됨
- 로메협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선정, 인권옹호 등의 정치적 개입도 언급되었음

109) 是永東彦 (2005)

2. 독일

독일 경제협력부(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BMZ)는 독일 내 AfT에 대한 재정지원 및 프로그래밍, 실시기관의 AfT 계획 및 진행감독을 담당한다. 그리고 무역관련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중소기업대상 금융지원, 교육훈련, '무역상의 실질적인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해소 등의 실제 프로젝트는 독일개발공사(GTZ), 독일 재건은행(KfW), 독일 국제능력개발원(InWent), 독일물리연구소(PTB)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기 타, 독일은 EC의 TRA 프로그램과 IF 및 JITAP, DDAGTF 등의 다자간 AfT 이니셔티브와 ITC, UNCTAD 등의 AfT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2.1. 독일의 무역관련 원조정책 및 현황

독일정부가 빈곤감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AfT의 방향성은 2001년도에 발표된 '2015 빈곤감소 행동 프로그램(*Programme of Action 2015 for Poverty Reduction*)'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독일의 빈곤감소 계획이기는 하나, 1) 개도국의 커뮤니케이션, 관세행정, 수출진흥 지원을 통한 무역역량 제고, 2) 국제적 환경 및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개도국의 동기제고 및 공정무역(fair trade) 지원, 3)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친환경적 및 사회적 품질 라벨표시, 행동강령수립 지원, 4)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의 축소 등 무역관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격으로 삼고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의 AfT는 협상능력강화, 협력대상국의 공급자 측면에서의 제약(supply-side constraints)극복, 무역경쟁력강화 등을 위한 무역역량개발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독일은 '무역관련 지원(TRA)'을 '지속적인 경제개발(민간부문개발 및 경제정책 포함)',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선정 및 기관역량강화', '환경 및 수산업' 등의 분야별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크로스커팅 이슈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독일은 AfT 가이드라인 또는 프로그램을 특별히 책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AfT를 모든 분야별 원조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크로스커팅 분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아직까지 AfT에 대한 특별한 정책 및 전략문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반면, 독일 ODA의 우선순위인 '협력대상국의 경제개발 및 고용' 지원의 맥락아래, 농업과 기관역량강화(institution building) 부문을 중심으로 AfT를 실시하고 있다. BMZ의 경우, 950만 유로 상당의 '몬테레이기금(Monterrey Fund)'을 설립하고 최빈국(LDCs)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무역정책 및 무역진흥을 지원하고 있다.¹¹⁰⁾

마지막으로, 독일의 EU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EU는 2010년까지 매년 약 20억 유로(EC 10억 유로, EU 회원국 10억 유로)규모로 AfT를 확대해 나갈 것을 공약한바 있다. 독일은 유럽개발기금(EDF) 및 EU예산에 대한 기여를 통해 이에 동참하고 있으며, 회원국전체의 약 22%를 담당하고 있어 금액베이스로 추계할 때 2010년부터 약 2억 2천만 유로를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¹¹¹⁾ 또한, 독일은 EU의 회원국으로서 2007년 10월 정식채택 된 'EU 무역을 위한 원조(AfT)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바, 동 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AfT 증액 및 ACP지역(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의 2005년 대비 50%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BMZ의 무역프로그램

BMZ의 대표적인 '무역프로그램'에는 1) 농업무역 프로젝트, 2) 무역정책 및 무역, 투자진흥 프로젝트, 3) 무역정책 및 무역진흥 지원기금인 'Monterrey Fund', 4) 민간협력(PPP) 프로젝트인 '*Cotton made in Africa*'가 있다.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 및 대상, 타겟그룹, 예상결과는 표 3.2와 같다. 기타, 2006년 이래 EU-ACP 지역 간의 정책대화촉진 등을 통해 ACP지역 국가들의 경제파트너십협정(EPA)의 협상 및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 BMZ 무역프로그램의 개요

	농업무역	무역정책, 무역 및 투자진흥	Monterrey Fund	Cotton made in Africa (PPP)
목적	- 농업부문에 대한 무역관련 역량강화의 개념 및 방법론 개선 - BMZ 및 협력국의 개발협력 프로젝트, 전략, 프로그램에 농업무역지원을 반영함	개발대상국의 무역정책 및 무역진흥활동을 지원함	- 개도국의 양자 및 다자무역협상에서의 지위개선, 이행사항의 - 국내법 반영, 무역 및 투자진흥전략의 계획 및 실행지원	- 면화 소매상인과 생산자간의 협력강화 -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인 면화생산규범의 도입 - 소작농들의 소득증대
대상	글로벌; 단, 최빈국(LDCs)을 우선으로 함	글로벌; 단, 최빈국(LDCs)을 우선으로 함	개발대상국 및 체제전환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면화생산국
타겟 그룹	농업 및 식품산업 분야의 생산자, 가공자, 무역업자, 소비자(농업생산 및 무역관련 여성단체는 우선적으로 고려됨)	지역 내 및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리라 예상되는 중소기업, 주로 정부부처 및 무역/투자진흥기관의 정책결정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하나, 민간기업과 시민사회조직(CSOs)도 포함됨	절 차 기금은 GTZ가 관리함. 프로젝트의 신청은 협력대상국 관련기관 및 BMZ의 지역본부, GTZ의 지역 및 특별부, 현지의 양자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BMZ의 제안서 심사 및 승인을 통해 확정됨.	다국적 섬유제조업체, 면화생산기업, 면화생산자협회, 면화생산 소작농
예상 결과	- 현지전문가 및 협력기관의 농업무역 관련 기술 및 전문성강화 - 농업부문의 가치사슬(value-chain)개선이 BMZ 및 실시기관의 무역관련 프로젝트에 반영됨 등	- 선정된 협력국을 대상으로 WTO, EU-EPA 등의 무역협상에 관한 자료와 계획수립지원을 제공 - 무역 및 투자진흥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법과 도구개발 등		-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면화생산 평가지표 시스템의 개발 - 면화생산자와 섬유제조업체 간의 가치사슬이 보편화됨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최소 3개의 프로젝트가 실행됨

【출처】 GTZ 웹사이트 (<http://www.gtz.de/en/themen/laendliche-entwicklung/12781.htm>) 참고 작성

110) WTO/OECD (2007a)

111) BMZ의 Mr. Birgit Hofmann제공 내부자료 'Trade Programme: Aid for Trade'

한편, GTZ는 1) 컨설팅 및 자문서비스 제공, 2) 교육연수, 3) 협력대상국의 지역 경제 통합, WTO가맹 및 규범이행, 농업무역정책 지원 등의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BMZ의 '무역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GTZ의 AfT 협력분야에는 협력대상국의 다자무역협정의 협상, 국제무역규범의 이행, 무역 및 무역투자 진흥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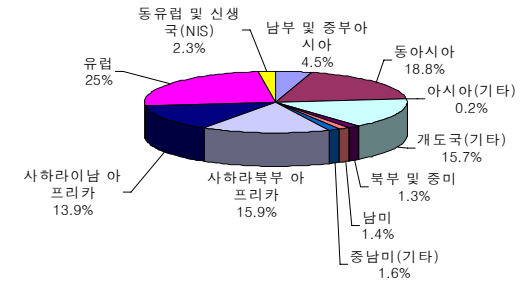
독일의 AfT 규모

독일의 AfT는 BMZ의 인프라 테스트 및 퀄리티 제공(MSTQ), 무역정책 및 규범, 민간부문진흥, 농업, 산업, 관광, 항만서비스 등의 양자 간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GTZ, KfW 등의 실시기관의 무역관련 원조금액, EU로서의 기여금, DDAGTF, UNCTAD, ITC, IF, UNIDO 등의 다자기금 및 기구에 대한 출연금 등으로 분류된다. 우선, 양자원조에서는 2002년도에 총 1억 1,150만 유로가 무역정책 및 무역진흥 등의 '무역관련 지원(TRA)'에 지출되었다.¹¹²⁾ 단, 이는 순수한 무역관련 프로젝트로 서가 아닌 개도국의 경제개발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된 프로젝트의 금액으로, 무역정책 및 무역진흥 지원만을 별도 계상하면 동 년도 지원규모는 7,536만 유로였다. 다음으 로, 독일정부는 EU회원국으로서 2002년도에 EC의 TRA 중 약 24.33%(약 1억 7,10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같은 해 독일은 WTO, UNCTAD, ITC 등 의 다자간 AfT 프로젝트에 약 530만 유로를 제공한바 있다.

이어 지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TRA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지역 (29.8%)에서 실시되었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13.9%)보다는 EU와의 자유무역협상 체결이 비교적 활발한 북부아프리카(15.9%)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았다고 집계되고 있다.

¹¹²⁾ BMZ (2003)

〈그림 3.3〉 독일의 지역별 '무역을 위한 원조' 현황 (2002년도)



【출처】 BMZ (2003)

독일의 AfT는 독립된 분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분야별 지원의 크로스커 링 이슈로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의 측정이 용이치 않다. 단, 최근의 확정수치는 WTO/OECD에 보고되고 있는 '무역역량강화(TCB)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무역정책 및 규범' 및 '무역개발' 등 WTO/OECD가 정의하는 AfT의 일부실적만을 집계하고 있어 포괄적인 독일의 AfT규모를 측정하고 있지는 않 다.

〈표 3.3〉 독일의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TRTA/CB)' 실적

TRTA/CB 약정금액 (US 백만 달러)	2003	2004	2005
무역정책 및 규범	12.8	16.8	22.2
무역개발	90.0	68.4	90.4
신탁기금	2.5	3.4	4.2
TRTA/CB ÷ 양자 ODA (1)	2.5%	1.7%	2.1%
인프라 (US 백만 달러) (2)	379.9	579.4	676.6

【출처】 WTO/OECD TCB database (<http://tcdb.wto.org>)

2.2. 독일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사례

독일정부는 'EU 무역을 위한 원조(AfT) 전략'의 채택과 함께 ACP지역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력유형에는 사하라이남 국가들의 경제파트너십협정(EPA) 협상 및 이행지원¹¹³⁾, 지역통합강화, 지역 내 무역활성화, 공급자로서의 계약지원 등이 있다. 특히, 독일은 파리선언의 이행을 위해 아프리카 지역공동체(SADC, EAC, ECOWAS, CEMAC 등)와의 협력을 통한 양자 간 AfT를 중시하고 있다.

사례1 '가나 민간기업의 농산물 인증획득 지원' 프로젝트¹¹⁴⁾

국제적인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기준의 향상으로, 가나의 농산물 생산자 및 수출업자들은 재배과정, 수확물관리, 제조 등에 있어 높은 국제적 기준 및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는 장벽에 직면하였다. EU시장에 청과물을 수출할 때에는 농산물 재배와 출하에 초점을 맞춘 EU의 EurepGAP(2007년부터 GlobalGAP이라 불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수의 대농장을 제외한 영세농장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기술 및 자금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수출정체 및 소득감소라는 악순환에 처해 있었다.

이에 독일 GTZ는 가나의 최대 수출작물인 파인애플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urepGAP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GTZ는 핵심농장을 인증획득 유닛으로 선정하여 기술협력을 실시함으로써 주변 농가에 기술협력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대규모 농가와 소규모농가의 관계형성을 통해 시장접근성에 대한 정보제공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GTZ는 2007년 GlobalGAP으로의 확대와 함께 케냐, 베트남, 브라질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중소 농산물재배자그룹을

대상으로 품질관리시스템의 이행가이드라인을 매뉴얼로 작성, 배포하는 한편, 품질관리 역량향상 및 인증획득을 지향한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례2 'Cotton made in Africa' 프로젝트¹¹⁵⁾

세계 면화생산량의 약 8%를 차지하는 아프리카는 미국에 이은 최대 면화수출지역이다. 면화수출은 면화생산국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베냉과 부르키나파소의 경우 면화수출로 인한 국가수입이 GNP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약 2천만 명의 소농들이 면화재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이 미국과 EU의 면화보조금지금 등으로 초래된 면화가격의 국제적 하락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전문적인 비료 및 살충제살포로 인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면화생산량의 저하는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에 GTZ는 BMZ의 요청 아래 '*Cotton made in Africa*'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BMZ의 주요 무역프로그램이자 대표적인 GTZ의 대 아프리카 무역지원 프로젝트로,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아래 실시되는 민관협력(PPP) 사업으로서도 유명하다.¹¹⁶⁾ 본 프로젝트의 협력대상국은 베냉, 부르키나파소, 잠비아의 3개국이며, 2005-2010년까지 기타 개발협력기관 및 대형소매업체의 협력 하에 실시되고 있다. GTZ는 아프리카의 면화의 국제경쟁력향상과 수입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면화생산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규범의 준수에 입각한 재배기법의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각 협력대상국에서 아프리카의 면화생산 소농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3개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베냉의 경우 약 18,000명의 소농들이 친환경 농업의 교육훈련을 받았고, 2007년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여성을 포함한 약 1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이 실시되었다. 잠비아에서는 면화제조업체인 Dunavant사가

113) 코토누협정을 바탕으로 동남아프리카(ESA-EPA), 남아프리카(SADC-EPA), 서부아프리카(ECOWAS-EPA), 중앙아프리카(CEMAC-EPA), 카리브연안(CARIFORUM-EPA), 태평양(Pacific-EPA)의 6개 지역에서 EU-ACP 간의 EPA가 진행되고 있다. 각 EPA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114) BMZ (2003)

115) www.cotton-made-in-africa.com

116) 본 프로젝트의 파트너에는 Accenture, Aid by Trade Foundation (AbT), DEG, Deutsche Welthungerhilfe (DWHH), Dunavant SA, McCann Erickson, Naturschutzbund Deutschland e.V. (NABU), Otto Group, Tom Taylor, WWF, Bierbaum Group, Bon Prix, Celio, Peek&Cloppenburg, Quelle, QVC, Tchibo GmbH, 3suisses, Witt Weiden 등이 있다.

'YIELD 프로그램(*Yield Improvement through Empowerment, Learning and Discipline Program*)'을 창설하여, 지속가능한 산출량 증대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결과, 잠비아의 프로그램 참가 농가에서는 평균 산출량에 비해 산출량이 46%에서 163%까지 증대되었고, 소득 또한 비참가자들에 비해 62%~253%가량 증가하였다. 협력대상국의 세대수를 8~10명으로 간주할 경우, 본 프로젝트의 결과 베냉, 부르키나파소, 잠비아의 약 120만 명의 삶이 질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섬유가공 및 유통을 포함한 가치사슬, 공급망의 개념을 프로젝트에 도입하기 위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3. 미국

미국정부의 AfT는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TRTA/CB)'지원이 중심이며, 공식적으로는 '무역역량강화(trade capacity building: TCB)'라 명명되고 있다. TCB는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협력 아래 미국국제개발청(USAID)의 해외사무소에서 계획되고, USAID 및 기타 정부부처에 의해 집행된다. TCB 집행기관에는 USAID,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무역대표부(Office of US Trade Representative), 국무부, 노동부, 농무부, 미국무역개발청(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등이 있고, 무역대표부가 기관 간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중 USAID는 MCC에 이어 가장 많은 TCB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미국의 민간기업의 직접적인 참여 아래 협력대상국의 산업협회 및 민간기업 등을 직접적인 사업대상으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구체적인 TCB 정책은 각 국가 및 지역의 특수한 니즈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나, 정책적으로 1) 협력대상국 정부 및 민간의 무역협상참여 지원, 2) 무역협정의 이행지원, 3) 정부와 민간의 공급자로서의 역량개발과 경쟁력향상을 우선분야로 채택하고 있다.¹¹⁷⁾ 기타, 미국은 'IF 작업반(Working Group)' 참가와 IF 신탁기금(trust fund)에 대한 기여금제공¹¹⁸⁾,

117) WTO/OECD (2007a)

118) USAID (2005): 미국의 IF 프로세스 참가를 통한 지원 금액은 2001년의 3,660만 달러에서 2005년 1억 3,290만 달러로 약 4배 증가하였다.

WTO의 '무역관련 기술협력계획(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Plan)' 참여 등 다자기구를 통한 AfT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3.1. 미국의 무역관련 원조정책 및 현황

2000년 5월 제정된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은 무역특혜제공을 통한 대 아프리카 지원책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역, 투자, 개발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1) 사하라이남 국가의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경제성장의 촉진, 2) 사하라이남 국가들이 추진하는 경제, 정치, 사회적 개혁의 후원, 사하라이남 국가들과 미국의 무역 및 경제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하라이남 국가들과 미국의 무역확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수출품이 미국시장 내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미국시장을 개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GOA의 대상인 아프리카 40개국은 준 면세(quasi duty-free) 및 쿼터면제를 통해 미국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2007년 현재, AGOA 적용대상국 수출품의 약 98%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¹¹⁹⁾

AGOA의 적용으로 2007년도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대 미국 수출은 2001년도 대비 약 세 배 증가한 674억 달러였고, 미국의 동년도 대 아프리카 수출은 2001년도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14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¹²⁰⁾ 석유는 AGOA 적용국의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석유 수출품에는 의류, 신발류, 과일 및 견과류, 가공야채, 가죽제품, 화훼, 가공해산물 등이 있다. 최근에 들어 비석유 수출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2007년도 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투자도 2001년도 대비 약 52% 증가하여 138억 달러에 이르러, AGOA를 통해 결과적으로 양자 간의 무역 및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GOA의 적용대상국 요건(country eligibility)을 살펴보면, 시장경제 및

119) 설탕, 담배, 땅콩, 쇠고기, 낙농제품 등 일부품목은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s)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120)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08)

법의 통치확립 노력과 함께 미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무역장벽을 철폐할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¹²¹⁾ 이를 통해 우리는 AGOA가 단순한 아프리카의 대미국 시장접근성 확대지원 방안이 아니라, 미국기업의 대 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기회의 확대를 지향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무역정책임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대와 다자무역시스템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장래적인 미국의 수출시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4〉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상의 국가지위

(2008년 1월 22일 현재)

지 위	국가 (총 40개국)
부적격 국가 (8개국)	코모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수단, 짐바브웨
AGOA 적격국 (14개국) : 단, 섬유 조항(Apparel Provision)*1은 미적용	앙골라, 부룬디,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토고
AGOA 적격국 (1개국) : 섬유조항은 적용되나 특별규정(Special Rules)*2은 미적용	남아프리카
AGOA 적격국 (25개국) : 섬유조항 및 특별규정이 적용됨	보츠와나,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주1: '섬유조항'이란, 아프리카 최빈국들을 대상으로 한 섬유수출 특별조치로, 2012년까지 이들 나라에서 생산한 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2: 특별규정(Special Rule)이란, 1998년 기준 1인당 GNP 1500달러 이하 국가들이 3국 원단을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대미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 1인당 국민소득 1500달러를 훨씬 능가하는 국가는 제3국 원단을 사용해 미국에 수출하여도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출처】 Danielle Langton (2008)

121) 상동 (2008): 그 밖의 자격요건에는 빈곤감소를 목표로 한 경제정책의 이행, 국제적 기준아래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 반부패 시스템의 정립 등이 있다.

미국의 대 아프리카 AFT 이니셔티브

'아프리카개발과 기업을 위한 무역(Trade for African Development and Enterprise: TRADE)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의 적용확대¹²²⁾, 아프리카 기업의 국제무역 및 지역 내 무역확대, 사업환경 및 무역환경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2001년 10월 부시대통령에 의해 발표되었다. AGOA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다면, 'TRADE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아프리카 기업의 비즈니스 연계강화를 통한 아프리카국가의 다자무역시스템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TRADE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부시대통령의 2006년 '아프리카 글로벌 경쟁력강화 이니셔티브(African Global Competitiveness Initiative: AGCI)' 제창을 통해 확대·보완된다. 본 이니셔티브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 및 투자지원으로 5년간 2억 달러를 제공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¹²³⁾ AGCI의 구체적인 지원분야로는 1) 민간기업 주도의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및 규범개선, 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민간기업의 시장참여를 위한 지식 및 기술지원, 3) 무역 및 투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4) 인프라정비를 위한 투자촉진 등이 있다. USAID 본부 및 해외사무소, 기타 미정부기관은 AGCI 기금을 이용한 무역 및 투자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본 기금은 USAID의 '아프리카 글로벌 경쟁력강화 허브(African Global Competitiveness Hubs)'의 운영, 아프리카기구 및 정부, 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허브 등의 모범사례, 회의결과, 교육훈련 및 발표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한 '지식공유 및 분석(Knowledge Sharing and Analysis: KSA)' 프로젝트에도 사용되고 있다.

122) USAID (2003):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GOA)'의 적용확대 지원 분야에는 아프리카국가의 대 미국 섬유비자(textile visas)획득, 식품안전성 개선, 병충해 리스크평가 수행, 시장특정, 미국기업과 아프리카 기업 간의 연계강화 등이 있다.

123) 2006년: 3천만 달러, 2007년: 3,500만 달러, 2008년: 4천만 달러, 2009년: 4,500만 달러, 2010년: 5천만 달러

〈표 3.5〉 '아프리카 글로벌 경쟁력강화 이니셔티브(AGCI)'의 자금배분

[연도별 추이]

(FY)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백만 달러)	30	35	40	45	50	200

[분야별 배분]

FY2006 ~2010년	비즈니스 환경조성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	금융서비스 (환경조성)	인프라	프로그램 지원	합계
(백만 달러)	25	51.5	31	70.5	22	200

【출처】 USAID 내부자료 "African Global Competitiveness Initiative" Program Description

USAID의 무역지원정책과 아프리카

USAID는 분야별 부서 내에 '경제성장 및 농업, 무역국(Bureau for Economic Growth, Agriculture and Trade)'을 설치하고, 국내정부기관, 아프리카 지역기구¹²⁴⁾,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AfT를 실시하고 있다. 즉, USAID는 미정부기관, 기타 공여국, 협력대상국의 정책분석가 및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에 입각한 정책수립 및 이행을 증시하고 있다. 현지 파트너십은 주로 24개 현지사무소와 3개 지역사무소(현지사무소가 없는 20개국을 추가지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USAID는 AfT 중 '무역역량강화(TCB)'를 핵심항목으로 채택하고, 개도국의 물리적, 인적, 제도적 역량강화를 통한 다자통상시스템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TBC의 구체적인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

WTO인지와 가맹(WTO awareness and accession)

WTO 협정(WTO agreement)

124)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East Africa Community, 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등

무역촉진(trade facilitation)

인재 및 노동기준(human resources and labor standard)

금융부문개발(financial sector development)

무역관련 인프라개발(trade-related infrastructure development)

환경(environment)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농업개발(agriculture development)

서비스(services)

거버넌스 및 기관 간 조정(governance and inter-agency coordination)

이와 같이 USAID의 무역원조는 '무역관련 인프라개발'까지 물리적인 역량강화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개도국의 다자무역시스템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배경에 부정부패, 분쟁, 급격한 체제이행 등의 열악한 거버넌스가 존재한다고 분석하고,¹²⁵⁾ 개도국의 선정(good governance)을 TCB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USAID의 TCB의 형태로는 전문가파견이 일반적이다. 전문가파견은 협력대상국의 니즈에 따라 OECD 및 WTO, 기타 미국 정부기관에 전문가추천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나, 프로젝트 베이스의 경우 대부분 공개입찰로 실시된다. 사전 경쟁입찰 단계(4-5주)와 본격적인 경쟁입찰 단계(3-4개월)를 거쳐 최종확정까지 약 7-10개월이 소요된다. 입찰기관은 교육기관, 민간 싱크탱크, NGO 등 다양하나, 무역 및 투자분야의 경우 미국의 주요 경영컨설팅기업 및 민간조직의 입찰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수주기관은 업무실시 도중 중간보고서 제출의 의무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USAID의 대 아프리카 TCB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USAID의 2007년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TCB 지원금액은 9,260만 달러였다.¹²⁶⁾ USAID는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한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의 지속성유지를 위해 시장개방 및 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무역정책 개혁(trade policy reform)'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25) USAID (2002)

126)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08)

이는 적절한 무역정책의 수립 및 이행이 아프리카의 시장개방 및 외국인투자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현지고용확대 및 소득수준향상, 국가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정책개혁지원의 세부내역에는 무역 및 투자개방 확대,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조성, 농업생산성 및 거래확대, 천연자원 관리역량 강화, 농촌지역의 수익증대 등이 있다. 특히, USAID는 이러한 세부내역을 미국기업과 아프리카기업간의 사업협력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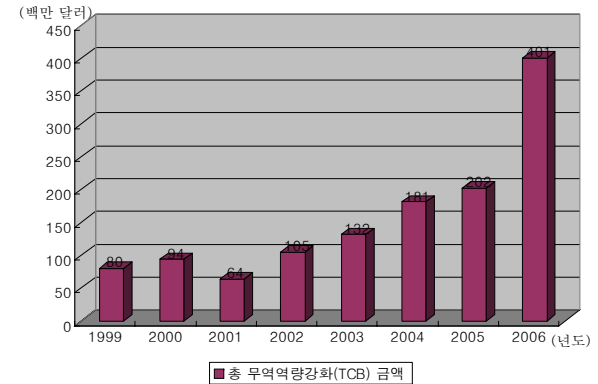
이러한 USAID의 AGOA 관련 TCB를 지탱하는 데 아프리카 AfT이니셔티브에는 앞서 언급한 '아프리카 글로벌 경쟁력강화 이니셔티브(AGCI)'와 '아프리카 기아종식 이니셔티브(Initiative to End Hunger in Africa: IEHA)'가 있다. 현재, USAID는 AGCI 기금을 활용하여 가나, 세네갈, 보츠와나, 케냐에서 '아프리카 글로벌 경쟁력강화 허브(African Global Competitiveness Hubs)'를 운영하고 있다. '경쟁력강화 허브(일명 무역허브)'는 아프리카의 지역기구, 미 정부기관, 민간기업, 기타 공여국 및 시민사회조직(CSOs)을 대상으로 무역 및 투자, 지역 내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USAID는 IF 이니셔티브 및 기타 세계은행, WTO, IMF, UNDP 등의 다자기구의 AfT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미국의 대 아프리카 AfT 규모

USAID를 포함한 미국정부의 2006년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역량강화(TCB)' 지원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49.5% 증가한 약 4억 달러로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2007년 미국정부가 사하라이남 TCB 지원에 지출한 금액은 총 16억 달러에 이르며, 2007년도 지원액은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5억 5백만 달러였다.¹²⁷⁾ USAID는 미국정부의 TCB 중 약 70%를 현장 집행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무역지원을 통한 아프리카 정부의 무역장벽 제거와 아프리카 기업 및 근로자, 농부들의 국제무역으로부터의 혜택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127)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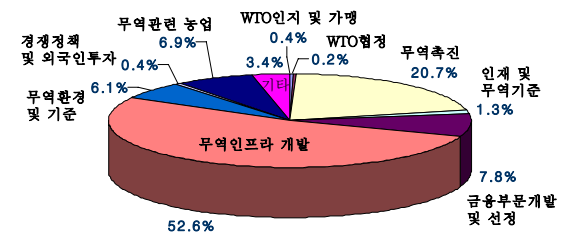
〈그림 3.4〉 미국의 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무역역량강화(TCB)'지원 추이



【출처】 USAID Trade Capacity Building Database 참조 작성

한편, 협력분야별로는 무역관련 인프라개발이 약 2억 천만 달러(5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¹²⁸⁾

〈그림 3.5〉 미국의 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무역역량강화(TCB)' 지원- 분야별 비율



【출처】 USAID Trade Capacity Building Database 참조 작성

128) USAID Trade Capacity Building Database (<http://qesdb.usaid.gov/tcb/index.html>)

〈Box 3.3〉 USAID의 지역별 '아프리카 글로벌 경쟁력강화 허브(African Global Competitiveness Hubs)' 추진현황

□ 동부 및 중앙아프리카

케냐에 위치한 동부 및 중앙아프리카(ECA) 무역허브는 USAID 동아프리카 지역 사무소(USAID/EA)가 자금지원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07년, ECA 무역허브는 아프리카 생산자와 선진국의 구매자의 무역연계 개선지원, 기업단위의 기술협력(의류 및 생화부문), 협력대상국별 AGOA 무역전략 개발, 전략분석 및 계획수립 등 AGOA관련 집중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ECA허브는 5회에 걸친 미국 해외시장개척단(trade mission)파견 사업을 통해 ECA지역 30개사의 생산품진시를 지원하여, 약 7백만 달러의 거래가 성사되었다. 기타, ECA허브는 COMESA와 협력하여 관세 및 세금제도개선 등 지역 내 무역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 남부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위치한 남부아프리카(SA) 무역허브는 USAID 남부아프리카 지역사무소(USAID/SA)가 자금지원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07년, SA 무역허브는 무역지원 성공사례 평가를 통해 동 무역허브의 무역전시회, 기업 간 특별행사(약 50개사), 미국구매자와의 직접적인 연결 등을 통해 특히 특산식품 및 의류분야의 AGOA 수출이 1,580만 달러 이상에 이르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미국과 남부아프리카의 식품 및 의류관련 기업 간에 약 300건의 신규 무역계약이 체결되었다.

□ 서부아프리카

가나와 세네갈에 위치한 서부아프리카(WA) 무역허브는 USAID 동아프리카 지역 사무소(USAID/WA)가 자금지원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두 무역허브는 서부 및 중부아프리카 21개사의 국제무역전시, 기업별 미국 및 국제시장 진출전략 교육훈련(품질인정 및 포장, 가격책정, 마케팅, 재정관리 등) 등을 지원하였다. 약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개인연수에서는 약 40%가 여성이었다. 2006.10-2007.9까지 약 1,100만 달러의 수출진흥 효과가 있었고, 생산자와 구매자간에 약 1,500건의 비즈니스계약이 체결되었다.

【출처】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08)

3.2. 미국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사례

3.2에서는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현황 및 사례로서 미국정부의 AfT 중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 USAID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USAID는 현재 각 지역사무소¹²⁹⁾ 및 16개 아프리카국가에서 AfT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사례1 우간다 '민간기업 경쟁력강화(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Private Enterprise: SCOPE)' 프로젝트

화초원에는 우간다의 다섯 번째 최대 수출품목으로 한명의 화훼노동자가 약 5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화훼노동자의 약 60-80%가 여성인바 화훼수출은 우간다 주민의 수입증대 및 생계유지에 있어 중요한 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수출업자들은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GOA)'의 적용 하에 무관세 및 쿼터면제로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바, 아프리카의 화훼 수출업체들에게 있어 미국은 EU와 함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이다. 그러나 수출에 앞서 미국의 진입규제(entry regulation) 및 원산지규율의 이행 등 우간다 수출업체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USAID는 '민간기업 경쟁력강화(SCOPE)'프로젝트를 통해 우간다 화훼 수출업자에 대한 미국의 진입규제, 수출서류작성, 원산지규율 등에 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¹³⁰⁾ 동 프로젝트는 우간다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우간다정부와 협력하여 민간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우간다 화훼 수출협회(Uganda Flower Exporters Associate)'의 사업경쟁력향상 계획수립에 기여해 왔다. 아울러, USAID 우간다 현지사무소는 '우간다 농업생산성 증대 프로그램(Uganda's Agricultural Productivity Enhancement Program)'을 통해

129) 지역별 AfT 프로젝트로는 동부아프리카에서 실시된 민간부문 주도의 지역무역협회를 통한 커피 및 면화, 유제품, 옥수수의 수출증대 사업이 있다. 본 프로젝트의 결과 2007년도 현재 2002년 대비 약 57%의 수출이 확대되었다. 또한, USAID는 중앙아프리카의 배전망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은행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5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투자지원을 추가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130) http://www.usaid.gov/press/frontlines/fl_julaug05/regions.htm

화훼생산자들에게 신규 생산기술전수, 수확 후의 관리교육, 병충해 예방프로그램 등을 병행하며 'SCOPE 프로젝트'의 사업효과를 제고하였다. 결과, 2006년 2월 우간다의 Rosebud LTD가 생산한 50만 송이의 장미가 처음으로 미국에 출하되었고, 이후 우간다의 대 미국 화훼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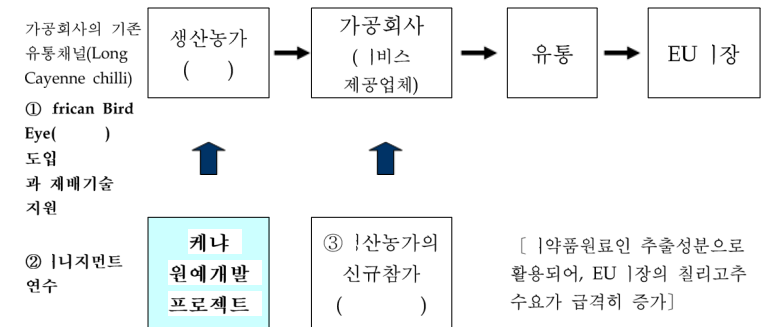
사례2 '케냐 원예개발 프로젝트(Kenya Horticulture Development Project)'

미국의 대부분의 농업프로젝트는 협력대상국 농민 및 현지 판매자들의 국제 식품 및 농업시장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USAID의 경우, 국내 주립대학 및 연구센터와 협력하여 최신 생산기술 및 가공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또한, USAID는 현지 슈퍼마켓 및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생산자들이 국제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안정성 및 품질기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USAID의 작물의 다양화, 생산 및 수확후의 가공처리 개선, 시장과 협력한 소규모 농가의 소득향상지원을 목표로 한 대표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에는 '케냐 원예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2003년 USAID의 자금으로 '원예개발센터(HDC)'가 본부 및 정보센터로서 설립되었다. 그리고 '원예개발센터'의 운영은 농업부의 협력 아래 농업비즈니스 컨설팅기업인 Fintrac Inc.가 담당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출작물과 국내소비 작물도 프로젝트의 대상에 해당되며, 수출을 위한 현지 비즈니스파트너 및 투입자재, 냉동시설, 가공 및 판매기업과의 협력 아래 실시한다. USAID의 구체적인 지원에는 전문가팀의 시장판매를 겨냥한 생산기술지원과 수확후 처리지원, 현지소매점 및 시장공급교섭, 수출시장조사 등이 있다. 특히, 수출시장을 겨냥한 칠리고추(chilli)의 신품종 도입과 수확량증대 프로젝트에서는, 현지 가공회사를 서비스 제공업체로 활용하여 대 EU 수출확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¹³¹⁾ 수출증대의 성과는 EU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가공업체의 활용에 있었다. 그러나 USAID의 재배기술전수, 관리자금 연수를 통한 역량개발, 정기모니터링을 활용한

생산량평가, 생산기점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처 소개 등의 지속적인 지원 또한, 수출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림 3.6〉 케냐 칠리고추(African Birds Eye) 수출증대 프로세스



【출처】 Overseas Merchandise Inspection Co., Ltd.(OMIC) (2007)

〈Box 3.4〉 미국 MCC의 무역을 위한 원조

2004년에 창설에 된 미국의 해외원조기금인 '새천년 도전 기금(Millennium Challenge Account: MCA)을 운용하는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는 무역을 통한 아프리카국가의 경제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의 무역개발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MCC가 재정지원을 협약한 11개 협력대상국 개발프로그램(약 3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이 국제무역관련 과제였고, 25개 협력대상국 중 12개국이 아프리카국가이다. 2005년 4월 마다가스카르와의 협약(compact)을 시초로 2007년 현재 베냉, 카보베르데(1억 천만 달러), 가나(5억 4,700만 달러), 말리(4억 6천만 달러)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8개국이 MCC와 다년간 협약을 맺었다. 베냉의 경우 코토누항의 운영 및 인프라정비에 1억 6,900만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131) Overseas Merchandise Inspection Co., Ltd.(OMIC) (2007)
<http://www.usaid.gov/ke/ke.agbuen/activities/horticulture.html>

그 밖에 MCC는 부르키나파소, 케냐, 말라위,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등에서 관세 및 국경관리정책 지원 등 소규모 무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바 있다. 한 예로, 잠비아에서는 현대적인 관세기술 도입, 모니터링 및 표준화, 수출입 품질보증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가 실시되었고,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제라늄의 시장부가가치 향상,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민교육, 생산자와 구매자간의 협상능력 배양 등을 위한 기술협력이 시행되었다.

【출처】Maureen Harrington (2007) 'Countries Bring Trade into Development Projects'; *International Trade Forum-Issue 1/2007*, International Trade Center

4. 스웨덴

스웨덴은 MDGs Goal 8의 달성을 통한 빈곤감소를 위해 선진국 및 개도국과 개발, 환경, 무역, 부채탕감 등의 범지구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을 표명하고 있다. 스웨덴 외교부(Ministry for foreign Affair)는 글로벌프로그램(다자협력 프로그램)의 정책수립 및 예산지출을 담당하며, 대부분의 양자간 AfT와 일부 다자협력 프로그램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Sida)'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¹³²⁾ 기타 스웨덴 상공회연합(Swedish Chambers), 무역위원회(National Board of Trade), 스웨덴 특허청(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세관(Swedish Customs), 국제산업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wedish Industry) 등도 양자 간 AfT를 추진하고 있다.

4.1. 스웨덴의 무역관련 원조정책 및 현황

스웨덴정부는 2003년 '국제개발정책(Swedish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을 통해, 국제무역이 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미친 효과에 주목하며, 개도국의 무역활성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를

132) Sida의 무역팀(Trade Team)이 외교부와 협력하여 전반적인 TRA를 계획, 실행하고 있다.

위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³³⁾

Sida의 무역관련 원조정책

Sida가 2005년에 발표한 'Sida 무역관련 개발협력 정책(Sida's Policy for Trade-Related Development Cooperation)'은 Sida의 공식적인 TRA 정책문서이다. 본 정책문서는 Sida 내부의 무역정책 및 무역개발관련 지원 프로젝트의 계획 및 실행 시 공통된 목표와 분야,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TRA 목표는 다음과 같다.¹³⁴⁾

- 개도국의 국별 무역정책 프레임워크 계획 및 관리역량을 개발함
- 개도국이 양자 및 지역, 다자간 무역정책 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함
- 개도국의 협의된 무역규칙 및 수출시장규범 준수와 자국무역 진흥역량을 개발함

이상 Sida의 TRA는 대부분이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TRA의 세 가지 목표는 크게 '무역정책 및 규범(trade policy and regulations)'과 '무역개발(trade development)'의 영역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Sida의 주요 협력대상국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최빈국(LDCs)이며,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아래 국별 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 및 무역통합진단연구(DTIS)¹³⁵⁾에 따른 AfT를 실시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의 국별전략에 따른 AfT는 협력대상국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가를 동반한다는 점에 있어 중요하다.

한편, Sida는 2006년 10월에 의회에서 결정된 'EU 무역을 위한 원조(AfT) 전략'을 바탕으로, 2007년 5월 AfT 정책문서인 'Sida 무역관련 개발협력 계획(Plan for Sida's Trade-Related Development Co-operation)'을 수립하고

133) WTO/OECD (2007a)

134) Sida (2005) : 스웨덴과 같이 AfT를 정책문서로 전락화하고 있는 나라에는 덴마크와 핀란드가 있다.

135) 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ies

EU전략과의 정책의 일관성 아래 AfT를 추진하고 있다.¹³⁶⁾ 본 계획은 WTO AfT 작업반의 권고사항(Task Force Recommendations)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Sida는 동 계획문서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중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에티오피아, 케냐, 모잠비크를 중심협력국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향후의 Sida의 무역관련 원조의 중점분야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 다섯 가지 중점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Sida의 무역관련 원조 중점분야

Sida의 무역관련 지원방향은 크게 1) 무역정책 및 국제규범, 무역협정 지원 이니셔티브와 2)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기업 및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이니셔티브로 나뉜다.¹³⁷⁾ Sida는 이러한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1) 농산물무역(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2) 전력거래(electricity trade), 3) 거래비용(관세 및 운송비용), 4) '무역개발(trade development)', 5)연구 및 교육연수, 정책책정을 우선지원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첫 째, Sida의 농산물무역 지원의 핵심은 협력대상국이 수출시 직면하는 무역장벽을 해소하는데 있다. 즉, 커피, 차, 청과물 등의 농산물은 대부분의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목이자 수입원인바, Sida는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무역촉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의 국제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프로젝트에는 협력대상국의 기술적 장벽(농업연구소에 국제규범에 의거한 기술전수, 국제시장에서 각 농산품에 부과된 요구사항 등의 정보제공) 및 위생 및 검역장벽(청과물에 대한 살충제 및 기타 화학물질 사용금지 규정 등) 해소, 국제농산물표준 및 품질규정의 준수지원 등이 포함된다.

둘 째, 만성적인 전력부족 및 정전은 협력대상국의 경제성장의 큰 장애가 된다. 따라서 Sida는 협력대상국의 내수 전력과 산업 전력이 안정하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전력공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기업의 전력거래까지

포함되는데, Sida의 협력 동기는 다음과 같다.

전력생산이 양호한 국가가 전력부족 국가에 전력을 공급 또는 수출하는 것이 보다 비용 효율적임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사용의 유도
아프리카국가들은 지역 내 전력시장개발 및 관련 인프라의 구축을 요청 중임
스웨덴 기관 및 민간기업은 국제적인 전력거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 추고 있음

사례로는 아프리카지역의 전력거래를 지원하는 '남부 아프리카 파워풀(Southern African Power Pool: SAPP)'과 '나일강 유역 이니셔티브(Nile Basin Initiative: NBI)'가 있다.

셋 째, Sida는 협력대상국(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소기업이 국경간 거래 시 직면하는 비싼 거래비용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세절차 및 운송시스템의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에는 관련 인프라구축에 대한 투자와 제도개혁이 있다.

넷 째, Sida의 '무역개발'지원은 협력대상국 민간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수출 역량강화를 목표로, 상공회의소 등 협력대상국의 민간기업 및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개발'은 특정 사업 및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적인 프로젝트 또는 Sida의 기타 프로그램(농촌개발 프로그램 등)의 일환으로서 시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Sida는 무역정책을 국별 빈곤감소전략에 반영하고자 하는 협력대상국의 동기제고, 협력대상국 정부의 무역정책 분석 및 입안, 협상, 실행역량의 강화,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의 의견반영, 국제무역에 대한 신규 연구정보의 제공 및 적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¹³⁶⁾ Sida (2007)

¹³⁷⁾ Sida 웹사이트 (http://www.sida.se/sida/jsp/sida.jsp?d=623&language=en_US)

〈Box 3.5〉 Sida의 '아프리카 무역정책 훈련센터'

2006년 12월, 탄자니아의 Arusha에 무역관련 교육연수 및 기술협력을 위한 '아프리카 무역정책 훈련센터(Trade Policy Training Center in Africa: TRATCA)'가 설립되었다. TRATCA는 Sida의 자금지원과 'Eastern and Southern Africa Management Institute(ESAMI)' 및 스웨덴 'Lund 대학'의 후원아래 운영되고 있다. TRATCA의 목표는 국제무역에 관한 새로운 인식배양과 최빈국(LDCs)간의 네트워크형성, 50개 최빈국(LDCs) 및 기타 사하라이남 저소득국의 무역역량강화이다. 주요 대상그룹에는 정부관료, 대학원생, 국제기구 및 NGO 대표단, 국제무역관련 민간기업 등이 있다.

【출처】 TRATCA 브로셔 (<http://trapca.org/pdf/TrapcaCorporateBrochure3.pdf>)

스웨덴 상공회연합의 무역관련 원조현황

'무역진흥 프로그램(Trade Promotion Programme)'은 Sida의 협력대상국과 유럽/스웨덴 간의 무역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스웨덴 상공회연합(Swedish Chambers)과 Sida의 자금지원 하에 실시되고 있다.¹³⁸⁾ 본 프로그램은 MDGs달성을 위한 스웨덴정부의 '국제개발정책(Swedish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의 일부로 계획되었고, 주요 목적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지역(특히, 최빈국)의 수출업자 및 수출업체의 역량 및 경쟁력강화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다. 또한, '무역진흥 프로그램'은 1) 역량강화 교육연수, 2) 시장정보 및 기업연락처 제공, 3)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정책대화 참가로 구성되며, 국내 8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현지의 니즈와 개별적 상황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¹³⁹⁾

138) Swedish Chambers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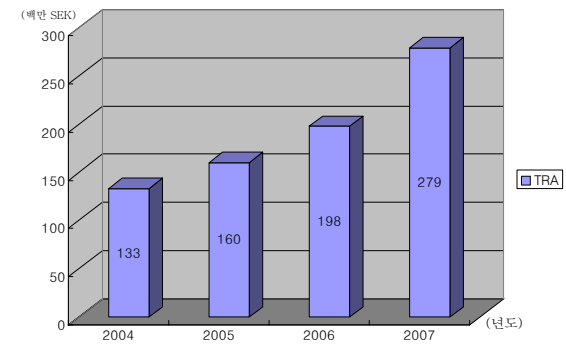
139) 스웨덴에는 총 8개의 상공회의소가 있음. (The Chamber of Commerce of East Sweden, The Chamber of Commerce Mälardalen, The Chamber of Commerce of Central Sweden, The Mid Sweden Chamber of Commerce, The Norrbotten Chamber of Commerce,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The Vasterbotten Chamber of Commerce, The Wermland Chamber of Commerce)

8개 상공회의소는 '무역진흥 프로그램'의 기업 간 기업연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협력대상국기업의 제품홍보 및 거래, 시장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인 "Chamber Trade"를 공동운영하며 스웨덴 기업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동유럽 등의 비즈니스파트너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⁴⁰⁾

Sida의 무역관련 원조의 규모

Sida의 '무역관련 원조(TRA)'란, WTO/OECD TCB 데이터베이스의 범주 중 '무역정책 및 규범', '무역개발'에 해당되며, '무역개발'의 경우 Sida의 민간부문개발(PSD)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2007년 12월 현재 Sida의 총 '무역관련 지원(TRA)'규모는 약 9억 4,800만 크로나로(약정금액), 101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¹⁴¹⁾ 2007년도에 Sida가 국별, 지역별, 글로벌 프로그램에 약정한 금액은 약 2억 7,900만 크로나¹⁴²⁾로 전년도 대비 약 8,100만 크로나가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의 TRA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7)

〈그림 3.7〉 Sida의 '무역관련 지원(TRA)' 추이 (2004~2007)



【출처】 Sida 제공통계 참조작성 (Mr. Ringborg, Division for Market Development, Sida, 08.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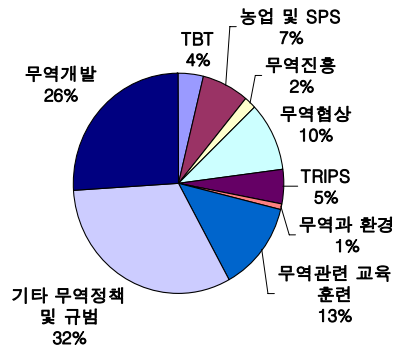
140) Chamber Trade (<http://www.chambertrade.com/>)

141) Sida (2008)

142) 약 US 4,130만 달러 (2008.9.19.현재)

우선 2007년도 '무역정책 및 규범'의 비중은 전체 TRA의 약 74%로, 여기에는 무역협상, '무역상의 실질적인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해소,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SPS)', 교육훈련,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무역진흥, 무역과 환경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반면, '무역개발'은 전체의 약 26%로, 기업의 사업환경 조성, 금융접근성 향상 등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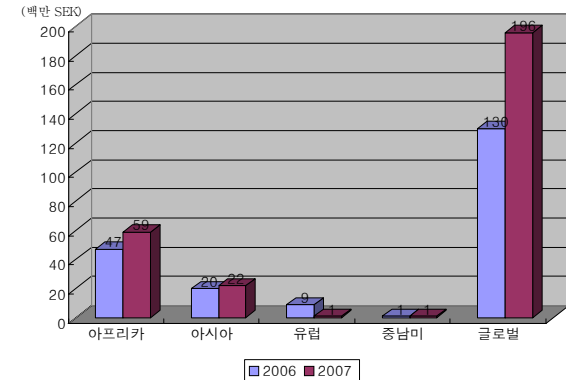
〈그림 3.8〉 Sida의 '무역관련 지원(TRA)' 배분비율 (2007년도)



【출처】 Sida (2008)

한편, Sida의 TRA는 대부분 글로벌 프로그램(70%)을 통해 추진되었다.¹⁴³⁾ 지역별 양자원조현황을 살펴보면 아프리카지역이 21%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이어 아시아지역이 8%, 동유럽 및 중남미지역이 1%를 각각 차지하였다.¹⁴⁴⁾

〈그림 3.9〉 Sida의 지역별 '무역관련 지원(TRA)' 현황



【출처】 Sida 제공통계 참조작성 (Mr. Ringborg, Division for Market Development, Sida, 08.09.30)

4.2. 스웨덴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사례

스웨덴의 TRA 중점협력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이며, EU의 이니셔티브에 맞추어 향후 ACP지역에 대한 원조를 2005년 대비 50%이상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협력대상국에는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에티오피아, 케냐, 모잠비크가 있다. 양자간 지원은 주로 농촌개발 또는 민간부분개발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다자간 IF 또한, Sida의 주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원 메카니즘으로 활용되고 있다.¹⁴⁵⁾

사례 1 '아프리카 유기농산물의 수출진흥(Export Promotion of Organic Products from Africa: EPOPA)' 프로그램

EPOPA는 아프리카지역의 차별화된 유기농산물(커피, 코코아, 파인애플, 바닐라,

143) IF, JITAP, STDF, WCO, TRALAC, IFOAM, ILEAP, ECDPM, ACWL, AITIC, ICTSD 등

144) Sida (2008)

145) Sida (2007)

참깨, 견과류 등) 재배와 수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Sida가 1995년부터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지역은 우간다와 탄자니아로, 아프리카 소작농들의 지역시장 및 국제 유기농 시장 참여지원을 통한 생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02년에 시작된 phase II는 2004년 3월에서 2008년 말까지 연장되었고, 대부분의 수출지원 프로젝트는 EPOPA 기술컨설턴트들의 협력 아래 약 3년간 진행된다.¹⁴⁶⁾

2004년 평가결과에 의하면, 우간다와 탄자니아의 약 2만 6천명의 농부들이 Sida의 EPOPA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농재배에 관한 기술지원을 받았다.¹⁴⁷⁾ 유기농산물 수출로 인해 농가에서는 일반작물의 수출에 비해 25~50% 이상의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었다. 우간다의 Ocheri 지역의 경우 1998년에 시작한 참깨재배로 3년 후 가계당 수익을 약 71%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¹⁴⁸⁾

사례2 '동아프리카 커피(East African Coffees)' 프로젝트

본 프로젝트는 스웨덴 상공회연합의 '무역진흥 프로그램(Trade Promotion Programme)'의 일부로, 동아프리카 지역의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의 커피생산 및 유통지원이 주요 목적이다. 커피산업은 이들 국가의 주요 산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의 격화 및 열악한 생산구조로 재배기술 향상과 국제시장에 대한 접근성향상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프로젝트는 수출업자들의 국제시장에 대한 이해 및 재배업자의 국제품질규정관련 이해향상, 동아프리카산 커피에 대한 북유럽의 관심제고 등의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프로젝트의 공동실행 주체인 '동아프리카 파인 커피 협회(Eastern African Fine Coffee Association: EAFCA)'는 프로젝트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협력하였고, 프로젝트 추진과정의 실질적 과제들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였다.

146) 한 예로, 우간다의 경우, 다년간의 내전과 농산물 무역네트워크의 붕괴로 1970년대 이래,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생산방식이 보편적이었다. 한편, 선진국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간다의 열악한 농산물 재배현황은 오히려 호기로 활용되었다. EPOPA 프로그램은 이러한 우간다의 비즈니스 기회에 착목하여 출발하게 된 것이다.

147) Kim Forss and Mikael Lundstrom (2004) :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관리 및 집행은 네덜란드 컨설팅기업 AgroEco Ltd.사와 스위스 컨설팅기업 Groling AB사가 담당하고 있다.

148) http://www.sida.se/sida/jsp/sida.jsp?d=1594&a=32934&language=en_US, <http://www.grolink.se/epopa/>

역량강화 지원

2006년 5월, 케냐와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재배업자 및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인식제고 워크숍(Awareness Workshops)'이 개최되어, 지역별 현안과제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재배업자들은 생산된 커피의 최종적인 소비양상과 커피의 품질, 가격, 시장경쟁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명되었다. 아울러 수출업자들은 커피 원두의 품질자체가 최종적인 제품생산 및 국제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재배업자들에게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간다와 케냐의 294개 소규모 커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훈련 'Know Your Cup - Roadshow'가 현지컨설턴트의 협력 하에 실행되었다. 2007년 상반기에는 평가 및 재배업자들의 실행지원에 기여한 재배농가 협동조합이 사후 교육훈련을 시행하였다.

시장접근성 향상

2006년 11월, 스웨덴 Arvid Nordquist(주)의 주선으로 EAFCA 대표단과 스웨덴의 수입업자 및 원두가공업자들의 사업협회가 이루어져, 3개국의 커피 샘플링과 품질 홍보가 있었다. 이듬해 2월에는 15개 북유럽기업이 커피재배농가의 현지시찰('Coffee Safari')에 참가하였다.

5. 영국

2005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G7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미국)은 Aft를 40억 달러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밝혔고, EU도 Aft를 2010년까지 매년 20억 유로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공약하였다. 영국정부 또한 이러한 일련의 증액 이니셔티브에 동참하여, 2005년 11월, 토니 블레어 수상(당시)이 Aft를 2010년까지 매년 1억 파운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한바 있다(2004년도 약

2,800만 파운드). 이어 2006년 9월,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당시)이 무역관련 인프라 지원을 포함한 총 AfT를 2010년까지 매년 7억 5천 달러(약 4억 9백만 파운드)규모로 확대해 나갈 것을 표명하였다. 첫 번째 공약이 좁은 의미의 무역정책관련 AfT 및 양자원조에 한정되는데 반해, 두 번째 공약은 경제인프라(도로, 항만, 전력, 정보통신 등)를 포함한 광의의 AfT와 양자 및 다자간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EIF(약 23개 공여기관이 기금출연을 공약함)에 향후 5년간 3,800만 파운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영국의 AfT는 주로 국제개발부(DFID)와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무역상무부(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ERR)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선진국 및 공여국의 정부 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개발원조에 무역의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¹⁴⁹⁾ 아울러 영국은 DFID와 기타 관련부처 간의 무역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정책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한 예로, DFID는 무역상무부와 공동으로 양 기관의 약 70명의 무역 및 개발전문가로 구성된 '무역정책유닛(Trade Policy Unit: TPU)'을 창설, 운영하고 있다.

5.1. 영국의 무역관련 원조정책 및 현황

영국은 AfT를 '기술지원, 역량강화, 제도적 개혁, 무역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관세수입에서 다른 수입재원으로의 전환에 드는 추가적 회계비용 등에 대한 조정비용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⁵⁰⁾ 그리고 영국의 AfT의 목적은 개도국 국민들이 경쟁력 있는 무역주체(traders)가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및 국제시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대상국의 지속적인 성장 및 빈곤감소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¹⁵¹⁾ 이러한 영국의 AfT 목적 및 주요 정책은 DFID의 세 가지 '국제개발백서(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및 무역사업부(DTI)의 '무역 및 투자백서(White Paper on Trade and Investme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9) 2008년 9월말 현재, DFID는 '무역을 위한 원조전략(Aid for Trade Strategy)'을 새롭게 수립하였나, 장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바 아직 외부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150)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K (2004)

151) WTO/OECD (2007a)

'Eliminating World Poverty: A Challenge for the 21st Century', DFID, 1997

'Eliminating World Poverty: Making Globalization Work for the Poor', DFID, 2000

'Making Globalization a Force for Good', DTI, 2004

'Eliminating World Poverty: Making Governance Work for the Poor', DFID, 2006

1997년의 신청부 수립까지 영국에는 일반적인 WTO 협상을 제외한 무역과 개발관련 정책은 제시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신청부 수립과 DFID의 97년도 국제개발백서 편찬을 계기로, 무역과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영국정부는 2000년도 국제개발백서를 통해 개방되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무역시스템의 구축과 개도국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된 공정한 무역규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¹⁵²⁾ 아울러 영국정부는 동 백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장벽해소, 개도국의 국제무역시장 참여를 통한 혜택제고를 위한 역량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밝히고 있다. 즉, 2000년도 백서는 무역과 국제자본이동을 개발의 중심테마로 다루며, 무역과 빈곤감소의 직접적인 연계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간접적 경로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DFID의 신 무역체제 구축 및 개도국의 무역관련 역량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표 3.6〉 DFID의 무역관련 지원 추세

1990-1997년 5월까지	1997년 5월 이후
타이드 원조 제도인 'ATP(Aid and Trade Provision)' 유지	언타이드 원조
3,200만 파운드의 수출진흥 프로젝트	1억 8,100만 파운드의 무역관련 개발원조 약정(1998-2008)
2개국의 국별 계획에 무역이 반영됨	대부분의 협력대상국의 국별 계획분석에서 무역이 반영됨
2명의 무역전문가가 참여	DFID 무역개발부(ITD)의 22명 및 4명의 지역 무역자문가가 참여
싱가폴의 WTO 컨퍼런스에 참여한 DFID 직원은 전무	DFID의 장관이 도하, 칸쿤, 홍콩 각료회의 등에 참여

【출처】 DFID (2005)

152) DFID (2000)

한편, DTI는 DFID의 2000년도 백서를 바탕으로 MDGs와 연관된 보다 구체적인 AfT 방침을 제시하였다. DTI의 2004년 백서는 AfT 방침을 크게 '무역관련 역량개발(trade related capacity building)'과 '활성화된 투자환경조성(building a strong climate for investment)'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⁵³⁾ 각 중점지원 정책의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 3.7과 같다.

〈표 3.7〉 영국 무역산업부(DTI)의 '무역을 위한 원조' 정책

	무역관련 역량강화	활성화된 투자환경 조성
개요	• 영국정부는 개도국이 자국의 니즈와 관련된 무역관련 의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전수하고자 함 • 무역역량강화를 통해 개도국의 무역개발전략 수립 및 실행을 돕고, 국가개발전략 또는 빈곤감소 프로그램 가운데 무역개발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협력대상국 정부 및 기타 공여국과의 협조아래 민간투자의 저해요소를 분석하고, 개혁 우선분야의 특정, 정책수립, 법률 및 규범변경 등의 투자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 • 민간부문개발의 활성화
행동계획	• 및 수출품목의 확대 등 수출의 양과 질을 제고함 • 고용 및 무역기회 창출을 위한 외국인투자를 확대 • WTO 등 다자무역기구의 참가 및 그로 인한 혜택제고	• 세계은행과 영국 비즈니스 협의회(Commonwealth business Council)의 투자환경조사 지원 • 투자환경개선 및 성장과 빈곤을 다룬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 2005' 작성지원 • 'Financial Sector Reform and Strengthening Initiative(FIRST)'에 대한 공동출연 •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카리브해 연안 국가의 은행이 중소기업(SME)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융자사업 지원 등

【출처】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K (2004)

153)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K (2004)

상기의 일련의 백서는, 영국의 개발목표인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란, 식량 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영국은 단순한 원조기관(Aid Ministry)이 아닌 개발기관(Development Ministry)을 지향한 원조를 정책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정부의 의지 및 정책 하에, 영국의 AfT자금은 주로 개도국의 협상지위 제고, 민간기업의 무역역량향상, 기업의 투자환경조성, 무역분야를 포함한 개발전략 및 빈곤감소전략 수립 등에 지출되고 있으며, 중점 협력대상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최빈국(LDCs)이다. 이어, 개발원조 전담부처인 DFID의 무역관련 원조의 정책, 전략,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DFID의 무역관련 원조정책 및 전략

DFID는 무역개혁(trade reform)이 장기적인 빈곤감소와 원조에 대한 의존감소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개도국의 국제무역참가를 저해하는 내부적 제약(열악한 운송 및 교통인프라, 분쟁, 부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¹⁵⁴⁾ 그리고 정부차원의 무역지원 방향성을 1) WTO 도하개발어젠다, 2) 경제파트너쉽협정(EPA), 3) 무역을 위한 원조(AfT),¹⁵⁵⁾ 4) 무역과 개발관련 연구조사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 AfT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면, 개도국의 국별 계획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 달라지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1) 무역관련 특정역량 강화, 2) 광범위한 경제인프라 구축(무역포함), 3) 무역정책의 개발 및 집행역량강화, 4) 조정비용 지원의 4가지를 중점분야로 채택하고 있다. 그 중 경제인프라 구축은 주로 다자기구 및 지역개발은행을 통해, 조정비용은 개도국에 대한 예산지원(budget support)을 통해 각각 지원되고 있다. 특히, 기타 선진공여국과 비교했을 때 특이할 만한 사항은, 무역조정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을 AfT의 프레임워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154) <http://www.dfid.gov.uk/aboutdfid/organisation/intertradedept.asp>

155) 2008년 10월 현재, DFID는 공식적인 AfT 전략문서인 '무역을 위한 원조 전략(Aid for Trade Strategy)'의 관송인 대기 중이며, 본 전략문서는 년도 말에 공식 출판될 예정이다. (DFID Trade Policy Unit Ms. Fiona Shera)

〈표 3.8〉 DFID의 '무역을 위한 원조' 우선분야

우선분야	예
무역관련 특정역량 강화	관세개혁, 최적 수출상품 개발, 국제위생 및 안전규범 준수, 민간 기업 또는 민간부문개발 및 투자, 수출입공정 개선 등
광범위한 경제인프라 구축	교통, 도로, 에너지, 정보통신 등
무역정책의 개발 및 집행역량강화	정부 또는 이해관계자(민간기업 포함)에게 우선순위 및 목적선정에 대한 자문제공(국가개발의 입안 및 계획, 예산배분, 집행에 대한 지원 등)
조정비용	무역특혜철폐, 관세수입축소, 높은 식량수입비용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출처】 DFID 웹사이트 정보정리

(<http://www.dfid.gov.uk/aboutdfid/organisation/intertradedept.asp>)

한편, DFID의 주요 협력대상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최빈국(LDCs) 및 기타 저소득국(LICs)이다. 이와 관련하여 DFID는 '아프리카 지역정책 유닛(Africa Regional Policy Unit)'과 남아프리카의 프레토리아(Pretoria)에 무역전문가 및 지역무역 전문가를 배치하고, 남부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의 지역 내 무역진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¹⁵⁶⁾ DFID의 아프리카 지원은 독립적인 무역프로그램보다 정부의 빈곤감소전략(PRSs)에 대한 일반회계지원관련 정책대화(탄자니아, 르완다), 빈곤층의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가나, 나이지리아)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기타 공여국 및 지역개발기구와의 원조조화를 위해 가나에서는 덴마크정부 및 EC와의 협력프로그램을, 모잠비크에서는 SADC 및 COMESA와 지역 무역활성화를 위한 세입 및 관세개혁 프로그램을 각각 실시한바 있다.

156) DFID (2005)

DFID의 무역을 위한 원조(AfT) 규모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국은 2010년까지 무역정책 및 규범의 개혁, 무역개발을 위해 1억 파운드를, 인프라 및 생산역량구축, 조정비용을 포함하여 4억 9백만 파운드 규모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한바 있다. 그 중 대부분의 지원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55%)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남아시아(30%)가 그 뒤를 잇고 있다.¹⁵⁷⁾ 약 70%는 주로 EC 및 세계은행 등의 다자채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신탁기금 제공, AfDB '아프리카 인프라 콘소시엄(Infrastructure Consortium for Africa)'과 같은 파트너십에 대한 출연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한편, WTO의 TRTA/CB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2006년도의 영국의 '무역정책 및 규범'지원 규모는 약 4,461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약 2배 이상 확대되었다.¹⁵⁸⁾ 반면, 동년도 '무역개발' 실적은 약 5,200만 달러로 전년도 약 5,560만 달러에 비해 약 300만 달러가량 축소되었으나, '무역정책 및 규범'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⁵⁹⁾ 본 통계에 의하면 무역정책관련 지원의 약 60%는 대부분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무역개발'의 약 50%는 아프리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¹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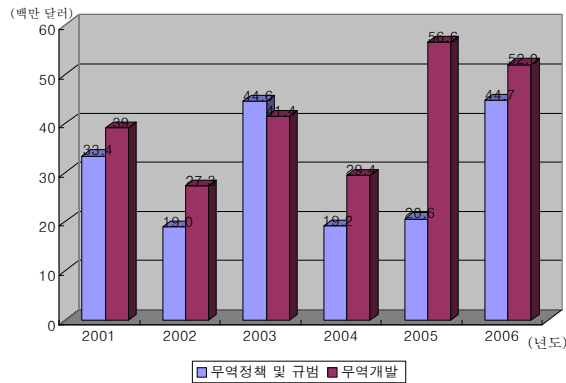
157) DFID Trade Policy Unit Ms. Melanie Curtis 제공 문서 'Aid for Trade' 중 (2008.10.30)

158) 같은 해 EC는 동 분야에 약 4억 6,592만 달러, 독일은 약 1,429만 달러, 미국은 약 3억 265만 달러, 스웨덴은 약 2,236만 달러, 일본은 약 4,34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159) WTO TRTA/CB 데이터베이스 (http://tcdb.wto.org/entity_project.aspx?catCode=250&EntityID=12)

160) WTO/OECD (2007a)

〈그림 3.10〉 영국의 주요 '무역을 위한 원조' 추이 (2001-2006)



【출처】 WTO TRTA/CB 데이터베이스 참고 작성

(http://tcdb.wto.org/entity_project.aspx?EntityID=12)

5.2. 영국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사례

영국의 2007/08년도 양자 간 대 아프리카지원은 2004/05년 대비 약 44% 증가한 12억 5천만 파운드, ¹⁶¹⁾ 특히 경제성장이 아프리카의 빈곤감소에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 하에 지역 및 범 아프리카의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반재정 및 분야별 재정지원과 함께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출경쟁력강화는 영국의 주요 대 아프리카 Aft 방침 중 하나이다. 영국은 '아프리카를 위한 인프라 콘소시엄(Infrastructure Consortium for Africa)'의 창설을 비롯하여 아프리카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진국의 자금 확대 및 조정에 기여하고 있다. DFID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영세제조업자 및 무역업자들의 지역무역 참여를 지원하는 '지역 무역진흥 프로그램(Regional Trade Facilitation Programme)'에 출연하였고, 대

161) DFID (2008) Annual Report

표적인 모범사례에는 '레소토 국세청(Lesotho Revenue Authority: LRA) 관세개혁 프로젝트가 있다.

사례1 'Sustainable Fisheries Livelihoods Programme(SFLP)'

SFLP는 1999년부터 약 7년간 DFID의 자금제공으로 실시된 프로젝트로 실시기관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약 25개국의 서부 중부아프리카 국가로, ¹⁶²⁾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업공동체의 지속적인 수산자원이용과 적합한 정치적 및 제도적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그들의 생계유지능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¹⁶³⁾ 또한, SFLP는 개도국이 유엔의 '책임감 있는 어장을 위한 실시 조례(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에 따른 정책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국별 빈곤감소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 어업공동체가 현지 NGO 등과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어업 계획 수립 및 관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 예로,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차드 E레지방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의 기술수준과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카누와 어망제작 기술이 전수되었고, 어부들의 카누 및 어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무담보소액대출 계획이 소개되었다. 특히, 새로운 타입의 혼제용 가마 'Chorkor'의 도입은 연료를 적게 사용하고도 고품질의 혼제생선을 생산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SFLP는 나이지리아, 니제르, 카메룬, 차드를 둘러싼 차드호(Lake Chad)의 140종의 어류수확과 가공, 유통을 지원하여, 연간 약 119,000톤의 가공어류(약 5,400만 달러의 가치)가 생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프로젝트의 실시기간은 2002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로, 총 예산규모는 16,540 달러였다.

사례2 레소토 관세개혁 프로젝트

무역진흥, 즉 국가 간의 상품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료적인 관세시스템의

162) Angola, Benin, Cameroon, Cape Verde, Congo, Côte d'Ivoire, Congo Demo. Rep., Equatorial Guinea, Gabon, The Gambia, Ghana, Guinea, Guinea Bissau, Liberia, Mauritania, Nigeri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ierra Leone and Togo, Burkina Faso,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Mali, Niger

163) DFID (2006) *Development Works: 52 Weeks a Year* 중

개혁이 필요하다.

DFID의 자금지원으로 2003년에 설립된 '레소토 국세청(Lesotho Revenue Authority: LRA)'은 무역 및 세금징수 확대의 모범사례 중 하나이다. 레소토는 주요 무역국인 남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국세청(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SARS)'의 협력 아래, 매출세(sales tax)를 폐지하고 남아프리카와 유사한 14% 수준의 부가가치세(VAT)를 설정하였다.¹⁶⁴⁾ 동시에 남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의 수입품에 부가되는 VAT를 직접 LRA에 변제해 줌으로써 영세 수입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결과, 2004년도와 2005년도의 관세수입은 각각 167%와 320%로 향상되었고, 밀수 및 탈세의 확률도 경감될 수 있었다. 나아가 다중 과세가 경감됨으로써, 국경 간 거래시간도 단축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2002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실시되었고, DFID는 322만 파운드의 자금을 LRA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세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에 제공하였다. 또한, DFID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약 83만 파운드의 재정지원을 실시하였다.

사례3 가나 토마토 품질향상 및 판매확대 프로젝트

무역활성화는 수출을 통한 수입증대 효과뿐 아니라, 값싼 수입품의 유입으로 경쟁력이 없는 현지 농가 및 제조업체들의 수익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가나의 경우, 유럽 및 미국의 값싼 토마토 가공품의 유입으로 인해(연간 약 만 톤), 현지농가들은 시장경쟁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또한, EU는 위생 및 검역기준의 준수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해, 가나의 채소류의 수입을 억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나는 무역개방과 함께 경쟁력이 없는 생산농가 및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에 DFID는 가나의 약 500명의 토마토 재배업자들을 대상으로 품질향상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2002년의 프로젝트 시작 이래 농가의 연간 출하량은 에이커 당 1.5톤에서 5톤으로 약 세 배 이상 확대되었고, Afrique Link 사와 Unilever 사의

참여로 토마토는 현지 슈퍼마켓에서 "Wenchi Fresh"라는 캔으로 가동되어 판매되고 있다.¹⁶⁵⁾ Afrique Link 사는 토마토를 가공, 출하하고 Unilever 사는 캔 제품을 현지 호텔 및 레스토랑에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나아가 Afrique Link 사는 인공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가나 제품의 강점을 활용하여 EU의 유기농시장에 가공 토마토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DFID의 '사업연계도전펀드(Business Linkages Challenge Fund)'를 통해 22만 파운드가 제공되었다. 프로젝트 파트너에는 앞서 언급한 두 민간기업 외에 가나 식품농업부와 독일의 GTZ 등이 있다.

〈Box 3.6〉 영국과 네덜란드의 케냐 농산물 수출지원

2007년 7월 케냐는 국가비전인 "케냐 비전 2030"에서 농업을 케냐경제를 견인하는 여섯 개 분야 중 두 번째로 지정하고, '농업생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업 소득 증대'를 지향하고 있다. 공여국의 ODA는 기술협력과 인프라정비를 통한 농업 생산능력 증대에 기여하였으나, 그것이 곧 수출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케냐의 과실류와 야채수출의 경우, 대부분 민간수출기업이 수출시장을 겨냥한 니즈 및 품질개선을 통해 생산수출하고 있어, 생산에서 수출에 이르는 공급망(supply chain)을 민간기업 내에서 내부화 및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소작농들이 수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케냐의 과실류와 야채는 대부분 영국 또는 네덜란드기업이 자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과 네덜란드는 자국기업과 협력하여 수출망에 소규모농가가 공급자(supplier)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수출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현지 노동자의 노동안전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DFID의 수출촉진 프로그램에는 '케냐 무역과 빈곤프로그램(Kenya Trade and Poverty Programme)', '비즈니

164) DFID 웹사이트 (<http://www.dfid.gov.uk/casestudies/files/africa/lesotho-customs.asp>)

165) DFID (2006) *Development Works: 52 Weeks a Year* 중

램에는 '케냐 무역과 빈곤프로그램(Kenya Trade and Poverty Programme)', '비즈니스를 위한 환경조성 프로젝트(Enabling Environment for Business)', '비즈니스 파트너십 프로그램(Business Partnership Programme)' 등이 있다. 반면 ODA를 담당하는 네덜란드 외교부는 자국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소작농들의 원예수출을 위한 적정 가공기술개발 프로젝트(Development of Appropriate Processing Technology for Horticulture Export by Smallholder Farmers)', '화초수출을 위한 소작농 참가장려 프로젝트(Encouraging Smallholder Involvement in Export Floriculture)' 등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참고】 Overseas Merchandise Inspection Co., Ltd.(OMIC) (2007)

6. 일본

일본의 무역관련 원조는 외무성산하의 국제협력기구(JICA) 외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해외무역개발협회(JODC), 해외기술자연수협회(AOTS), 기타 관련부처 및 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6.1. 일본의 무역관련 원조정책 및 현황

일본은 자국의 ODA가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 아래, 무역 및 투자, 인프라정비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성장지향형 협력을 증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최근의 ODA 예산삭감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경제인프라 및 민간부분개발, 농업개발 등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원조를 강화하고 있는 현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책정된 'New Asian Industries Development(AID) Plan'과 1990년대의 '정부개발원조 현장(1992)' 및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중기정책(1999)'에는 ODA와 민간의 직접투자, 무역의 유기적인 연계가 개도국의 총체적인 발전을 촉진한다고 언급되어 있다.¹⁶⁶⁾ 그리고 개도국의

WTO체제 참가를 위해서는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일본정부는 2000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무역장관회의에서 APEC지역 개도국의 WTO 의무행역량구축프로그램(전략적 APEC 계획)의 작성을 제안하여, 같은 해 APEC 정상회담에서 승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는 2002년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등 ASEAN 4개국을 대상으로 개발조사 'APEC지역 WTO 역량강화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한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일본정부가 이미 1980년대부터 민간기업의 무역활동과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비와 협력대상국 무역역량강화를 국가원조정책 가운데 전략적으로 도입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스웨덴과 같이 Aft에 대한 정책 및 전략문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개발원조 현장(ODA Charter: 2003)'에서 협력대상국에 대한 무역지원을 주요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¹⁶⁷⁾ 즉, 원조의 기본이념으로 개도국의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활동 상 중요한 경제사회인프라 정비와 정책수립, 제도정비, 인재양성협력을 증시할 것과 일본의 ODA와 무역보험 및 수출입금융 등의 공적자금(OOF), 민관협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ODA백서는 ODA와 OOF를 활용한 개도국 투자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인프라정비 및 제도구축, 인재육성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공적개발원조 현장'에서 표명한 정부차원의 Aft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WTO의 Aft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DDA)이후 기술협력의 계획실시를 위한 DDAGTF에 약 4억 8천만 엔을 출연하였다. 또한, 양자 간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능력강화를 위해 2006년도에는 약 1,600건의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대 아프리카 민간투자촉진 및 무역활성화 지원을 위해, 2004년 아시아아프리카 무역투자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한 뒤 매년 아시아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05년 코이즈미 총리(당시)가 '개발이니셔티브'를 통해 최빈국(LDCs) 산품에 대한 '무관세 및 수입대상 품목제한 금지(無稅無桎)'를 발표한 이래, 2007년 4월부터 대상품목이 관세베이스 약 98%, 최빈국(LDCs) 수입금액 베이스 약 99%까지 확대되었다.¹⁶⁸⁾ 결과 같은 해 4월-12월의 무관세 및 쿼터면제 농산물의 수

166) JICA国際協力総合研究所 (2003)

167) 「政府開発援助 (ODA) 大綱」 2003년 8월 29일 내각결정

168) 일본은 2007년 4월 최빈국 대상 무관세 및 쿼터면제 적용 대상품목을 7,758품목에서 8,859품목으로 확대하여,

입금액은 전 년도 동기간 대비 약 43.4%증가하였고, 전체 품목(원유 제외)에 있어서도 최빈국(LDCs) 수입은 전년도 대비 약 31.3% 증가하였다.¹⁶⁹⁾ 이러한 정부의 정책 가운데, 원조실시기관인 개발협력은행(JBIC)¹⁷⁰⁾은 신 프로그램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협조유자를 통해 아프리카 개발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JICA는 민간투자 및 무역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 개발원조와 함께 WTO체제 하의 무역자유화와 양자 간 및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 노동자의 입국허용을 포함한 경제파트너십협정(EPA)의 적극적인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¹⁷¹⁾ 한 예로, 2008년 5월의 제4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IV)와 7월에 개최된 도야코(洞爺湖) G8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대 아프리카 원조지원 확대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향성이 표명되었다. 구체적인 전략에는 제6차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포함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아프리카산품의 마케팅지원, 최빈국(LDCs) 산품에 대한 무관세화대, 기업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빈곤감소 노력촉구 등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대개도국 공적원조와 함께, '원조보다 무역(trade not aid)'을 요청하는 개도국의 니즈에 상응하기 위해 개도국과의 경제 및 무역통합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일본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선언되었던 품목수 목표 97%이상을 달성하였다.
169) 2008년 2월 27일-29일, 레소토(Lesotho)에서 개최된 WTO/LDCs 각료회의의 요코다(横田) 대사의 성명서 중
170) 2008년 10월 1일자로 JICA와 JBIC은 신JICA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171) 白井早由里 (2005)

〈Box 3.7〉 일본의 경제파트너십협정(EPA) 추진현황

개도국과의 EPA체결은 협력대상국의 무역활성화를 통한 국내 경제성장과 협력대상국 인재육성 및 경제제도정비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즉, EPA는 전통적인 무역에 투자규율,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인적이동, 정부조달, 지적재산권의 보호, 경쟁정책, 비즈니스 환경정비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일본과 협력대상국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¹⁷²⁾ 일본의 개도국과의 EPA체결을 위한 지원에는 크게 1) 인재양성, 지적재산권 보호 및 경쟁정책 분야의 국내법제도의 구축지원 등의 투자환경정비, 2) IT, 과학기술,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지원, 3) 관세 및 수출입 시의 수량제한 철폐가 있으며, 그 중 1)과 2)는 ODA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EPA사례를 살펴보자. 일본은 2006월 7월 말레이시아와 EPA를 체결하고, 농업수산업, 교육 및 인재육성, IT, 중소기업 등 7대 분야를 무역투자관련 역량강화 협력 분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인 학생이 일본 대학 및 대학원에 유학하여 일본의 이공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차관기금계획(HELPⅢ)'과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인재육성지원, 목재산업의 국가품질보증 시스템구축 지원을 ODA로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태국과 2007년 11월에 체결한 EPA가 있다. 일본은 농업수산업, 교육 및 인재육성, 비즈니스 환경개선 등 9분야를 협력 대상으로 선정하고 ODA를 활용하여 상기 분야의 인재육성 및 제도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태국의 우선 육성산업인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인재양성을 위해 일본과 태국의 정부와 기업이 연수실시체제 정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JICA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프로젝트 전체의 운영관리 및 기자재 제공, 정부자문을 위한 전문가파견 외에도 현지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태국 지도자육성과 기술검정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JICA의 무역지원정책

JICA의 AfT는 인프라정비, 법제도정비, 산업인재 육성지원을 통한 개도국의 민간투자 유도와 경제개발 촉진이 기본이며,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APEC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개발전략목표는 크게 1) 국제적인 틀 속에서 무역 및 투자를

172) 外務省 (2008)

촉진시킬 수 있는 대응력강화, 2) 무역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3)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진을 위한 역량강화로 나뉜다. 각각의 세부적인 중간목표는 표 3.9와 같다.

〈표 3.9〉 JICA의 무역 및 투자 개발전략목표

개발전략목표 1 국제적인 틀 속에서 무역 및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응력강화
■ 중간목표 1-1 무역 및 투자촉진을 위한 기초조건 정비 - 법제도 및 경제인프라, 국내산업의 사업환경 등을 정비함 ■ 중간목표 1-2 WTO 등의 국제적인 무역 및 투자규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WTO 등의 국제적인 규율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상정책 수립, 국내법제도 정비, WTO체제에 부합한 정책 및 제도운용, WTO의 진전에 따른 조직정비 및 인재육성
개발전략목표 2 무역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 중간목표 2-1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적절한 운용을 위한 체제정비 - 관세 및 수출입관련 제도개혁 지원 등 ■ 중간목표 2-2 민간부문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의 확충 - (1) 해외시장정보, 해외의 무역제도 및 절차, 상업습관 등의 정보제공, (2) 통상정책전반에 관한 정보제공, 수출진흥책 및 금융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 중간목표 2-3 활력 있는 민간부분 육성 - 중소기업 및 하청산업 육성, 농업개발의 틀 가운데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수출 경쟁력강화
개발전략목표 3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 중간목표 3-1 투자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적절한 운용을 위한 체제정비 ■ 중간목표 3-2 민간부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확충

【출처】 JICA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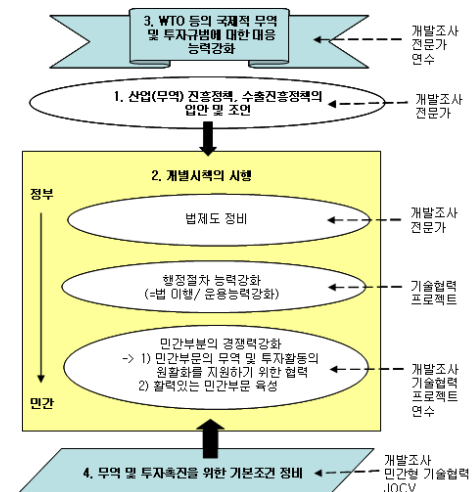
JICA의 기본적인 협력방침은 자유무역체제 등 국제적인 무역 및 투자의 흐름과 조화를 추구하며 협력함과 동시에,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단계 및 사회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니즈분석을 바탕으로 할 것 등을 표명하고 있다.¹⁷³⁾

173) JICA (2005)

국가개발전략, PRSP와의 정합성 확인

- 협력안전 형성 시, 협력대상국의 국가전략 가운데 무역 및 투자문제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가 개도국의 개발 및 빈곤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아래 협력계획을 수립함
- 협력대상국의 추진현황 및 발전단계에 입각한 지원
- 국제기관 등의 추진현황 및 지역협정 등의 내용과의 조화
- 안전형성 시 협력대상국이 차기 가맹예정 또는 가맹하고 있는 국제기관 및 조직, 지역협정 내용 등을 충분히 파악함
- 공여국 및 공여기관과의 원조협조
- 민간부분과의 파트너십 강화
- 민간기업 및 NGOs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고려한 협력내용을 검토
- 일본 국내 관련기관과의 조정
- 국내 JETRO 및 JODC 등 관련기관과의 현장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

〈그림 3.11〉 JICA의 무역 및 투자관련 협력사업 체제도



【출처】 JICA国際協力総合研修所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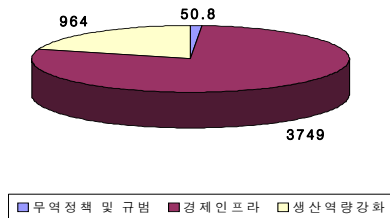
한편, 2008년도 들어서는 4월에 발표된 외무성의 '성장가속화를 위한 민관파트너십 방안' 및 5월에 개최된 '제4회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IV)'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개도국, JICA, 기업의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AfT 규모

JICA는 AfT의 규모에 대한 확실한 통계를 집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일본의 AfT 규모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 일본은 최대 AfT 공여국으로 WTO/OECD에 의하면 2002-2005년 평균 AfT는 약 47억 6,40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¹⁷⁴⁾ 일본의 전체 분야별 원조 중 AfT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이다. 반면, OECD의 또 다른 CRS의 추계에 의하면 무역관련 구조조정비용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포함한 일본의 AfT는 약 51억 1,156만 달러로 보고되고 있다.¹⁷⁵⁾ 미묘한 통계의 차이는 존재하나, 일본의 AfT에서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82%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WTO의 AfT 범주 중 무역관련 인프라(또는 경제인프라)는 약 38억 달러로 전체 AfT의 약 78.7%를 차지한다.

〈그림 3.12〉 일본의 AfT 규모 (2002-2005년 평균)

(단위: US 백만 달러, 2005년 불변가격)



* 주: 생산역량강화는 무역개발을 포함함

【출처】 WTO/OECD (2007b) 통계 참조 작성

174) WTO/OECD (2007b)

175) OECD CRS Profile for JAPAN (<http://www.oecd.org/dataoecd/18/30/39879546.pdf>) : 약정금액, 2004년 불변 가격

6.2. 일본의 대 아프리카 무역관련 원조사례

JICA의 대 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분야 협력은 '시장경제 시스템을 담당할 인재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연수생초청 및 전문가파견 등의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무역관련 지원 안건은 표 3.10과 같다.

〈표 3.10〉 JICA의 무역관련 지원 안건 (2008년 4월 현재)

국가	안건명	실시기간	Scheme	분야
수단	기초적 기술능력 및 직업훈련 강화 프로젝트	06.9-09.8	기술협력프로젝트	인재육성
가나	중소기업진흥 프로젝트	05.9-08.8	기술협력프로젝트	중소기업·영세산업육성
	관광진흥지원 프로젝트	06.2-09.1	기술협력프로젝트	관광진흥
	Upper West Region 종합 농촌개발계획 조사	08.4-10.3	개발조사	농촌개발
잠비아	남남협력을 통한 투자촉진 환경정비 프로젝트	06.7-09.3	기술협력프로젝트	무역투자촉진
말라위	일촌일품운동을 위한 제도구축과 인재육성 프로젝트	05.10-10.9	기술협력프로젝트	중소기업·영세산업육성
	지방전력화 추진 프로젝트	06.12-09.12	기술협력프로젝트	에너지 공급
	소규모 관개개발 기술협력 프로젝트	06.3-09.3	기술협력프로젝트	농촌개발
에티오피아	교량 유지관리능력 향상 프로젝트	07.1-11.1	기술협력프로젝트	경제인프라 정비
	농민지원체제 강화 계획	04.7-09.7	기술협력프로젝트	농업정책·제도
	관개농업 개선 계획	05.9-08.9	기술협력프로젝트	농촌개발
케냐	중소 수출업자를 위한 무역연수 프로젝트	06.9-09.8	기술협력프로젝트	무역투자촉진
	도로 유지관리 프로젝트	05.12-08.12	기술협력프로젝트	경제인프라 정비
우간다	직업훈련 지도원양성 프로젝트	07.6-10.8	기술협력프로젝트	인재육성
탄자니아	관개농업 기술보급 지원체제 강화계획	07.6-12.6	기술협력프로젝트	인재육성
르완다	Tumba 고등기술전문학교 강화지원 프로젝트	07.7-12.7	기술협력프로젝트	인재육성
케냐/탄자니아/우간다	동부 아프리카지역 세관능력 향상 프로젝트	07.9-09.8	기술협력프로젝트	경제인프라 정비
아프리카 전역	Nerica쌀 보급지원 광역 프로그램	05.10-10.3	기술협력프로젝트	농촌개발

【출처】 JICA (2008a)

이어 JICA의 기초인프라정비, 무역 및 투자환경정비, 민관협력(PPP) 농촌개발 지원현황을 통해 AfT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1 기초인프라정비

JICA는 국경을 초월한 인프라정비와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효율화의 지원이 아프리카 지역경제의 통합과 시장규모 확대,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의 걸림들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도로망정비와 전력정비 등을 중심으로 한 광역 인프라정비를 중시하고 있다. JICA는 국경을 초월한 인프라정비를 위해 2005년 외무성, JBIC,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NEPAD 국내지원 위원회'를 설립하여 아프리카 광역 인프라지원방침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JICA의 대표적인 광역 인프라정비 사업에는 "One Stop Border Post"가 있다. 본 사업은 JBIC이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조용자로 실시한 케냐탄자니아 간의 도로개량사업으로, "One Stop Border Post"를 건설하여 국경통과 절차를 일원화하는 종합통관시설 건설을 말한다. 여기서 JICA는 Post에 근무할 관세국 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을 담당하였다.

사례2 무역 및 투자환경정비

JICA는 대 아프리카 민간자금 유입의 활성화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투자환경정비와 현지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산업진흥지원,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촉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JICA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진흥과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농민수입 향상을 목표로 한 대표적인 프로젝트에는 '일촌일품(一村一品)운동'이 있다. 한 예로, JICA는 말라위 정부가 2003년 설립한 일촌일품 사무국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2005년부터 실시 중이다. 프로젝트는 말라위정부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구축, 이념보급을 위한 워크숍 개최, 상품그룹에 대한 기술지도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무역 및 투자환경정비의 사례에는 잠비아에서 말레이시아와 협력 하에 실시하고 있는 '남남협력을 통한 투자촉진환경정비 프로젝트'가 있다. JICA는 과거 마하티르정권 하에 산업진흥과 무역 및 투자활성화 전문가로 활약한 전 말레이시아 공업개발청 차관과 협력하여, 말레이시아의 경험을 활용한 잠비아 투자환경정비 정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사례3 민관협력(PPP)형의 농업개발

여기서는 JICA의 농업과 임업, 광업부문의 민관협력(PPP) 사례를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동반한 지속적인 협력대상국의 경제성장 지원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비료, 농약, 관개시설부족 등으로 낮은 생산성과 농민들의 저소득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JICA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개선을 목표로 종합적인 농업개발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NERICA(New Rice for Africa)쌀을 비롯한 다양한 모작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둘째, JICA의 '에티오피아 Belete-Gera 참가형 삼림관리계획 Phase 2 (2006-2010년)'는 민간기업의 생산지 환경보전 및 생산자의 인권과 적정임금 보장을 중시하는 '공급망(supply chain)'지원을 통해 프로젝트 종료 후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시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¹⁷⁶⁾ 본 사례는 국가지정 삼림보호지역 주민이 촌락마다 삼림관리조합(WaBuB)을 조직하여 지방정부와 삼림관리조약을 체결·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삼림관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현지 주민들은 삼림관리 참가의 동기가 되고 있는 '삼림 커피'의 친환경적인 재배와 품질관리를 지원받아, 국제 NGO인 'Rainforest Alliance(RA)'로부터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상품가치는 제고되고, 현지 수출업자와의 거래에서 시장가격 대비 15-25%의 가격을 책정 받았다. JICA는 본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2010년 이후에도 현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커피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한 결과, 가나의 시어버터(Shea butter)를 수입하여 비누를 제조하는 '(주)생활의 나무'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일환으로 협력을 표명하였다. WaBuB에서 생산된 커피는 2009년도부터 일본의 전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176) JICA (2008b)

이와 같은 민간기업의 물류·유통지원 협력 사례는, 정부원조기관의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현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시장경제에 참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가계소득 향상 및 경제성장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여국정부의 무역인프라 정비지원이 기업 활동과 신규투자 확대와 연계되어, 결과적으로 협력대상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항만 인프라정비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스미토모(住友)상사는 한국 경남기업, 캐나다 다이나텍(Dynatec)사, SNC-라발린(SNC-Lavalin)사와 공동으로 2007년 8월부터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을 전개 중이다.¹⁷⁷⁾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써 마다가스카르 수출량의 2.5배 증가와 만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4개 사는 지역사회와의 공존과 노동력 향상을 목표로 직업 훈련센터(Local Resource Development Initiative: LRDI)를 설립하여 현지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스미토모상사는 독자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업의 일환으로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스미토모 문고'를 설립하여 초등학교 교원육성을 위한 도서 및 컴퓨터기증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본 사업을 통한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경제효과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유통인프라부족이 광산개발사업의 과제도 대두되고 있다. 즉, 광물적재에 사용될 협소한 토아마시나(Toamasina)항의 수송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차원에서 항만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대규모정비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JICA, JBIC, 일본무역진흥회(JETRO)는 마다가스카르정부의 항만정비 요청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토아마시나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계획에 착수하였다. 마다가스카르 광물개발 민관협력(PPP) 사례는, 정부의 ODA를 활용한 협력대상국 무역인프라정비와 민간기업의 기업 활동 및 투자확대가 연계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177) JICA (2008b)

〈Box 3.8〉 TICAD IV와 '무역을 위한 원조'

'아프리카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란, 일본이 유엔(UNDP, OSAA), '아프리카를 위한 글로벌연합(GCA)', 세계은행 등과 공동개최하는 아프리카개발 국제회의이다. 1993년에 시작된 TICAD는 1998년의 TICAD II, 2001년의 TICAD 각료급회의, 2003년의 TICAD III, 2004년 11월의 'TICAD 아시아아프리카 무역투자회의', 2008년의 TICAD IV로 이어졌다.

2008년 5월28일-30일, 아프리카 53개국 중 40개국의 정상들이 참가한 TICAD IV에서 후쿠다 총리는 2012년까지 일본의 아프리카 원조를 2배로 확대할 것을 공약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경제성장 지원과 세계적인 식량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농업생산량 향상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 확인되었으며, 특히 무역촉진의 일환으로 최빈국(LDCs)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산품에 대해 무관세정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TICAD IV 요코하마 행동계획'은 아프리카의 성장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무역, 투자, 관광, 농업 및 농촌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무역 및 투자를 통한 아프리카 경제성장을 위해 1) 무역의 촉진 및 확대, 2) 외국인투자의 장려, 3) 민간부문개발 지원, 4) 관광촉진을 향후 5년간의 중점조치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1. 무역의 촉진 및 확대 - 아프리카의 모든 최빈국(LDCs)을 원산지로 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무관세 및 무쿼터 시장접근을 허용함 - 일본의 '무역을 위한 개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지원을 가속화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IT)'를 추진함. 또한 WTO 도하라운드 교섭의 조기 및 공평하고 균형 잡힌 타결을 위한 지원을 실시함 등
2. 외국인투자의 장려 - 법제도정비를 포함한 아프리카국가들의 투자환경개선 지원 - 아프리카 시장참입을 계획 중인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의 비즈니스 환경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를 설립함 - 민관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에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금융 및 무역투자보험 등의 공적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함 등
3. 민간부문개발 지원 - 아시아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산업개발전략 및 정책수립, 실시를 지원 - 중소기업 및 지역산업에 대한 개발지원 확대 등
4. 관광촉진 관광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이 치안, 관광객관리, 인프라, 환경 등의 제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등

【출처】일본 외무성 (2008.5.30) 'TICAD IV 요코하마 행동계획'

7. 기타 회원국

7.1. 노르웨이

노르웨이정부는 1999년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 지원을 위한 노르웨이 전략 (Strategy for Norwegian Support of Private Sector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을 통해 개도국의 무역을 포함한 민간부문개발에 관한 정부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바 있다.¹⁷⁸⁾ 본 전략은 개도국의 남남협력 및 지역 내 경제협력, 노르웨이에 대한 개도국의 무역확대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바, 2001년의 도하개발어젠다(DDA) 이전부터 노르웨이 정부가 개도국의 무역 및 민간부문개발을 개발협력정책 상 중시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어 노르웨이 외교부는 2007년 11월, 개도국의 국제무역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기여하겠다는 공약한 본격적인 AfT 전략인 '노르웨이의 무역을 위한 원조 행동계획(Aid for Trade: Norway's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¹⁷⁹⁾ 행동계획에는 AfT의 필요성 및 당면과제와 함께 노르웨이정부의 협력현황, 우선분야,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노르웨이의 AfT의 목적은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최빈국(LDCs)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높은 고용기회, 빈곤감소를 달성하여 현지국민 전체의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에 있다. 노르웨이는 OECD가 규정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 '무역관련 인프라정비', '생산역량강화')에 따른 AfT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WTO/OECD TCB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되는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TRTA/CB)'로, 주로 Norfund(Norwegian Investment Fund for Developing Countries)와 IF 등의 다자기금에 대한 자금공여를 통해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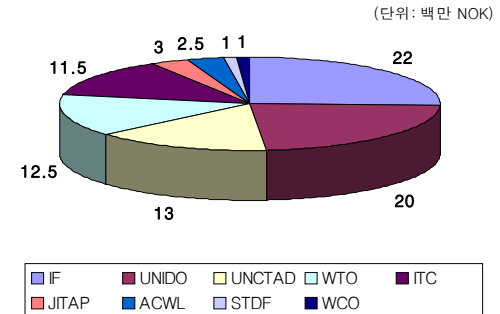
178) Ivar Foss, et al, (2004)

17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orway (2007)

: 본 행동계획은 2005년 9월 발표된 노르웨이의 외교정책선언인 'Soria Moria Declaration'을 바탕으로 책정되었다.

시되고 있다.

〈그림 3.13〉 노르웨이의 다자기금에 대한 자금기여 (2007년도)



【출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orway (2007)

한편 '무역관련 인프라정비'는 주로 세계은행 및 지역개발은행의 인프라구축 및 정비사업에 대한 출 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노르웨이는 UNIDO, UNCTAD, WTO, ITC, ACWL¹⁸⁰⁾ 등의 AfT 프로그램 및 현지정부의 주인의식과 공여기관 간의 원조조화를 중시한 IF/EIF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AfT 우선분야는 1) 선정(good governance), 2) 지역 간 무역, 3) 여성과 무역이다. 우선, 선정과 부패척결은 노르웨이 개발정책의 주요 요소이자, 무역진흥 및 투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정부시스템의 확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노르웨이 AfT의 우선분야가 되고 있다. 세부지원 영역에는 무역정책, 무역진흥, 무역규범,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무역(fair and responsible trade) 등이 있다. 두 번째, 관세 및 비관세장벽, 열악한 인프라 등의 무역장벽은 개도국에서 보다 심각하며 이는 지역 내 무역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80) Advisory Centre on WTO Law(세계통상기구 법률자문센터)

이에 노르웨이는 인프라정비 및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IDA 프로그램, 세계은행 및 지역 개발은행, ITC 등의 지역 내 무역활성화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는 AfT에 있어 개도국 여성들의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보장 등의 젠더의 관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정부는 2007년 3월 8일 '개발협력 상의 여성들의 권리 및 양성평등을 위한 노르웨이 행동계획(Norwegian Action Plan for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in Development Cooperation)'을 출범시키고, 젠더의 관점이 모든 AfT에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7.2. 덴마크

덴마크는 2002년 EU 의장국 당시, 국제무역의 글로벌화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을 강화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성공을 위해, '무역과 개발-빈곤에서 벗어나는 방법(Trade and Development-A way out of poverty)'이라는 AfT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2005년 6월에는 2002년도에 발표한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AfT 정책문서인 '무역, 성장과 개발(Trade, Growth and Development)'을 채택하였다.¹⁸¹⁾ 덴마크는 신규 전략을 통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중점지원 지역으로 선정하고 농업부문, 보다 나은 사업환경의 조성, 양성평등 증진, 환경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성을 표명하였다. 예를 들어, 국외적으로는 개도국의 이익을 반영한 투명하고 자유로운 무역체제 수립을, 국별 원조차원에서 협력대상국의 국제시장에 대한 접근성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신 AfT 전략은 덴마크의 WTO협상, EU와의 원조협조, 덴마크 개발원조 등에 있어 공통적인 가이드라인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중소기업(SMEs)을 포함한 기업환경 조성 등의 개도국 민간부분

18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05)

개발(PSD)은 개도국의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에 있어 중요한바, '기업개발(business development)'은 덴마크의 AfT 전략의 중점분야 중 하나이다.¹⁸²⁾ 2007년도에 말리에서의 '기업부문 프로그램(business sector programme)'이 승인된 이래, 탄자니아, 가나, 케냐, 베트남에서 약 11억 크로네(DKK) 이상의 무상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형태로는 품질보증 절차서 작성, 국제무역협상 참여, 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법률 및 규범 개정 등이 있다. 이러한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 중시의 개발협력은 덴마크기업과 개도국 기업의 장기간의 파트너십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통합 및 지역통합을 위한 국가 간 관세 및 쿼터제도의 철폐, 지역 내 공동 경제인프라 정비, 공통 무역행정절차 구축, 국가 간의 서비스무역의 장벽철폐 등 지역 간 무역통합에 대한 지원을 중시하고 있다. 주요 지원 지역기구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술기준 제정, 대외공통관세(common external tariffs), 세금 시스템의 일치, 무역관련 입법 등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의 AfT는 노르웨이와 같이 아프리카의 열악한 거버넌스가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 규정하고 2003년 이래 부패척결 행동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의 다자기구를 통한 AfT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덴마크정부는 기타 공여국과 같이 ITC, IF, JITAP, '규범 및 무역개발기금(Standards and Trade Development Facility: STDF)'¹⁸³⁾, DDAGTF 등의 다자기구의 AfT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는 북유럽국가들(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공동으로 무역관련 기술협력 프로그램인 '북유럽 아프리카 이니셔티브(Nordic Africa Initiative)'를 출범시키고, 아프리카의 국가들과 WTO 회원국들의 정책대화를 통해 아프리카의 이익이 반영된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8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0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08)

183) STDF는 유엔 FAO, 국제수역사무국(OIE),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WHO), WTO 등에 의해 설립된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이다. STDF의 주요 목적은 개도국이 국제 위생 및 식물위생(SPS)규범을 분석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7.3. 캐나다¹⁸⁴⁾

캐나다의 AfT의 목적은 개도국 및 최빈국(LDCs)의 전면적으로 글로벌 무역시스템에 참여하고 무역을 빈곤감소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¹⁸⁵⁾ 특히, 캐나다는 현지 민간부문개발(PSD)을 AfT의 최우선 분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CIDA가 2003년 7월에 발표한 '민간부문개발정책(Private Sector Development Policy)'은 이러한 캐나다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주요 활동에는 1) 무역정책을 분석, 책정, 협상, 이행할 수 있는 역량강화, 2) WTO 및 국제금융기관, 지역무역기구 등에 대한 참가지원, 안정적인 무역 및 공급망(supply chain) 확보, 3) 현지 무역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4) 관세행정 및 식물위생 규범, 라벨링(labelling) 요구사항, 품질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 있다.

캐나다 AfT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상의 무역관련 원조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젠더의 관점을 항상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⁸⁶⁾ 한 예로, 개도국 농촌지역 기업가(entrepreneurs)의 무역협상 참여와 이행, 현지시장 및 지역, 국제시장에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남성뿐 아니라 여성을 주요 프로그램 대상그룹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최대 무역관련 인프라지원 대상지역은 아프리카로 전체 무역관련 인프라지원 실적 중 약 절반을 차지한다. 아프리카 15개국의 기업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표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는 '아프리카 무역역량 강화 프로그램(Program for Building African Capacity for Trade: PACT)'이 있다. 또한, 캐나다정부는 2005년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약 2억 달러의 아프리카 투자를 목적으로 한 '캐나다 아프리카기금(Canada Fund for Africa: CIFA)'을 설립하고 법률 및 규범개정, 금융기관 및 민간부문 역량강화 등 아프리카지역의 투자환경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184) 캐나다는 2003년 1월부터 무관세품목을 추가하여 유제품 및 계육, 계란 이외의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조치를 취하고 있다.

185) WTO/OECD (2007a)

186) DFID (2005)

7.4. 핀란드

핀란드는 2006년 5월 채택된 AfT 정책문서인 '핀란드 개발협력의 개발도상국 무역역량 지원전략(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Trade Capacity in Finnish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AfT의 증액과 주류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하였다.¹⁸⁷⁾ 본 정책문서에는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TRTA/CB)의 증액과 AfT를 핀란드의 다자 및 양자원조에 주류화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명시되어 있다.

핀란드는 2007년 10월에 채택된 'EU 무역을 위한 원조(AfT) 전략'을 바탕으로 '핀란드 무역을 위한 원조 행동계획 2008-2011(Finland's Aid for Trade Action Plan 2008-2011)'을 수립하였다.¹⁸⁸⁾ 본 행동계획은 '핀란드 개발정책 프로그램(Finland's Development Policy Programme)'을 바탕으로 핀란드의 AfT를 1) 주제(themes), 2) 부문(sectors), 3) 주요 협력대상 지역(geographical focus areas), 4) 원조범주(aid categories)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핀란드의 모든 AfT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는 상기의 네 가지 범주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¹⁸⁹⁾

우선 본 행동계획의 주제에는 1) 민간부문개발, 2) 정보화 사회(ICT의 활용), 3) 환경 및 기후변화, 4) 크로스커팅 주제(젠더, 취약자의 권리 등)가 있으며, 이상의 네 가지 주제는 AfT를 실시함에 있어 교차적으로 적용, 고려되고 있다. 이어 핀란드의 주요 AfT 분야에는 농업과 임업, 에너지가 있다. AfT의 범주는 1) 무역정책 및 규범, 2) 무역개발, 3) 경제인프라, 4) 생산역량, 5) 조정비용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WTO 및 OECD가 정의하는 AfT의 분류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주요 AfT 대상국은 덴마크의 장기협력 대상국인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잠비아, 탄자니아, 케냐, 니카라과, 네팔, 베트남이다. 주요 AfT 대상국에서 실시된 대표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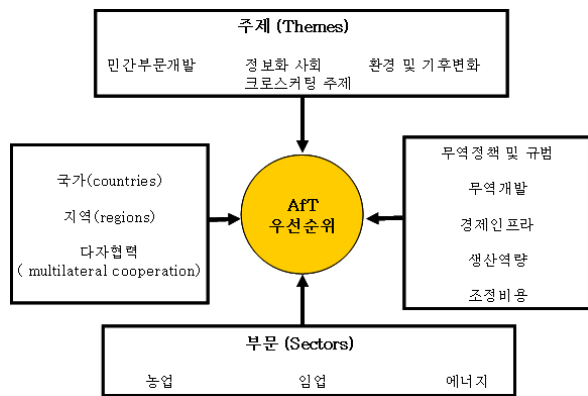
187) WTO/OECD (2007c)

18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 (2008)

189) 예를 들어 핀란드의 장기 협력대상국의(주요 협력대상 지역) 농업부문(부문) 생산역량강화를 위한(원조범주) 민간 부문개발 프로그램(주제) 활동 등이 있으나, 주제와 부문은 엄밀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프로젝트에는 잠비아에서 실시된 '민간부문개발 및 개혁 프로그램(Private Sector Development Reform Programme: PSDRP)'이 있다. 본 프로젝트는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개도국 행정기관의 역량강화, 투명하고 비관료적인 법률개정, 인프라정비를 위한 민관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잠비아 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무역계약 확대, 정부의 중소기업(SMEs)지원구조 강화 등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그림 3.14〉 핀란드의 '무역을 위한 원조' 행동계획(2008-2011)



【출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 (2008)

한편, 핀란드는 무역지원 관련 다자기구에 대한 지원을 2006년의 3백만 유로 수준에서 2010년까지 천만 유로 규모로 확대하기로 표명하고 IF/EIF, DDAGTF, AITIC, UNCTAD 및 ITC의 민간부문개발 및 수출확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타, 아프리카지역의 인프라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대한 출연을 실시하고 있다.

8. 선진공여국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이상 우리는 각 선진공여국이 MDGs의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빈곤감소의 필수 요건으로 간주하고, AFT의 범위 및 형태는 국가에 따라 다르나 개도국의 다자무역시스템 참여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OECD/DAC 회원국들은 개도국이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 가운데의 무역행 및 권리행사를 구사하고, 경제자유화의 혜택을 누림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개발협력정책 가운데 무역관련 지원, 즉 AFT를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선진공여국 중 AFT 전략 및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있는 나라에는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이 있으며, 그 외의 공여국은 구체적인 AFT관련 전략 및 행동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포괄적인 개발협력정책 및 전략 가운데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소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무역 및 투자관련 지원을 중점 지원분야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EU회원국의 경우, 각국의 무역 및 투자관련 전략을 'EU 무역을 위한 원조(AFT) 전략'에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선진공여국들은 구체적인 AFT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앞서, 공통적으로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바탕으로 한 빈곤감소전략(PRSs) 및 국가개발정책 가운데 무역관련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대화 및 자문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AFT 프로그램의 이행에 있어서는 협력대상국의 절차 및 시스템의 활용을 중시하고 있다.

셋째, 덴마크, 캐나다 등의 대부분의 선진공여국은 AFT의 주요 분야로 '무역개발(trade development)', 즉 협력대상국의 민간부문개발(PSD)을 중요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공여국은 무역진흥 및 투자유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개도국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사업환경 조성(enabling environment) 등 개도국의

중소기업(SMEs), 수출진흥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부문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 일본 및 스웨덴 등은 협력대상국 정부가 자주적으로 다각적 통상규범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지원, 즉 WTO/OECD의 AfT 정의 중 '무역규범 및 정책(trade regulations and policy)' 분야를 비교적 중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분야로는 WTO 등 다자통상교섭을 담당하는 정부부문의 인재육성, 시장친화적이고 다자통상규범에 입각한 정책 및 제도의 도입과 운영 등이 있다.

넷째, 선진공여국들은 원조조화(aid harmonization)를 통한 원조의 효과성제고를 위해 IF/EIF, JITAP, DDAGTF 등 다양한 다자기구의 AfT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각 국의 양자간 AfT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아시아 중심)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공여국은 최빈국(LDCs) 중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AfT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구별된 특징을 가지기도 한다.

첫째, 각 회원국의 AfT를 의미하는 용어를 살펴보면, EC 및 스웨덴은 '무역관련 지원(trade-related assistance: TRA)',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미국의 경우 '무역역량강화(trade capacity building: TCB)', 일본은 '무역 및 투자관련 지원 (Trade and Investment-related Assistance)'을 각각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광의의 AfT인 무역활성화로 인한 협력대상국의 조정비용(adjustment cost)까지 지원하고 있는 나라에는 영국과 스웨덴이 있으며, 주로 예산지원(budget support)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자 간 원조보다 다자기구에 대한 지원(Global Programme)을 통한 AfT의 비중이 많은 국가에는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가 있다.

제4장 KOICA의 대 아프리카 무역을 위한 원조(AfT) 방안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출범을 위해 개도국들이 무역개혁에 동의한 이래, 선진공여국들은 무역, 개발, 빈곤완화를 위한 원조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WTO협상에 있어 개도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으나, 세계경제 13위에 걸 맞는 선진국수준의 무역개방이 요구되었을 때 다른 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기타 선진국이 직면한 최빈국(LDCs)의 농산물 수출확대와 관련한 국내의 농업보조금 삭감 문제도 간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2005년 제6차 WTO 홍콩각료회의의 결의를 바탕으로 우리정부도 2008년부터 최빈국(LDCs)에 대한 무관세 및 무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바, 최빈국(LDCs)의 본격적인 무역확대에 앞서 공정한 무역(fair trade)관계의 수립을 포함한 개발문제에 새롭게 착목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 즉, 우리는 개도국 지원사업 중 개도국의 시장접근기회 확대를 위한 공급측면의 역량강화 등 무역관련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규모를 확대하고 새롭게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¹⁹⁰⁾ 무엇보다 우리정부는 2010년 OECD/DAC가입 후, DAC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무역을 위한 원조(AfT)'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제4장에서는 우리정부의 AfT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살펴보고, 무상원조 실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 아프리카 지원현황 및 AfT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 아프리

190) 우리정부는 2006년 UNCTAD IF에 20만 달러, WTO/DDA Global Trust Fund 140만 달러를 제공한 바 있으며, 2007년 9월 25일에 스톡홀름 공약 회의에서 공약한 EIF 신탁기금(Trust Fund)에 2년간(07~08) 100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이다.

카 무역지원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KOICA가 향후 지향하여야 할 AfT를 통한 대 아프리카 원조의 방향성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앞서 연구분석한 선진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제반 AfT정책을 참고모델로 삼고자 한다.

1. 우리정부의 '무역을 위한 원조' 방침

과연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에서 AfT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어떻게 표명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정부가 2006년에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Korea's Initiative for Africa's Development)'와 2007년 11월에 참가한 제1차 '무역을 위한 원조 국제평가(Global Aid for Trade Review)'회의¹⁹¹⁾의 발언문, WTO/OECD가 각 공여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Aid for Trade At a Glance 2007: 1st Global Review』를 통해 확인해 보자.

우선 우리정부는 2006년 3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 아프리카 ODA를 2008년까지 세 배로 확대하고, 아프리카의 질병퇴치, 기초교육 및 직업교육,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수산 분야의 지원 확대 등 10가지 이니셔티브를 공표하였다. 특히, 제9조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한-아프리카 간 통상투자를 확대할 것을 표명한바 있다.¹⁹²⁾ 구체적인 방안에는 최빈국(LDCs)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수입품목의 확대, '통합체제(IF)' 기어확대를 통한 최빈국 무역역량배양 지원확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통상투자사절단 파견 등 기업인간의 교류 확대지원 등이 있다.

이어 2007년 제1차 '무역을 위한 원조 국제평가' 회의에서 발표한 우리정부의 선언문('Stat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은 우리정부가 개도국에 대한 AfT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아직 한정적이나 AfT를 위해 우리의 개

발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밝히고 있다.¹⁹³⁾ 마지막으로 WTO/OECD의 설문조사에는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동인을 적합한 무역 및 경제정책에 있다 보고, AfT 이니셔티브의 확대를 통해 최빈국(LDCs)의 개방무역체제 참여를 통한 혜택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있다.¹⁹⁴⁾ 아울러 한국의 무역관련 지원은 주로 역량강화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의 무역관련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무역정책이 개도국의 국가개발전략에 주류화(mainstreaming)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2008년 10월 24-25일 베이징에서 아시아 16개 국가와 유럽 27개 국가 정상들, EU 집행위원장, ASEAN 사무총장의 참가 하에 제7차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담의 결과 발표된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제7차 ASEM 정상선언은 경제발전, 사회진보, 환경 보호는 지속가능 발전의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세 개의 기둥임을 재인식되었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IADGs)와 특히 유엔 MDGs,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사회적 유대는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는데 있어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슈들이 강조되었다. 특히, MDGs의 달성과 관련하여 '농업 생산, 무역 증진 및 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의 증대'가 요구되었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과 곡물생산 증가와 시장을 왜곡하는 농업보조금의 축소,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수준 증대, 민간 및 기업부분의 노력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ASEM 정상선언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AfT의 필요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합의에 따를 것을 동의하고 있다(제37조).

결론적으로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AfT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AfT에 대한 의지 및 공약은 우리의 대외무상원조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으며, 원조전략과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일까. 이하 제2절에서 KOICA의 대 아프리카 무상원조와 무역관련 원조현황을 통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91) WTO, 세계은행, IMF, UNCTAD, UNDP의 정상과 각국의 무역재정부 장관의 참가 아래 첫 번째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어, 각 공여국 및 다자기구가 실시하고 있는 AfT 및 실시계획 중인 AfT에 대한 실행원칙이 제시되었다.

192) 2006년 3월 10일, 노무현 대통령 발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중

193)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작성 및 발표 'Stat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7.11.21)

194) WTO/OECD (2007b)

〈Box 4.1〉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컨퍼런스(KOAFEC)'와 유상원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컨퍼런스(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KOAFEC)'는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공동개최하는 한-아프리카간 경제협력 협의체로 2006년 4월 아프리카 15개국 경제장관의 참석 하에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¹⁹⁵⁾ 동 회의의 결과 발표된 후속 성명서는 KOAFEC의 격년 정례화, KOAFEC 자문단 구성과 함께, 4대 중점 협력분야에 대한 실천계획(인프라건설, IT협력, 한국경제개발경험 전수, 인력개발)의 수립이 공표되었다. 이어 2007년 5월에 발표된 4대 중점 협력분야 실천계획에서는 수은 금융, EDCF, AfDB와의 공동금융(Co-finance)을 활용한 유상지원뿐 아니라, 권역별 현지 워크숍, 초청연수, 정보격차해소사업, 유망사업발굴을 위한 F/S지원 등의 무상지원 계획도 발표되었다. 결과, 같은 해 10월과 11월 아프리카의 북부 및 남부 지역에서 한국개발경험 전수를 위한 권역별 현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특히, KOAFEC의 한국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효과적인 개발계획전략 수립역량강화 및 빈곤감소, 경제성장, 경제개발정책 전문가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국제사회의 A/T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ODA의 구조적 시행체제의 취약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KOICA의 연수생초청 및 전문가파견사업 등의 무상원조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2008년 10월 27-30일에 '한국과 아프리카간 경제협력의 시너지효과 제고'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차 KOAFEC 회의'에서는 AfDB 총재,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 의장을 비롯해 나이지리아 석유부 장관 등 21개국 22명의 장관급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AfDB에 설치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KOAFEC Trust Fund)'에 2000만 달러를 추가로 출연하기로 결정하였고, 아프리카 인프라건설 및 자원개발, IT기술전파, 교육사업, 한국경제개발 경험 공유, 농업발전, 녹색성장의 6대 협력사업이 발표되어 향후 한국과 아프리카 간에 7억 6천만 달러 규모의 29개 협력사업이 201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KOAFEC Action Plan 2009-2010*).¹⁹⁶⁾ 특히, 아프리카 인프라건설 및 빈곤퇴치 지원을 위해 AfDB와 2009-2011년간 체결한 2억 달러 규모의 'ECDF 협조용자 MOU'와 탄자니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와의 중장기(2008-2012년) EDCF 자금지원을 약정하는 총 4억 8천만 달러 규모의 MOU 체결하였다. 이상의 흐름을 볼 때, 아프리카의 경제개발 및 무역활성화에 대한 우리정부의 무상원조의 방향성과 KOICA의 역할을 새롭게 확립해야 하는 시기에 서 있음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2. KOICA의 대 아프리카 지원과 무역관련 원조현황

최빈국(LDCs)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은 외교부, 기획재정부 및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레벨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바, 본론에서는 KOICA의 대 아프리카 지원현황과 함께 우리정부의 무역관련 지원 실적을 살펴보고, 나아가 KOICA의 분야별 및 사업형태별 지원 가운데 최빈국 무역역량배양사업이 어떻게 실시되어 왔는지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2.1. KOICA의 대 아프리카 지원정책 및 실적

KOICA의 현행 협력대상국 56개국(중점 19, 일반 37) 중 아프리카 국가는 18개국(중점 5, 일반 13)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¹⁹⁷⁾ 대 아프리카 무상원조는 2006년 정부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07년 9월 도입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연간 2천만 달러 규모)'을 아프리카 최빈국(LDCs)에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KOICA의 2007년도 대 아프리카 원조현황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47개국을 대상으로 약 4천 2백만 달러(75개 사업)가 집행되어 전년도 대비 약 106% 증가하였다. KOICA의 2007년도 총 사업지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7%였다. 이러한 대 아프리카 지원은 MDGs의 달성과 관련하여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2008년도의 아프리카 원조집행 비율은 전체 협력사업비의 약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5) KOAFEC 웹사이트 (<http://www.koafec.org/en/main.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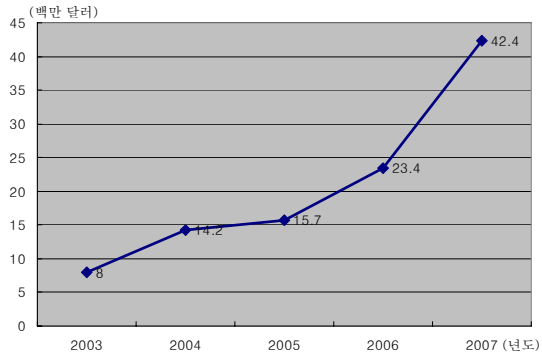
196) 대한민국 정책포털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_pageLabel=newshome2_book)

197) 중점협력대상국: 나이지리아, 세네갈, 이집트,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일반협력대상국: 수단, 모로코, 알제리,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가나, 케냐, 콩고, 마다가스카르

〈그림 4.1〉 KOICA의 대 아프리카 원조추이 (2003-2007년)



【출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통계시스템 활용 작성

이어 분야별 실적을 살펴보면, 행정제도분야가 약 854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의료(약 826만 달러), 교육분야(약 701만 달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표 4.1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프라구축 지원의 비율(아프리카 전체 분야별 지원의 약 6.1%)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KOICA 지역별/분야별 실적 총괄표 (2007년도)

(단위: 천 달러)

사업/분야	계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지역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	재난구호
총계	270,217 (100%)	44,130	45,768	50,863	16,232	29,744	32,636	41,764	9,080
아태	88,384 (32.7%)	17,002	14,865	14,085	7,695	9,860	13,000	6,821	5,055

(표 계속)〈표 4.1〉 KOICA 지역별/분야별 실적 총괄표 (2007년도)

사업/분야	계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지역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	재난구호
중동	58,475 (21.6%)	14,491	12,604	16,069	246	1,337	13,192	528	8
아프리카	42,368 (15.7%)	7,014	8,215	8,543	4,919	6,516	2,567	3,577	1,016
중남미	35,639 (13.2%)	2,743	6,429	6,260	1,967	10,597	2,814	3,345	1,485
동구 및 CIS	7,523 (2.8%)	2,576	635	1,408	15	1,435	1,035	409	9
국제기구	11,041 (4.1%)	304	3018	4,497	1392	0	27	299	1,505
기타	26,787 (9.9%)	0	0	0	0	0	0	26,784	3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08)

한편, 아프리카 지역 상위 5대 협력대상국은 이집트로 5백만 달러 이상(아프리카 지역 총 사업비 대비 약 12.8%)이 집행되었고,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모로코, 알제리가 그 뒤를 잇고 있다.(표 4.2) 이를 통해, 대부분의 선진공여국이 대다수의 최빈국(LDCs)이 위치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북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⁸⁾

198) 사하라 이북 아프리카는 인적교류, 경제협력 및 석유·광물 등 자원협력을 고려하여, 신홍시장 개척을 위해 프로젝트형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 및 산업인프라 분야로 지원이 확대되어 왔다.

〈표 4.2〉 아프리카 지역 상위 5대 협력대상국 (2007년도)

순위	국가명	금액(천 달러)	비중(%)	
			KOICA 총 사업비 대비 (270,217)	아프리카지역 총 사업비 대비 (42,346)
2	탄자니아	4,678	1.7	11.0
3	에티오피아	3,183	1.2	7.5
4	모로코	2,780	1.0	6.6
5	알제리	2,546	0.9	6.0
계		18,608	6.9	43.9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08)

2.2. 우리정부의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TRTA/CB)' 실적

우리정부가 WTO/OECD에 공식보고 하고 있는 연간 AfT 규모는 2005년도 1,630만 달러, 2004년도 100만 달러, 2003년 99만 6천 달러, 2002년 88만 5천 달러였다.¹⁹⁹⁾ 대상지역은 주로 아시아로 양자원조 외에 IF/EIF 및 WTO글로벌 신탁기금(trust fund) 등에 대한 다자원조도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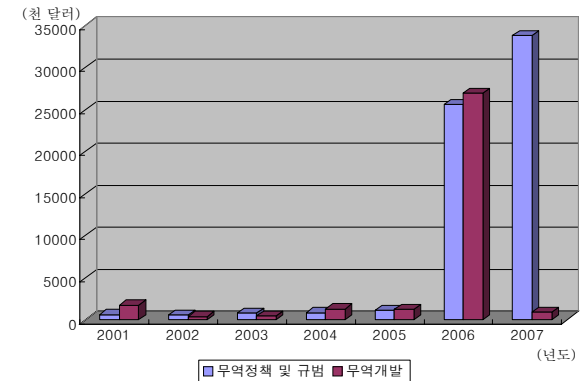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의 또 다른 공식적인 AfT 실적은 현재 정부가 매년 WTO/OECD의 TCB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하고 있는 '무역정책 및 규범(trade policy and regulation)' 및 '무역개발(trade development)'지원 실적을 통해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TRTA/CB)'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TCB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2006년도의 '무역정책 및 규범'과 '무역개발'의 지원규모는 2,568만 달러와 2,700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각 22배와 20배 급증하였다.²⁰⁰⁾ 2006년도 우리나라 총 ODA 4억 4,700만 달러 중 TRTA/CB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6%였다.

199) WTO/OECD (2007b)

: 2002~2004년의 금액은 KOICA의 지원실적이며, 2005년도는 AfT와 관련된 KOICA 프로그램 및 기타 정부 프로그램의 지원실적을 포함한 금액이다.

200) http://tcdb.wto.org/entity_project.aspx?EntityID=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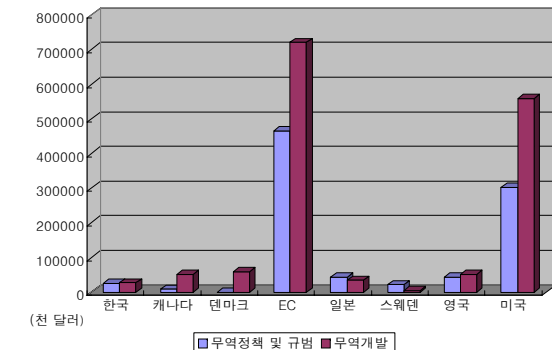
〈그림 4.2〉 우리나라의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TRTA/CB)' 추이(2001~2007)



* 주: 2007년도 실적은 부분적 추정치(partial data)임

【출처】 WTO/OECD TCB database 활용 작성 (<http://tcdb.wto.org>)

〈그림 4.3〉 OECD/DAC 주요 회원국과의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TRTA/CB)'의 규모 비교 (2006년도)



【출처】 WTO/OECD TCB database 활용 작성 (<http://tcdb.wto.org>)

2.3. KOICA의 무역관련 원조전략 및 분야별 실적

2.3에서는 KOICA의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가운데, AFT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 KOICA의 분야별 사업가운데 차지하는 AFT 사업의 비중 및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KOICA의 AFT 현황을 평가하고자 한다.

KOICA 중기전략과 AFT

KOICA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2008~2010)'의 사업목표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²⁰¹⁾

-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 지원
- UN 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노력에 적극 참여
-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 강화
-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ODA규모 및 무상원조 비중확대,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른 지원국가 및 분야선정, 협력대상국의 니즈에 따른 성과중심적 원조시행, 우리의 개발 경험 전수 프로그램 발전, 민간참여 및 비 구속성 원조확대 등이 명시되어 있다.

지역별 추진전략 중 아프리카의 경우, 중기기간 중에는 무상원조의 20%선을 유지할 것과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세네갈 등 최빈국(LDCs)에 대한 지원 및 아프리카 국내초청연수(중기기간 중 총 3천여 명), 국제기구를 통한 아프리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점지원 분야로는 보건의료 및 교육, 농촌개발 분야를 책정하고 있어 농촌개발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타 지역별 추진전략과 마찬가지로 협력대상국의 무역 및 수출확대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빈곤감소에 대한 특정한 정책 및 전략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분야별 추진전략 중 AFT와 관련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분야에

는 행정제도와 지역개발이 있다. 우선, 행정제도분야에서는 지원방향 및 추진전략의 일부로 '중소기업육성, 무역증진 전략지원 등 산업발전을 위한 역량개발' 및 '민간경제활성화' 등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제도분야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포괄적인 KOICA의 AFT의 상위목표에서 도출된 지원방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선진공여국과 같이 개도국의 무역활성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를 위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국가원조정책이 KOICA 원조의 전체적인 사업목표 가운데 크로스커팅 이슈와 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제도의 지역별 중점지원 사업에서도 아시아, 중남미, 동구/CIS의 경우 수출진흥(trade facilitation) 및 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한 지원이 언급되어 있으나 아프리카는 인적자원 개발과 부패방지가 중점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우리는 2.1에서 KOICA의 2007년도의 대 아프리카 분야별 지원 실적 중 행정제도 분야의 비중이 가장 많다(약 826만 달러)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중기전략에서 제시하는 중소기업 및 민간경제활성화의 비중이 어느 정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행정제도의 지역별 중점지원 사업에서도 아시아,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적극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01) 한국국제협력단 (2007b)

〈Box 4.2〉 KOICA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2008~2010)' 중 행정제도분야의 무역관련 지원 전략

다. 추진전략

----- (중략) -----

(4) 민간경제 활성화(Goal4)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무역 활성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Target 10: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의 다양화와 고용창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제 진전화에 기여

□ Target 11: 국제무역 활성화 기반 구축

- 세계경제화에서의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금융 제도 및 관련기관 설립 지원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 Target 12: 수출진흥

- 수출진흥정책을 수립하고 경제특구, 수출자유지대 및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한 수출 증대

라. 중기계획기간 중 추진예정사업(안)

----- (중략) -----

□ 목표 4: 민간경제활성화

- 아제르바이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전략수립('08-'09/100만 달러)
- 아제르바이잔: 경제특별구역 및 산업단지 개발('08/100만 달러)
- 카자흐스탄: 경제특구 활성화 및 수출지원 역량강화('07-'08/135만 달러)
- 카자흐스탄: WTO 가입준비 및 경제영향 분석('08-'10/90만 달러)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07b)

이어 지역개발분야의 두 번째 추진전략(Goal2)에 '농수산물 시장접근성 개선'지원이 있다. 이는 개도국 대부분의 농수산물의 질이 낮아 자국 및 국제시장에서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이 미흡한바, 기존의 생산중심에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상업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전략이다. 구체적인 타겟은 다음과 같다.

Target 4: 수확 후 관리 능력개선

- 농수산물 집하, 보관, 가공시설 및 기자재 지원, 관련 기술인력 양성
- 가공품의 품질과 신선도 유지 기준 및 검사 체제 지원
- 유통관련 법·제도 정비, 유통시설·설비 관리 시스템 구축
- 농수산물 가격안정 시스템 구축
- 유통정보시스템 정비 및 유통 관련분야 전문인력 양성

Target 5: 농수산물 수출 역량강화

- 수출진흥정책 및 농수산업 진흥정책 지원
- 수출관련 법·제도 정비, 금융기관 및 제도 정비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준 및 수출품 표준화 지원
- 수출망 강화 및 마케팅 능력 향상
- 무역진흥기관 기능 강화 및 인력양성

KOICA의 분야별 AfT 현황

현재 KOICA는 DFID의 '공동 무역정책 유닛(Joint Trade Policy Unit)', GTZ의 '경제개발 및 고용(Economic Development and Employment)'팀, Norad의 '민간 부문개발부(Private Sector Development Department)', JICA의 산업개발부와 경제기반개발부, USAID의 '경제성장 및 농업, 무역국(Bureau for Economic Growth, Agriculture and Trade)'과 같이 AfT관련 정책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부서는 없다. 반면, KOICA의 AfT는 협력대상국의 요청 및 국별계획을 바탕으로 행정제도, 지역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등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각 섹터별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 각 분야별 사업 등 Aft관련 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나아가 무역관련 사업가운데 대 아프리카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KOICA의 2007년도 사업을 통해 그 추진현황을 살펴보고록 하겠다.

가. 행정제도

KOICA는 경제개발 추진능력 강화, 행정 및 혁신역량 배양, 법제제 정비 및 사회안정, 민간경제활성화 등을 거버넌스 관련 분야의 사업을 통해 개도국 정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 중 개도국의 경제개발 추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는 경제개발전략 수립능력 배양, 시장경제정책 지원, 산업개발정책 수립 및 이행능력제고 등이 있으며,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는 국제무역 활성화 기반구축, 수출진흥 등이 있다.²⁰²⁾ 이러한 정부의 경제개발 역량강화 지원은 WTO/OECD가 정의하는 Aft 중 '무역정책 및 규범(trade policy and regulations)'과 '무역개발(trade development)'의 범주에 해당된다. 2007년도의 대표적인 사업에는 '캄보디아 증권시장 개설 및 운영지원 사업('07-'09/1,800천 달러)', '알제리 국가산업정책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사업('07-'08/1,000천 달러)', '카자흐스탄 경제특구 활성화 및 수출지원 역량강화사업('07-'08/1,350천불)' 등이 있다. 대부분의 행정제도 사업은 전문가파견 및 보고서작성, 연수생초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KOICA 통계를 통해 2007년도 행정제도팀의 Aft관련 사업(신규 포함)을 분석해 본 결과(표 4.3), 개발조사 3건, 연수사업 70건, 전문가파견 3건, 해외봉사단 파견 5건으로 총 81건(총 241건 중 약 33.6%)의 Aft사업이 실시되었다. 그 중 아프리카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18건으로 전체 Aft사업의 약 22.2%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Aft사업은 아시아를 중심으로(약 35.8%) 실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업유형별로는 연수생초청의 형태가 전체 Aft의 86.4%로 가장 많았고, 행정제도분야의 연수생초청사업 과정 중 Aft관련 과정의 비율은 약 46%였다(70과정).

202) 한국국제협력단 (2008)

〈표 4.3〉 행정제도분야의 '무역'을 위한 원조(Aft)'관련 사업현황 (2007년도)

	프로젝트 (건)	물자지원 (건)	개발조사 (건)	연수생초청 (과정)	전문가 (명)	해외봉사단 (명)	합계	전체 합계 중 %
아시아	- (4)	- (3)	1 (1)	25 (49)	1 (3)	2 (11)	29 (71)	35.8
중동	- (1)	- (3)	- (-)	13 (25)	- (-)	- (-)	13 (29)	16.1
중남미	- (1)	- (14)	- (1)	7 (20)	- (1)	- (3)	7 (40)	8.6
동구CIS	- (-)	- (1)	1 (1)	8 (21)	2 (2)	2 (3)	13 (28)	16.1
아프리카	- (-)	- (12)	1 (3)	16 (33)	- (1)	1 (3)	18 (52)	22.2
오세아니아	- (-)	- (5)	- (-)	1 (4)	- (-)	- (-)	1 (9)	1.2
국제기구	- (-)	- (12)	- (-)	- (-)	- (-)	- (-)	- (12)	-
합계	0 (6)	0 (50)	3 (6)	70 (152)	3 (7)	5 (20)	81 (241)	100
전체 합계 중 %	-	-	3.7	86.4	3.7	6.2	100	

* 주1: 단, 연수생초청의 Aft 실적은 국내 대학원에서의 학위/연수과정을 포함한 것임

주2: 각 사업유형의 () 안의 숫자는 Aft를 포함한 세부실적의 총수를 의미함

【출처】한국국제협력단(KOICA) 통계시스템 분석 작성

특히, 아프리카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Aft 18건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원이 '무역정책 및 규범'과 '무역개발' 분야에서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4). 이러한 지원은 아프리카국가의 무역활성화관련 지원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KOICA의 중기전략에서는 행정제도분야의 아프리카 중점지원사업이 인적자원 개발과 부패방지가 중점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바, 현행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으로 보아 민간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아프리카의 중점지원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 행정제도분야의 대 아프리카 AfT 세부현황 (2007년도)

무역정책 및 규범		무역개발	
세부내역	국가	세부내역	국가
국가 산업정책전략 및 이행수립사업(개)	알제리	UNDP 아프리카 무역투자진흥 (영어) 13명(연)	말라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알제리 공무원 초청연수 4차-체제전환경제의 금융시장 22명(연)	알제리	UNDP 아프리카 무역투자진흥 (불어) 12명(연)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토고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2명(연)	이집트, 세네갈	학위/연구과정-국제통상 및 국제경영 2명(연)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탄자니아 고위급 경제개발전략 18명(연)	탄자니아	알제리 공무원 초청연수 5차-해외직접투자 21명 (연)	알제리
아프리카 경제개발전략 13명(연)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말라위 외 10개국	케냐 중소기업육성 (연)	케냐
세네갈 경제개발전략 (연)	세네갈	중소기업육성 11명 (연)	알제리,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외 6개국
재정운영 고급 2명 (연)	콩고, 잠비아	관세 행정 기법 5명 (연)	콩고, 이집트, 기니, 르완다, 잠비아
콩고 경제개발전략 8명 (연)	콩고	마케팅 (봉)	에티오피아
학위/연구과정-국제개발 (국제무역과 WTO) 7명 (연)	알제리, 이집트, 르완다, 탄자니아		
아프리카 파트너십 (국제통상과 WTO) 12명 (연)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가나 외 9개국		
계	10	8	

* 주: 개발조사 (개), 연수생초청 (연), 해외봉사단 (봉)

【출처】한국국제협력단(KOICA) 통계시스템 분석 작성

〈Box 4.3〉 KOICA의 협력대상국의 무역개발니즈 사례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의 경우)

KOICA 지역정책부 작성 국별원조계획(CAS)에서 분석된 아프리카국가의 개발과제는 현지의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니즈가 비교적 높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튀니지의 개발과제 중

- 11차 경제사회개발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산업이 생산 및 수출부문 다양성 등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제시됨
- ① ICT 산업: 상당한 고용 창출 잠재력을 가짐
- ② 제조업: 수출증대를 통한 외부 충격 대응력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 생산물 증대가 목표(섬유산업에서 기계 및 전자산업으로의 이동)
- ③ 농업: GDP의 12%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올리브오일, bio food crop 등 새로운 농작물 생산 장려

□ 알제리 개발과제 중

- 높은 석유 수출 의존도 감소: 알제리의 경제성장은 유가와 강우량(농업) 수준에 크게 의존적이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비원유 부문으로의 산업 다변화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
- 내국인, 외국인 민간투자 증진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 시장경제 기능 축진을 위한 기관역량 강화, 사적재산, 사유지 등의 보호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 민간부문의 효율적 활동을 위한 정부개입 자제

□ 모로코의 개발과제 중

- 국가개발계획(The National Initiative for Human Development: INDH) 중 사회개발 측면과 함께 경제개발 측면(도로 등 사회기간산업 확충, 경제현대화 및 국가생산체제 개선, 민간기업 투자 증진)의 추진 목표가 중시됨
- 모로코 정부는 2001년 4월 'E-Morocco 전략'을 수립하면서, 향후 10년 안에 모로코를 중동·아프리카 진출의 허브화, IT 강국으로 부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

【출처】한국국제협력단 지역정책부 국별원조계획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2008.4)

나. 지역개발

농수산개발의 경우 AfT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바, 본문에서는 단순한 농수산 생산성증대를 위한 기술전수가 아닌 개도국의 국내 및 국제시장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무역관련 농수산지원을 AfT로 간주하고자 한다. 즉, 작물의 품종개량 및 품질개선, 수확 후의 처리 및 가공, 저장, 운송, 판매, 원산지규정 및 위생기준, 농산품관련 상품개발 등 소작농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자금협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지역개발분야에서는 KOICA의 2007년도 농수산개발지원 중 농수산물무역과 관련된 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하여 KOICA의 지원이 얼마나 현지의 소득증대 및 무역확대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농촌개발경험의 전수, 지역간 균형개발, 소규모 농촌인프라개선, 농기계 제공, 장단기적 농촌개발 전략 및 계획수립 등을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이 중심이었다. 또한, 연수생초청사업의 경우 생산성증대 및 품종개량, 저장, 농촌종합개발 등의 기술전수(technical transfer)가 중심이었고, 현지 유통 및 판매를 포함한 현지 공급망(supply chain)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은 전체 184건(봉사단파견 포함) 중 20건(약 10.9%)에 불과했다.²⁰³⁾(표 4.5) 즉, 이는 KOICA 중기목표 중 지역개발분야의 두 번째 추진전략에서 '농수산물 시장접근성 개선(Goal2)'지원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사업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업형태로는 연수생초청의 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표적인 AfT관련 사업에는 '수산물가공 및 수산물 위생요소 중점관리(Marine Products Process & HACCP)'²⁰⁴⁾, '나이지리아 농산물가공 및 직훈센터지원사업('07-'09)/320만 달러)'²⁰⁵⁾ 등이 있다.

203) 이러한 협력대상국의 상품생산 및 서비스제공 역량의 개선 지원은 WTO/OECD가 규정하는 AfT 중 생산역량강화(building productive capacity)의 범주에 해당된다.

204) 알제리, 앙골라, 캄보디아, 콩고, 가봉, 인니, 케냐, 몰디브, 모로코, 파키스탄,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베트남에서 각 1명, 적도기니, 기니, 기니비사우에서 각 2명으로 총 17개국에서 20명이 참가하였다. (2007년도)

205) 본 사업은 농민들이 생산한 카사바의 가공 품질 및 유통적성을 개선하여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부패가 심한 나이지리아에서 직접 빈곤층에 혜택이 갈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현지 소농(Small-Scale Farmer)들에게 소규모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하여 고용시장접근성 제고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표 4.5〉 지역개발분야의 '무역을 위한 원조(AfT)'관련 사업현황 (2007년도)

	프로젝트 (건)	물자지원 (건)	개발조사 (건)	연수생초청 (과정)	전문가 (명)	해외봉사단 (명)	합계	전체 합계 중 %
아시아	- (5)	- (-)	- (2)	4 (14)	1 (4)	4 (92)	9 (117)	45
중동	- (-)	- (-)	- (-)	1 (5)	- (-)	1 (1)	2 (6)	10
중남미	- (1)	- (3)	- (-)	1 (4)	- (-)	- (13)	1 (21)	5
동구CIS	- (-)	- (-)	- (-)	1 (1)	- (-)	- (-)	1 (1)	5
아프리카	1 (6)	- (1)	- (-)	5 (11)	- (3)	- (11)	6 (32)	30
오세아니아	- (-)	- (-)	- (-)	1 (3)	- (-)	- (1)	1 (4)	5
국제기구	- (1)	- (2)	- (-)	- (-)	- (-)	- (-)	- (3)	-
합계	1 (13)	0 (6)	0 (2)	13 (38)	1 (7)	5 (118)	20 (184)	100
전체 합계 중 %	5	-	-	65	5	25	100	

* 주: 지역개발 분야의 해외봉사단 파견에는 축산, 원예, 임업, 수산양식, 수의과, 관개개발, 농기계, 농업경제, 농업개발, 지역개발, 잡업 등이 있으나 AfT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농경제마케팅 및 농업마케팅, 농업통계를 지원하는 '농업경제' 파견자의 숫자만을 산정하였음.

【출처】한국국제협력단(KOICA) 통계시스템 분석 작성

지역별 지원으로는 행정제도분야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비중이 높았으며, 총 지역개발 AfT에서 아프리카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였다.

다. 정보통신

일반적으로 도로, 항만, 통신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는 개도국의 국제시장의 접근성 및 수출확대에 있어 필수적이며, 국가경제발전뿐 아니라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KOICA의

정보통신사업 중 개도국의 무역활성화 및 수출확대 등을 지원하는 무역관련 지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여, 정보통신사업과 AfT와의 관련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정보통신분야의 유형별 주요내용에는 1) ICT 인력양성과 2) 전자정부 구축지원, 3) ICT 활용기술 확산이 있으며,²⁰⁶⁾ AfT는 이 중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 등을 포함한 ICT 활용기술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²⁰⁷⁾ 분석결과, 대부분의 정보통신 프로젝트사업은 IT센터설립 및 정부통신망 구축사업이었고, 연수생초청사업은 주로 정보통신정책 및 행정정보화관리 등이었다. 그 중 AfT와 관련된 지원은 'OAS 공동연수 e-Trade 및 수출진흥', '중소기업의 e-business화', '관세행정정보화', '특허행정정보화' 등 연수생초청사업을 통해 주로 실시되었다. AfT관련 지원은 12건으로 전체 454건(봉사단 포함)의 2.6%였고, 봉사단과건을 제외하면 전체 93건 중 약 13%였다. 사업형태별로는 모두 연수생초청을 통해 실시되었고, 지역별로는 중남미가 전체 AfT관련 지원의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6)

〈표 4.6〉 정보통신분야의 '무역을 위한 원조(AfT)'관련 사업현황(2007년도)

	프로젝트 (건)	물자지원 (건)	개발조사 (건)	연수생초청 (과정)	전문가 (명)	해외봉사단 (명)	합계	전체 합계 중 %
아시아	- (8)	- (-)	- (-)	3 (13)	- (4)	- (199)	3 (224)	25
중동	- (1)	- (1)	- (-)	- (9)	- (1)	- (4)	- (16)	-
중남미	- (8)	- (1)	- (-)	4 (13)	- (-)	- (66)	4 (88)	33.3
동구CIS	- (3)	- (-)	- (-)	3 (8)	- (1)	- (20)	3 (32)	25
아프리카	- (7)	- (-)	- (-)	2 (12)	- (-)	- (64)	2 (83)	16.7
오세아니아	- (-)	- (-)	- (-)	- (3)	- (-)	- (8)	- (11)	-
국제기구	- (-)	- (-)	- (-)	- (-)	- (-)	- (-)	- (-)	-
합계	0 (27)	0 (2)	0 (0)	12 (58)	- (6)	- (361)	12 (454)	100
전체 합계 중 %	-	-	-	100	-	-	100	

【출처】한국국제협력단(KOICA) 통계시스템 분석 작성

206) 한국국제협력단 (2008)

207) 전자상거래 실시지원은 WTO/OECD가 규정하는 AfT의 '무역개발'범주에 해당된다.

라. 산업에너지팀

WTO/OECD가 정의하는 '무역관련 인프라(trade-related infrastructure)'는 도로 및 항만건설, 에너지, 저장, 커뮤니케이션 등의 광범위한 인프라정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관리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너지 사업은 AfT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KOICA는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단계 및 국가개발 계획을 고려한 도로 및 철도, 공항 등 국가교통인프라 개선과 전력 등 에너지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력대상국의 경제성장 기반마련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은 국민뿐 아니라 물류, 서비스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여 경제활성화, 소득향상, 생활개선에 이바지 하는바, 산업에너지의 중점 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AfT관련 사업의 비중을 산출하기보다, 산업에너지분야의 전체 사업 중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 및 사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2007년도의 산업에너지분야의 지역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중동 및 아시아가 전체의 약 80.2%를 차지하였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약 7.9%에 불과했다.

〈표 4.7〉 산업에너지분야 지역별 지원실적 (2007년도)

지 역	금액(US 백만 달러)	비율(%)
아시아	13,000	39.8
중동	13,192	40.4
중남미	2,814	8.6
동구 CIS	1,035	3.2
아프리카	2,567	7.9
국제기구	27	0.1
계	32,636	100

【출처】한국국제협력단 (2008)

또한, 아프리카지역의 양자간 세부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전력기술과정', '가나 철도 운영 현대화', '나이지리아 철도운영 현대화' 등의 연수사업이 중심이었고, 실질적인 인프라구축 및 정비관련 프로젝트사업은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다.(표 4.8)

〈표 4.8〉 산업에너지분야 아프리카지원 세부내역 (2007년도)

세부내역	사업기간
(개)이집트 배전자동화시스템 구축(카이로시)	2007
(연)전력기술과정 7명	2007
(연)가나 철도운영 현대화 12명	2007
(연)광산 프로젝트 개발 및 평가 3명	2007
(연)나이지리아 원전기술 및 사업관리 9명	2007
(연)과학기술정책 4명	2007
(연)아프리카 원면 수출지원 10명	2007
(연)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 전문가 능력배양 2명	2007
(연)ICAO 레이더접근관제 5명	2007
(연)ICAO 위성항법시스템 11명	2007
(연)비파괴 검사기술 1명	2007
(연)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관리 3명	2007
(연)ICAO 전방향 무선표지시설 9명	2007
(연)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기술 1명	2007
(연)MOWCA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 20명	2007
(연)나이지리아 철도운영 현대화 10명	2007
(연)IAEA원전기획및 사업관리 2명	2007
(연)알제리 공무원 초청연수 8차 - 신도시 개발 20명	2007
(봉)전자공학 7명	2007~2009
(봉)토목 2명	2005~2007
(봉)식품공학 1명	2007~2009
(봉)자동차 6명	2007~2009
(봉)전기공학 9명	2007~2009
(봉)봉제 9명	2007~2009
(봉)건축공학 11명	2007~2009
(봉)기계 15명	2007~2010
(봉)마케팅 1명	2005~2007
(봉)도시계획 1명	2005~2007

【출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통계시스템

(표 계속)〈표 4.8〉 산업에너지분야 아프리카지원 세부내역 (2007년도)

세부내역	사업기간
(봉)세라믹 1명	2005~2007
(봉)공예디자인 2명	2006~2008
(봉)인쇄 5명	2007~2009
프로젝트 - 전체 0 건/신규 0 건	
(사후관리 0 건/형성사업 1 건)	
개발조사 - 전체 1 건/신규 1 건	
(사후관리 0 건/형성사업 0 건)	
연수생초청 - 17 과정(129 명)	
해외봉사단 - 전체 70 명/신규 33 명	

한편, 산업에너지분야의 대표적인 대 아프리카 AfT관련 국제기구 사업에는 '서부 아프리카 전력공동체 정보통제센터(ICC)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Feasibility Study and Basic Design to establish the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ICC) in WAPP of ECOWAS*: '07-'09/ 250만 달러)'사업이 있다. '서부아프리카전력공동체(West Africa Power Pool)'는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회원국 중 14개국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전력기관으로, KOICA는 서부 아프리카 전력공동체(WAPP)의 정보 관리 및 조정을 담당할 정보협력센터(Information Coordination Center) 설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집행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본 지원사업은 아프리카의 국가간 전력망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부족 및 이로 인한 산업발전 지체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 다자지원

KOICA의 국제기구지원을 통한 다자간 AfT는 2007년도에 들어 그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어 'PIF 태평양제도포럼'의 무역교육 및 훈련을 비롯해 5건의 지원이 실시되었다. 그 중 아프리카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4건으로, KOICA의 다자간 AfT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부 아프리카 전력공동체(WAPP)를 통한 인프라지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무역역량강화(trade capacity building)가 중심이었다.²⁰⁸⁾

〈표 4.9〉 KOICA의 다자간 '무역을 위한 원조' 실적 (2007년도)

기구명	지원액 (만 달러)	사업내용	지원국	KOICA 분야
PIF	10	무역정책자문관 사업지원(Trade Policy Support Project)	피지	행정제도
UNDP	112.5	한-UNDP 공동협력사업 - 아프리카 무역역량개발('07-'08)	부르키나파소, 레소토, 말리 등 8국 및 지역기구(SADC, COMESA, ECOWAS)	행정제도
UNDP EIF	50	강화된 통합체제: 무역을 위한 원조('07-'08) (Support for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EIF)	잠비아, 르완다, 세네갈 등 5국	행정제도
UNIDO	30	'아프리카 경제인 역량강화' 및 '투자기회 및 장벽 현장조사'('07-'08)	우간다, 탄자니아, 나미비아, 모잠비크	행정제도
WAPP	3	서아프리카 전력공동체 IC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지원('07-'09)	가나, 세네갈 등 14국	산업 에너지

*주: 지원액은 2007년도의 집행금액임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07a) 참고 작성

한 예로, UNIDO의 '아프리카 경제인 역량강화 및 투자기회 및 장벽 현장조사'지원 은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간의 경제인 교류와 투자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연구를 통한 아프리카 국가의 무역역량강화 및 투자기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은 아프리카 경제인 초청연수(약 20명)와 전문가팀 파견을 통한 투자 잠재력이 높은 분야 연구가 중심이며,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역량강화 및 투자확대 기반의 마련을 통해 빈곤감소(MDG1) 및 무역진흥(MDG8)에 대한 기여가 기대되고 있다.

208) 한편, 우리정부는 2001년 '최빈국과 기술협력사업' 용도로 WTO 사무국에 30만 달러(50만 스위스 프랑)를 자발적 기여금 형태로 공여한바 있다.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2002.10.17) '최빈국 현황과 우리나라의 관계')

바. 정책적 시사점

이상 행정제도, 지역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분야의 AFT관련 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양자간 지원의 경우 OECD/DAC 회원국 및 WTO, UNCTAD, 세계은행 등의 다자기구의 AFT가 주로 최빈국(LDCs)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KOICA의 AFT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중저소득국(LMICs)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²⁰⁹⁾ 사업유형별로는 연수생초청사업의 형태가 가장 많았고, 분야별로는 행정제도분야의 비중이 70건으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KOICA의 AFT는 '무역관련 인프라구축'보다 주로 '무역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TRTA/CB)'를 중심으로 한 인식제고 연수(awareness training)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KOICA의 대 아프리카 AFT는, 행정제도 분야의 무역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아프리카의 인프라구축에 대한 비중은 기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KOICA의 '경제개발 추진능력 강화' 및 '민간경제활성화' 지원은 행정제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공여국의 경우 '거버넌스(governance)' 분야가 아닌 '경제개발 및 고용' 또는 '민간부문개발', '산업 및 무역개발' 등의 분야로 별도 분리되어 계획 및 실시되고 있다.²¹⁰⁾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도국의 WTO참가 역량강화 노력에 동참하고 협력대상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 및 수출, 민간부문개발 전담 부서의 신설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협력대상국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상의 실질적인 기술장벽(TBT)' 및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수출업자에 대한 대 한국 무역규정 및 원산지규율 이행지원, 기타 수출진흥(export facilitation) 프로젝트 등 '무역 개발'의 비중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역개발' 지원은 개도국이 글로벌 경제에 참여함에 있어 겪는 인적, 제도적, 생산역량 부족 등의 공급자 측면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9) KOICA의 2007년도 중저소득국(LMICs)에 대한 지원은 소득별 양자간 원조액의 약 50.1%였고, 최빈국(LDCs)에 대한 지원은 약 20.5%에 불과했다.

210) 한편, USAID 및 노르웨이, 덴마크의 경우 개도국의 다자무역시스템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배경에 부정부패, 분쟁, 급격한 체제이행 등의 열악한 거버넌스가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선정(good governance)을 AFT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 및 농업, 무역국(Bureau for Economic Growth, Agriculture and Trade)' 등 거버넌스와 별도의 전문팀을 조직하여 전략적으로 AFT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역개발의 경우, 생산성증대 및 품종개량 등의 기술전수와 함께 현지 유통 및 판매를 포함한 현지 공급망에 대한 지원, 현지 민간부분을 포함한 민간부문개발(PSD)의 관점의 도입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에너지 분야의 경우,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비율이 전체의 7.9%로 현저히 낮은바, 열악한 아프리카의 인프라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자원조를 포함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비율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자지원 AfT 중 WTO 등의 6개 다자기구의 개도국의 무역역량강화의 일환인 UNDP의 '강화된 통합체제 (EIF)' 지원은 국제사회의 AfT에 대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표명하는데 매우 중요하기에 높이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향후 개발협력의 원조효과 및 성과제고를 위한 국제적 공조 및 정책의 일관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양자협력에 더하여 EIF와 같은 다자 AfT에 대한 참여 및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향후 추진방향

3.1. KOICA의 대 아프리카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의의

앞서 강조하였듯이,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WTO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전역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8월 현재, WTO가맹국 153개국 중 약 5분의 4를 차지하는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무역장벽 및 무역역량부족 등으로 자유무역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세계적 차원의 무역 활성화 기회를 이용할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역이 가져다주는 성장추진과 빈곤감소라는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합리적인 시스템과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개도국 상황에서는 무역투자 자유화로 인해 국가간은 물론 국가 내에서도 계층간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무역 및 투자분야 지원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과 역내무역의 확대, 대내외의 투자 촉진을 통한 금융과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지향하는 개도국들에게 국제경제질서로의 편입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분야이다. 실제 우리나라도 수출중심의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와 정부의 전략적인 무역 및 경제개발정책 등을 배경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에 국제사회 및 원조커뮤니티는 MDGs의 달성과 함께 개도국의 무역활성화를 빈곤감소를 위한 최대 개발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나,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무역 및 투자, 인프라 등의 부족이 여타 개도국에 비해 현저하여 빈곤감소에 불가결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빈곤감소라는 공통의 전략 가운데 아프리카지역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무역 및 투자개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진공여국을 지향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무역에 동참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통한 MDGs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즉, 우리정부의 대 아프리카 무상원조를 실시함에 있어 프로젝트 종료 후 협력 대상국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경제성장에 연계될 수 있도록, 무역 및 투자관련 자금지원과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등의 기술협력이 각 분야별 사업가운데 포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최빈국(LDCs)을 비롯한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확대에 대한 국내적 우려의 견해로 인해 시장개방보다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한 해당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개도국에도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분석되고 있다.²¹¹⁾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농산물, 환경 등의 분야에서는 개도국인바 동일한 개도국에 대해 GSP 등의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정부는 WTO에서 제시하는 최빈국(LDCs) 특혜확대에 부응하되, 국내적 여건으로 인해 농산품과 섬유제품 등을 민간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211) 정제호, 이명현 (2005)

그러나 농산물과 섬유제품은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인 최빈국(LDCs)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품목으로 이들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개방을 통한 개도국의 무역확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양자 및 다자원조를 통한 AfT가 필요하다.

3.2. KOICA의 대 아프리카 '무역을 위한 원조(AfT)' 전략

가. KOICA의 AfT 목적 및 전략 수립

우리는 앞서 KOICA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2008-2010)'과 분야별 AfT의 실적분석을 통해 행정제도, 지역개발, 산업에너지 분야의 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개발원조 목표가운데 협력대상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무역지원이 우선순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협력대상국의 요청에 따른 프로젝트 베이스의 AfT 사업이 아닌 'KOICA 아프리카 무역개발 이니셔티브(KOICA Initiative for African Trade Development)'를 바탕으로 한 공통된 원조목적 및 전략 아래 무역관련 지원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I. 대 아프리카 AfT의 목적

KOICA의 AfT는 개도국의 무역과 글로벌경제에의 적응 및 통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지원활동을 의미하며, KOICA는 AfT를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개도국의 무역자유화 및 무역장벽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현지의 빈곤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대 아프리카 AfT의 지원전략 (안)

1) AfT 원조금액의 확대

현재 우리정부는 AfT의 재정적 확대를 위한 중기계획은 없으나 2010년까지 기술 지원을 배증할 계획인바, 이 중 약 40%를 차지하는 행정제도 분야의 비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행정제도 분야의 중점 추진전략의 일환인 AfT관련 지원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3년 이상의 중-장기 AfT 재정계획의 수립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AfT 증액 노력에 대한 동참 및 그를 통한 위상제고가 필요하다.

2) AfT의 크로스커팅(cross-cutting)화

AfT를 행정제도, 지역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등의 중점지원 분야의 크로스커팅 이슈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최빈국(LDCs)의 농수산물 생산성증대와 수출산품의 특정 및 품질개선 등의 '생산'지원을 실시할 경우, '유통 및 판매', '소비자 구매'의 시점까지를 폭넓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수산물 수확확대와 함께 '유통 및 판매'를 고려할 때, 열악한 시장 및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현황, 국제적인 위생 및 검역기준 달성 역량부족, 판로부재 등의 추가적인 개발과제에 착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 구매'단계의 관점을 전략 수립 단계에서 고려할 때는, 최빈국 산품의 무관세 및 무쿼터의 확대 문제와 함께, 최빈국 중소기업의 한국 내 전시회 및 산품설명회 개최 지원, 최빈국 산품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국내 민간기업 및 NGO와의 협력, 즉 민관협력(PPP) 등의 프로젝트까지 착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과 연관된 '소비자 구매'단계의 지원은,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과 아프리카 최빈국 중소기업과의 '기업 대 기업(business to business: B2B)'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수출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각 분야별 사업을 발굴, 형성하는 단계에서 포괄적인 '무역'의 관점을 도입하여 기타 분야별 사업팀과 협력 하에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전략적인 지원패키지의 도입이 필요하다.

3) 협력대상국의 정책과 일치(주인의식, 원조일치)

국별 단계(country level)에서 AfT는 협력대상국의 빈곤감소전략(PRSs) 및 국별 개발계획, 예산 프로세스와 일치해야 한다. 협력대상국의 빈곤감소전략 및 국별

개발계획에 무역 및 투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대화 등을 통해 무역이 우선 순위로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AfT의 실행에 앞서 개도국의 무역장벽 등의 진단(DTIS 등), 또는 연구조사를 통해 정확한 무역관련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무역정책 및 규범'지원

협력대상국의 효과적인 다자무역시스템 통합과 WTO 및 지역무역기구 등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역량개발 기술협력은, 현 행정제도분야의 연수사업 및 전문가파견,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무역 및 민간부문개발' 등의 전략적인 프로그램화를 고려할 때 현 행정제도팀과 분리된 별도의 팀의 설치를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5) '무역개발' 및 '생산역량강화'지원

협력대상국 민간기업의 수출 및 무역활동 환경정비지원, 협력대상국의 상품생산 및 서비스제공 역량의 개선 등이 이에 해당된다.

6) '무역조정비용' 지원

KOICA는 아직 협력대상국에 대한 재정지원(budget support) 실적은 없으나, 장기적인 AfT 전략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특혜잠식, 무역행정 및 관세시스템 등의 일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국가수입 감소에 대한 조정비용 지원을 차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협력대상국의 기관과 제도체계를 사용한 일관된 원조수행(alignment)과 프로그램원조의 일환으로 분야별 빈곤감소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협력대상국 정부의 예산과 공여국의 재정지원을 통해 분담하는 경향이 있다. 재정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원조는 자금이 협력대상국의 국가예산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협력대상국이 중장기적인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여국간의 원조중복으로 인한 협력대상국의 행정비용(transaction cost)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잠비아, 말라위, 가나 등에서는 프로젝트형 원조를 실시하고 있는 공여국도 재정지원 참가를 통해 한정된 수의 광역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원조조화(harmonisation)를 통한 효율성제고에 동참하고 있다.²¹²⁾ 재정지원을 실시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예산시스템 및 체제에 일치시키는 원조일치(alignment)가 중요하다.

7) 지역개발기구와의 AfT 협력 강화

KOICA의 양자원조의 경우, 선진공여국에 비해 원조규모가 크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대형 인프라구축보다는 무역역량강화, 개발조사(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와 같은 기술협력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심각한 인프라부족 현상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지원규모가 비교적 큰 도로, 항만, 전력 등의 인프라는 아프리카의 지역경제개발기구(COMESA, EAC, ECOWAS, SADC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기타 공여기관과의 원조조화(harmonisation)를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8) 다자협력을 통한 AfT 강화

KOICA는 2007년도부터 EIF 등에 대한 다자기구의 AfT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JITAP(*Joint Integrated Assistance Program*), '도하개발어젠다 글로벌 신탁기금(DDAGTF)' 등의 다자기구 및 기금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다자기구의 AfT에 대한 자금공여뿐 아니라, 2009년도 중순에 예정된 WTO '제2차 Global Aid for Trade Review'의 모니터링 및 평가회의 참여²¹³⁾, OECD의 CRS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게 투명한 AfT 실적공개 등을 통해 OECD/DAC의 가입을 희망하는 공여국으로서의 원조조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 AfT 프로그램의 수립을 위한 정책대화,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대한 참여확대는 우리정부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12) 秋山孝允'笹岡雄一編著 (2006)

213) 2007년 11월 21일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가 참여, 발제하고 있을 뿐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관실 및 KOICA의 참여는 없었다.

Ⅲ.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AFT

KOICA의 AFT 안전형성은 각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단계, WTO 및 지역협정에 대한 가맹상황, 사회적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양한 경제적 특이성을 지닌 53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일괄적인 경제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각 국가별 현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니즈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지원 역량을 감안한 개별적 지원책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 아프리카 10대 수출국(남아프리카, 알제리, 나이지리아, 리비아, 앙골라,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적도기니, 코트디부아르) 또는 저-중소득국의 경우, WTO 가맹 및 협정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에 어느 정도 진행됐으나 실제 제도를 운영, 집행하는 데는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는바, 제도의 운영 및 집행, 투자 및 무역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거래비용 감소 및 소요시간 단축 등을 지원을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 이어 가나, 케냐 등 2007년 기준 1인당 GNI가 \$935 미만인 저소득국의 경우, WTO로 인한 자유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비한 정책협력과 WTO 협정의 이행 및 무역절차에 관한 행정역량 강화지원, 무역관련 인재육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무역진흥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가 포함된 최빈국(LDCs)의 경우, WTO 가맹지원과 함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에 대비한 농산물의 경쟁력강화, 수출진흥, 인재육성, 산업진흥정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나.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의 관점도입

무역 및 투자활동의 주체는 민간부문이며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바, 공여국의 주요 역할은 그러한 민간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개도국의 환경정비를 지원하는데 있다. 즉, 정부의 '무역정책 및 규범' 수립과 함께 현지 민간부문의 수출진흥 및 무역환경조성을 위한 '무역개발'연수가 병행될 때, 미시적인 빈곤감소 효과 또한 제고될 것이다.

민간부문개발은 크게 1) 인프라정비와 2) 기업활동 조성을 위한 개도국의 무역규율 및 규범 등에 대한 제도 지원, 3) 특별한 부분(sectors) 및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제도 지원의 예로는, 협력대상국 민간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참여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정비(법제도 및 규범 정비, 활발한 상품거래 및 생산 활동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 등이 있고, 특별부문 및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생산 프로세스 개선 및 수출산품의 품질제고, 특정한 수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개선 프로그램, WTO 협정가운데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 불리는 위생 및 검역(SPS), 환경기준 준수 의무, 원산지기준, 기타 무역규범 등 무역에 있어 직면하는 기술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민간부문개발의 안전형성 단계에서는 협력대상국 정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기업 및 무역기관 담당자, 현지 시민사회조직(CSOs)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부문의 과제 및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민간부문개발의 관점도입은 연수생초청사업 및 전문가파견 사업 등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현재 KOICA가 실시하고 있는 무역역량강화 연수는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연수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협력대상국의 중소기업의 무역역량개발과 현지 기업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등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경제 및 무역관련 기관 또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력대상국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역량강화 기술협력에는 사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KOICA 외의 수출입은행(EDCF),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무역 및 투자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KOICA는 선진공여국과 같이 민간부문개발(PSD), 무역팀(trade team), 국제무역부(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등의 무역지원관련 전담부서가 없는 관계로 행정제도팀 또는 산업에너지팀이 이러한 무역관련 과제에 각각 대응하게 된다.

다. 원조의 효과성제고

원조의 효과성(aid effectiveness) 논의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WTO가맹 및 이행, 무역확대 등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각 국별 경제적 니즈를 반영하고 있으며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 하에 주도적으로 발휘되고 있는지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AFT를 위해서는 협력안전형성 단계에서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 상 무역 및 투자정책이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대상국의 무역 전략과 정합성이 있는 원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협력안전이 단순한 협력대상국의 무역투자정책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협력대상국의 빈곤감소 전략의 시점을 도입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AFT는 결코 선진국의 무역 및 시장 확대의 수단 또는, 도하개발라운드의 성공자제를 목적으로 이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원조중복회피와 행정비용(transactions costs)절감을 위해서는 다른 공여국과의 분업(division of labour)을 통한 원조조화(harmonisation)가 필요하다. 이러한 무역관련 원조의 중복회피와 기타 공여국 및 다자기구와의 원조조화를 위해서는, WTO 및 OECD/DAC, UNCTAD 등과의 정보교환, 적극적인 AFT 정책회의 및 모니터링평가회의 참여, '강화된 통합체제(EIF)' 동참, 기타 선진공여국의 AFT 지원방향 분석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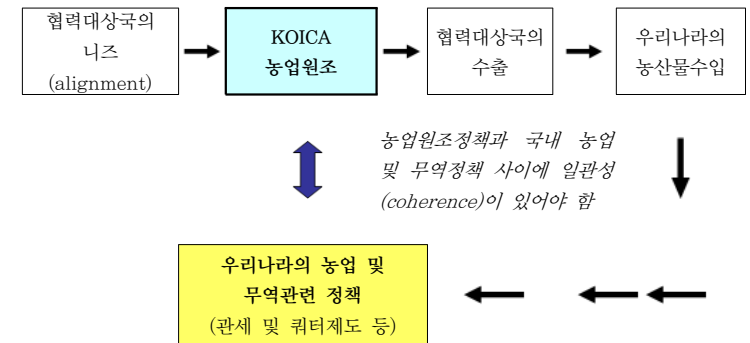
라. 개발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미국정부의 '무역역량강화(TCB)' 지원과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GOA)'을 통한 최빈국의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확대 등 선진공여국은 AFT와 자국의 대 최빈국(LDCs) 무역개방정책의 병행을 통해 포괄적인 최빈국의 무역확대와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KOICA의 분야별 원조와 우리정부의 무역 및 투자정책(무역장벽의 철폐, 우리기업과의 무역활성화 지원 등) 또한 협력대상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전략가운데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즉, KOICA가

실시하는 무상원조는 우리정부의 외교 및 통상 등의 제반정책과 연관되어 개도국의 사회경제발전과 빈곤감소를 지향한 방침 및 정책으로 거듭나야 하는바, KOICA를 포함한 정부차원의 개도국 무역과 원조에 대한 범정부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KOICA의 농업원조와 정책일관성의 예를 들어보자. 오늘날 기후변동, 기아와 영양부족,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수자원 고갈 등에 의해 개도국,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식량부족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달하였다. 그로 인해 세계적인 식량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중장기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오늘날 개도국을 포함한 식량안보 문제는 주요 글로벌이슈 중 하나이다. 아프리카의 식량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원조는 글로벌경제의 안정화와 옥수수 및 밀가루, 설탕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안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원조정책과 국내 농업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즉, 우리 정부가 WTO체제 하에 최빈국(LDCs)의 농산물 및 비 농산물수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수출수입증대로 연계되어,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통한 지속적인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4〉 농업원조와 우리나라의 농업무역정책과의 관계



【출처】 저자 작성

한편, 아프리카국가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접근성의 확대에 의해,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이 입을 타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WTO체제 하에 특수품목 및 중요품목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정한 쌀, 껌 등은 보호대상이지기에 국내 농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기적으로 그다지 않을 것이라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100%이상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한국까지의 수송거리 및 비용, 기타 아시아지역과의 경쟁요소를 고려할 때, 아프리카의 농산물이 단기간에 한국에 수입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WTO의 진전과 우리정부의 선진국으로서의 시장개방 요구확대 등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적합한 대응정책의 수립이 대 최빈국(LDCs) 무관세 및 무쿼터 확대와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 WTO/OECD의 Aft에 입각한 통계시스템 확립

우리나라가 Aft에 대한 국제모니터링과 평가과정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WTO 및 OECD가 규정하는 Aft의 정의에 따라 우리의 무역관련 원조를 통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선진공여국은 OECD의 Aft CRS 코드를 통해 각국의 Aft 규모를 보고하고 공여국간의 원조조화에 활용하고 있는바, Aft의 규모예측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우리정부의 분야별, 지역별 Aft 규모 및 실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계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바. 아프리카 지역 내 무역활성화 지원

Aft는 개도국의 공급자 측면의 능력배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바, 민간부분의 생산 및 무역역량강화와 함께 역내 무역의 활성화, 무역관련 인프라의 개선이 중요하다. 특히, 아프리카의 심각한 인프라부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은 지원규모로 원조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역내기구의 무역관련 인프라구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역내 무역의 활성화와 동시에 무역관련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지역 내 기구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KOICA는 07년부터 ECOWAS의 서부

아프리카 전력공동체(WAPP)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나, 향후 COMESA, SADC 등의 다양한 지역기구와의 Aft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협력형태로는 자금제공과 함께, 실질적인 Aft 프로젝트의 공동시행이 있다. 예를 들어, 동부 아프리카의 국경을 넘는 간선도로개량사업의 경우 케냐를 KOICA가 담당하고, 탄자니아와 우간다를 지역개발기구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기구와의 인프라정비 사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역내 경제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사. 우리의 경제개발경험 활용

대부분의 KOICA 협력대상국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경제개발경험 전수에 대한 니즈가 높은 편이다. OECD와 WTO가 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무역개발을 자국의 경제개발전략으로 책정하고 빈곤감소 및 인간개발의 성공이 성공적인 무역에 달려 있다고 응답하였다.²¹⁴⁾ 이는 협력대상국들의 무역활성화 및 경제성장에 대한 높은 니즈를 시사한다. 우리정부도 최근 경제성장 경험의 공유를 '한국적 개발경험'의 중요한 콘텐츠로 활용해 나갈 방침인바, 본 연구보고서에서 일괄적으로 집필한 Aft는 이러한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지원의 주요 요소이자, 개도국의 니즈충족 및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비교우위 분야로서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초기 공업화 과정의 산업화전략의 아프리카 적용 가능성(2007)』이라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발국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였고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나갔는가에 관한 경험의 공유는 개도국의 제도 구축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이라는 국제사회의 대외원조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²¹⁵⁾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이며

214) WTO/OECD (2007b)

215) 박복영 외 (2007)

부패유발적인 정부개입으로 인한 농업부문에서의 축적저해와 수출억제에 대한 세계은행 및 IMF의 작은 정부 및 개방 확대 권고는 올바른 방향이었으나, 초기 산업화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숙한 시장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하에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경제정책 실패경험을 비롯한²¹⁶⁾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모색할 수 있다 분석하였다.²¹⁷⁾

잘 알려져 있듯,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함께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 국가 중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요인에는 1) 근면하고 값싼 노동력, 2) 개발지향적인 정부 및 효과적인 행정기구의 존재, 3) 비교적 높은 국내저축률과 민간 금융 부문의 발전, 4) 50-60년대의 수입대체산업에서 수출지향형 무역체제로의 전환, 5) FDI의 적극적인 도입, 6) 정책금융 및 인프라정비, 산업정책 도입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7) 농업생산량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식량공급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활용하여, 종래의 선진공여국의 경험과 이론을 적용한 아프리카 지원과 차별화된 우리만의 AfT 방안 및 전략을 수립,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유럽 국가의 구조조정프로그램, 한국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 산업 정책 등의 산업 및 무역정책의 적용은 각 협력대상국의 시장의 성숙도 및 정부의 집행능력, 기타 역사적, 사회적 특성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획, 집행되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참여를 동반한 AfT

AfT를 위해서는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의 정부관료, 세계은행 및 WTO 등의 국제기구, 지역기구, 민간기업,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AfT의 효과적인 집행은 이러한 다양한

이해그룹의 적절한 관여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NGOs를 포함한 시민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은 정부의 AfT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최빈국(LDCs)을 대상으로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지, 기타 보건 의료 및 교육, 민주화 구축 등의 지원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현지 및 국제 NGOs의 경우, 현지 소작농, 농장노동자, 중소기업가, 의류생산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소비자그룹 등 무역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많은 CSOs는 AfT가 과도한 개도국의 자유화요구와 함께, 선진국의 수입품에 대한 개도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CSOs는 공항 및 항만건설의 민영화, 해외투자개방과 함께 현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도 및 에너지 등의 생활인프라도 민영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민영화와 그와 따른 다국적 기업의 활발한 진출은 현지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수출주도형 산업진흥정책이 우선시되어 농업분야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개도국의 식량안보가 침해될 가능성과 AfT의 명목 아래 차관으로 인한 새로운 부채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KOICA 현지 대상 AfT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수립 및 평가에 있어 국내 및 현지 NGOs를 포함한 다양한 CSOs의 의견(policy advice)수렴 및 파트너십의 자세가 필요하다.

216) 한국경제의 병리적 현상에는 재벌체제, 정경유착, 부실기업, 관치금융, 지대(이권) 추구 등이 있으며, 이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217) 단,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중 정부에 의한 선별적 산업육성(보호주의적 또는 수입대체적 정책 등)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즉, 아프리카의 경우 자국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내 산업연관효과의 확대나 토착기업의 육성이 아니라 단순히 노동력을 판매하는 '국제하청(international subcontracting)'이라도 성공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Box 4.4〉 우리나라의 최빈국(LDCs) 무관세 적용현황

우리정부의 최빈국(LDCs) 무관세·무쿼터 방침은 2005년 제6차 WTO 홍콩각료회의와 2006년 3월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선언'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최빈국 경제개발 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6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홍콩 각료회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전체품목의 대부분에 대해 최빈국 무관세·무쿼터를 부여기로 결정하고, 농수산물, 섬유, 의류 등 일부 민간품목을 제외하고 선진국이 부여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무관세·무쿼터 대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정부는 2008년부터 아프리카·아시아 등 50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품목을 현행 1.8%에서 75%로 대폭 확대하고(홍콩 각료회의 목표치는 97%), 원유와 농수산물, 의류 등 민간품목은 제외한 HS 6단위 5,052개 품목 중 3,79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 최빈국(LDCs)의 주요 수출품목이 농수산물과 의류 제품임을 작목할 때, 아프리카 최빈국의 대 한국 수출은 미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¹⁸⁾

한편, 최빈국특혜관세(GSP)를 국내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76조²¹⁹⁾ 제3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요건으로는 1) 수입신고 전 원산국이 한국에 통보한바 있는 특혜원산지증명 발급권한기관서가 발행한 FORM A양식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of GSP) 제출, 2) 원산국의 부가가치가 50%이상이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8번 란에 원산국의 부가가치가 표기되어야 함, 3) 원산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고 부득이 제3국을 거칠 경우 경유국에서 분할, 포장 등의 재가공이 없어야 함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 인도는 2008년 4월 아프리카 14개국 정상을 뉴델리에 초청한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향후 5년간 아프리카 원조를 54억 달러로 확대할 것과 최빈국(LDC) 50개국에 대한 수출관세 인화와 면세조치를 공약하였다. 인도의 관세특혜조치에 항목에는 알루미늄, 철광석, 구리, 면화, 코코아 등 원자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218) 정재호, 이명현 (2005)

: 본 연구보고서의 모형을 통한 경제분석 결과 농산물을 완전히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후생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최빈국의 입장에서 후생증가가 미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데 원인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19)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해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그

3.3. 대 아프리카 '무역을 위한 원조' 사업모델

우선 WTO/OECD의 5가지 Aft 범주에 입각한 KOICA의 양자 간 전략목표와 세부목표, 사업형태 등을 정리하면 표 4.10과 같다. 무역관련 인프라지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개발조사, 전문가 및 컨설턴트팀 파견, 연수생초청 등의 현 기술협력 스킴을 통해 실시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원조조화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및 다자기구에 대한 자금출연 및 기술협력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협력대상국의 무역조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지원은 KOICA의 새로운 원조형태의 시도가 될 것이다.

〈표4.10〉 KOICA의 Aft 사업모델

전략목표	세부목표	KOICA 사업사례	KOICA 사업형태
1. 무역정책 및 규범지원	1.1. WTO 등 다자무역시스템 참여 지원	WTO 규범에 따른 국내법 및 통상정책 정비	개발조사, 전문가파견
		가맹절차 및 국가별 개별협정에 대한 이해제고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무역부 조직정비 및 행정수행역량 강화	전문가 및 컨설턴트팀 파견(중-장기), 연수생초청
	1.2. 국내 상거래법 등의 정비	시장경제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전문가 및 컨설턴트팀 파견(중-장기)
	1.3. 세관시스템의 정비를 통한 협력대상국 무역절차의 간소화	세관, 검역, 출입항 절차의 전산화 세관 및 검역담당자의 역량강화	개발조사, 인프라구축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2. 무역개발 지원	2.1. 국내산업의 사업환경 정비	산업진흥 매스터플랜 작성 중소기업진흥 및 지역산업육성정책 수립	개발조사, 전문가파견 개발조사, 전문가파견
	2.2. 기업 무역대상국의 무역제도 및 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무역진흥협회 등 기업의 해외무역 및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경제단체 역량강화	전문가 및 컨설턴트팀 파견(중-장기)
	2.3. 민간부문이 직면하는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진흥	'무역상의 실질적인 기술장벽(TBT)' 및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HACCP관련 기술협력	전문가 및 컨설턴트팀 파견, 연수생초청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당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의한 최빈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적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계속)〈표4.10〉 KOICA의 AfT 사업모델

전략목표	세부목표	KOICA 사업사례	KOICA 사업형태
3. 무역관련 인프라지원	3.1 무역 및 투자관련 인프라건설 및 기자재제 공	발전소 및 전력망구축	개발조사, 인프라구축
		도로, 항만, 공항 등 물류유통 인 프라구축	개발조사, 인프라구축
		금융 전자망 정비	개발조사, 인프라구축
	3.2 지역기구의 무역인 프라 구축 지원	WAPP 등에 참여	개발조사, 전문가파견, 지 역기구나자금제공
4. 생산역량 강화	4.1 작물의 다양화	주요 수출산품인 농수산물의 경 쟁력 강화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4.2 수출상품개발 지원	부가가치 수출상품개발 및 품질 개선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농수산물 가공기술향상 사업	전문가파견, PPP
	4.3 다자간 기술협력 프 로그램 참가	EIF, JITAP(Joint Integrated Assistance Program) 등 협력	multi-bi 프로젝트수행, 자금제공
5. 무역관련 조정	5.1 협력대상국의 무역 정책개혁에 수반되는 조 정비용 지원	수입관세인하 및特惠시장접근 철폐로 인해 야기되는 국가재 정의 불균형문제 지원	예산 지원 (budget support)

※ 주: PPP는 Private Public Partnership의 약자임

【출처】 저자 작성

이상의 AfT 접근방법(approach)은 각 사업 분야별 무역지원에 있어 횡단적(cross-cutting)으로 적용한다. 특히, 최근 KOICA 사업에 있어 사업종료 후의 사후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AfT의 횡단적 사업발굴 및 계획단계에서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장성한 사업계획수립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무역 인프라지원 사업은 도로, 항만, 교통, 전력망, 관개시설 등의 단일 인프라구축이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무역관련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동시에 계획,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KOICA의 AfT를 분야별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농어촌개발 분야를 통해 모색해 보자.

우선, 아프리카인구의 약 80%가 농촌에 거주한다고 일컬어질 만큼, 농업 및 농촌개발은 국내 소비시장 형성과 정치안정, 개발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농산물유통 시스템의 정비 등에 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KOICA의 대 아프리카 농업지원은 아프리카가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증대지원과 함께 가공 및 유통, 판매, 국제무역시장에 대한 접근성향상을 포함한 공급망(supply chain)전체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에는 농업 인프라정비, 인재육성을 통한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 및 가공품생산기술 지원, 유통시스템 및 무역확대를 위한 판로개척지원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수출증대 프로그램'의 경우, 제1단계의 '농산물 생산성증대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협력과 함께, 제2단계의 '유통, 판매(공급망)지원 프로젝트'를 동시에 프로그래밍한다.²²⁰⁾ 제3단계에서는 유통 및 판매에 있어 부족한 도로, 교통, 저장 등의 인프라정비 프로젝트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협력국의 수출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빈곤감소로 연계될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단기적인 연수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프로그램 하에 아프리카지역 전문가를 포함한 중-장기 프로젝트팀 또는 전문컨설팅팀을 파견하여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AfT 사업모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보자.

220) 제2단계의 실시과정을 시뮬레이션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장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한 대상작물 결정 - 수입국 또는 국내에서의 상품의 시장성 및 경쟁성, 잠재력 등의 마케팅조사를 실시한다. (2) 가치사슬(value chain)분석을 통한 대상지역 결정 - 투입자원과 시간을 고려하며 대상작물의 사슬 전체를 조사하여 과제 및 제약조건을 명확히 하고 대상지역을 결정한다. (3) 마케팅의 핵심이 되는 파트너선정 - 시장과 직결된 다음 단계의 공정의 파트너(가공회사 등)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민간협력(PPP)을 고려할 수 있다. (4) 이해관계자(stakeholder) 간의 네트워크 구축 - 시장성이 있는 상품 및 시장이 요구하는 품질에 대한 정보수집, 각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한다. (5) 생산 후의 가공유통단계의 니즈확인하고 대응 - 소매점이나 가공공장의 상품품질, 안정성을 갖춘 생산관리방법을 검토한다. (6) 진척현황의 모니터링과 필요한 대응책 - 프로젝트의 실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수정을 한다. (7) 초기단계 종료 후의 지속적인 투입 - 고객의 니즈에 따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생산 및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8) 전체 평가와 외부 정보공개 - 실시결과에서 교훈을 얻음과 동시에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표4.10에서 제시한 5가지 사업모델은 각 협력대상국의 니즈 및 국별계획, 빈곤감소 계획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 KOICA의 시스템 내에서는 '무역정책 및 규범' 및 '무역개발'에 대한 니즈는 행정제도팀에서, '무역인프라'는 산업에너지팀 및 정보통신팀에서, '무역개발'의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진흥 및 '생산역량강화'는 지역개발(농어촌개발)팀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나, 중요한 것은 각 분야별 팀 별로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Aft를 각 국별(또는 지역별) 계획수립단계에서 총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계획함으로써, 각 분야별 팀의 사업으로 프로젝트화(세부화)되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굳이 KOICA의 강점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연수사업 및 전문가파견 등을 통해 실시되는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지원, 즉, '무역정책 및 규범', '무역개발' 등의 '무역관련 기술지원(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RTA)'을 우선적으로 선택, 강화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관련 인프라정비는 지금까지 강조하였듯이 지역기구 또는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무역은 성장의 원동력이며, 지속적인 성장은 빈곤감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그 어떠한 국가도 국제무역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또한 빈곤에서 탈출한 경험을 한 경우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하라以南 아프리카의 경우, 1980년대의 대외채무위기로 인해 1990년대 전반의 연평균 GDP는 0.8%로 극히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연 평균 3.9%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1995년부터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의 일부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가 급격히 증가한 것과 토고, 레소토, 우간다 등의 수출경쟁력이 개선되는 등 부분적이기는 하나 농업개혁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의 무역 및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개도국이 글로벌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국제무역의 혜택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교통 및 운송 인프라, 선진국의 보호주의 무역정책, 관료주의, 군부에 의한 무역통제, 비효율적인 관세 및 행정정책, 민간기업의 산업기술부족 등 극복해야 할 무역장벽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내전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낮은 민주화 및 거버넌스 수준, 시장왜곡적인 경제정책, 전형적인 단일경작 농업경제로 인한 부가가치산물 부족, 인프라 및 인재역량부족, 높은 관세수입 의존율 등이 다른 개도국에 비해 심각하며, 글로벌 다자무역시스템에 대한 참여 및 혜택도 현저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오늘날 WTO 및 유엔, 세계은행, OECD/DAC, 다양한 지역 개발기구 등을 포함하는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경제성장 및 개발, 빈곤감소의 원동력이 되는 무역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EU 회원국을 비롯한 선진공여국들은 국내 무역정책과 개발원조를 유기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개도국이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직면하는 무역장벽을 해소하여,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빈곤감소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개도국의 공급자 측면의 지원을 위한 무역역량강화 및 무역관련 인프라정비, 무역조정비용 지원 등의 AfT는 협력대상국의 WTO 협상능력의 강화, 다자무역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 수출확대 등의 유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협력대상국의 빈곤감소에 기여한다고 기대되고 있다. 아직 AfT의 추가적 재원확보와 실질적인 집행, 국제 및 지역, 국가별 모니터링 및 평가메커니즘의 구축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남아있으나, 공여국 및 다자기구는 EIF 및 JITAP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AfT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는 한 국가의 국제공헌을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로만 판단하지는 않는다. 국제사회의 총체적 공헌은 ODA와 함께 개도국의 노동자유입, 기후변화 등에 대한 환경대책, 무역 및 투자의 촉진, 기술개발 등의 포괄적인 대외 경제협력의 틀 가운데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의 선진공여국은 대외원조정책을 전거함에 있어 ODA뿐만 아니라 무역의 자유화 및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을 종합적인 '정책의 일관성'가운데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와 2000년 5월에 제정된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을 통한 무역 전략을 일관적인 맥락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 미국 등 AfT를 주요 개발협력분야로 책정하고 있는 공여국의 경우, '무역개발(trade development)'지원의 일환으로 공여국 민간기업의 투자 및 사업환경 조성,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민간기업 간의 공동사업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즉, AfT를 주요 대 개도국 원조방침 및 전략으로 책정하고 있는 공여국들은 협력대상국의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과 공여국기업의 대 협력대상국 투자 및 진출확대의 시너지효과를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점은 우리정부의 대 아프리카 AfT는 정부가 지향하는 대국민참여를 동반한 무상원조 및 민간협력(PPP) 확대와,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진출 및 무역확대까지 연계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개발원조는 어떠한가. 우리정부는 2005년 홍콩자료회의와 2006년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2007년 11월의 제1차 '무역을 위한 원조 국제평가(Global Aid for Trade Review)'회의의 공식발제 등을 통해, 최빈국의 시장접근 개선과 무역역량 강화, 한-아프리카 간 통상-투자확대에 대한 지원확대

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무역관련 지원에 대한 명확한 원조전략 및 계획 또한 부재했다. 특히,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이 무역관련 원조금액의 구체적인 증액수치를 공약하며 국제원조사회에서의 존재감을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구체적인 확대계획 및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기아 및 기후변동, HIV/AIDS, 물 부족, 여아들의 낮은 취학률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과연 무역 및 투자관련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개도국의 수출지향적 경제개발 수립 및 세계경제참여가 과연 개도국의 성장과 빈곤감소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개도국 주민들의 지속적인 생계유지(sustainable livelihood)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이 개도국에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대부분의 선진공여국은 MDGs의 Goal 8에도 언급되었듯 최빈국(LDCs)의 무역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기타 MDGs 목표의 달성을 가속화하는 주요 촉매가 된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시키고 AfT를 개발원조의 우선순위로 채택, 추진하고 있다. 즉, 무역확대 및 무역활성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도국의 빈곤감소 및 인간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AfT는 국제적인 공통 어젠다로, 공여국이라면 국제적 기조에 편승하여 재정적인 공약 및 구체적인 무역관련 개발프로그램 실행 등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 한 가지 인식해야 할 것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원조보다 공정한 무역(fair trade)을 전제로 한 무역시스템에 참여하고자 하는 니즈(needs)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2008년도에 약 40개국의 아프리카 정상들이 참가한 TICAD IV와 최근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확대 및 경제협력관계 강화의 추세를 가늠해 보아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AfT와 관련된 KOICA의 연수생초청사업과 전문가파견 사업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아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 아프리카의 경제현황 및 국제사회의 AfT 지원 실태, KOICA의 향후 AfT의 추진방향을 분석, 평가한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외부의 경쟁압력으로 인해 국내의 경쟁력이 없는 기업 및 산업의 도산으로 인한 실업증대 등의 사회, 경제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자유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혜택이 일부의 부유층 및 도시부의 주민들에게만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무역 및 투자관련 협력 프로그램은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및 빈곤감소 전략의 거시적인 프레임워크가운데 항상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내의 열악한 산업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인재육성 정책과 함께, 기본적인 기초교육 및 고등교육을 통한 인재육성방안이 병행되는 관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빈곤감소 전략을 전개함에 있어, MDGs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및 교육 등 협력대상국의 사회개발지원과 함께 협력대상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반한 경제개발지원의 관점을 전략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전략적인 양자간 원조와 다자협력을 통해 개발정책과 무역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무역과 개발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협력대상국의 다자무역시스템 참여를 통한 빈곤감소 및 지속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에서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프리카의 무역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원조방식이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프리카를 단순히 기아와 전염성질환의 만연으로 허덕이는 '수원국(recipient country)'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현재 또는 장래에 국제무역시스템의 한 주체로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파트너(partner country)'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APPENDIX 1.〉

2008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국제개발지표(WDI)

	Population	GNI per capita		Life expectancy at birth	Primary completion rate	Access to improved water source	Carbon dioxide emissions	Total debt service	Internet users
	millions	Atlas ^a \$	PPP ^b \$	years	% of relevant age	%	per capita metric tons	% of exports ^c	per 100 people
	2006	2006	2006	2006	2006	2004	2004	2006	2006
Sub-Saharan Africa	782	830	1,690	50	60	56	0.9	8.3	3.8
East Asia & Pacific	1,899	1,860	4,360	71	98	79	3.3	5.0	11.1
Europe & Central Asia	461	4,810	9,800	69	95	92	7.1	20.0	19.2
Latin America & Caribbean	556	4,790	8,690	73	99	91	2.5	23.0	18.4
Middle East & North Africa	311	2,510	6,710	70	91	89	3.9	10.4	13.8
South Asia	1,499	770	2,290	64	80	84	1.0	7.5	4.9
Selected economies									
Angola	17	1,970	3,890	42	..	53	0.5	..	0.5
Benin	9	530	1,250	56	65	67	0.3	7.4	8.0
Botswana	2	5,570	11,730	50	95	95	2.4	0.9	3.3
Burkina Faso	14	440	1,130	52	31	61	0.1	..	0.6
Burundi	8	100	320	49	36	79	0.0	40.4	0.7
Cameroon	18	990	2,060	50	58	66	0.2	15.9	2.0
Cape Verde	1	2,130	2,590	71	92	80	0.6	4.7	5.7
Chad	10	450	1,170	51	31	42	0.0	..	0.6
Congo, Dem. Rep.	61	130	270	46	..	46	0.0	..	0.3
Congo, Rep.	4	1,050	2,420	55	73	58	1.0	2.4	1.9
Côte d'Ivoire	19	880	1,580	48	43	84	0.3	1.4	1.6
Ethiopia	77	170	630	52	49	22	0.1	6.8	0.2
Ghana	23	510	1,240	60	71	75	0.3	4.9	2.7
Kenya	37	580	1,470	53	93	61	0.3	6.5	7.6
Madagascar	19	280	870	59	57	46	0.2	5.7	0.6
Malawi	14	230	690	48	55	73	0.1	..	0.4
Mali	12	460	1,000	54	49	50	0.1	5.6	0.6
Mozambique	21	310	860	42	42	43	0.1	1.9	0.9
Mauritania	3	760	1,970	64	47	53	0.9	..	3.3
Mauritius	1	5,430	10,640	73	92	100	2.6	7.1	14.5
Niger	14	270	630	56	33	46	0.1	5.9	0.3
Nigeria	145	620	1,410	47	76	48	0.8	15.8	5.5
Rwanda	9	250	730	46	35	74	0.1	9.6	0.7
Senegal	12	760	1,560	63	49	76	0.4	11.8	5.4
Sierra Leone	6	240	610	42	..	57	0.2	9.6	0.2
South Africa	47	5,390	8,900	51	100	88	9.4	6.7	10.9
Sudan	38	900	1,780	58	47	70	0.3	4.1	9.3
Tanzania	39	350	980	52	74	62	0.1	3.4	1.0
Uganda	30	300	880	51	54	60	0.1	4.6	2.5
Zambia	12	630	1,140	42	84	58	0.2	3.6	4.3
Zimbabwe	13	340	170	43	..	81	0.8	..	9.2

Note: Figures in *italics* are for years or periods other than those specified.

a. Atlas method; see WDI Statistical methods. **b.** Purchasing Power Parity; see WDI table 1.1 About the data. **c.** Exports refer to exports for goods and services, receipts of employee compensation for nonresident workers, investment income, and workers' remittances.

Source: 200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World Bank, 11 April 2008.

【출처】 World Bank (2008b)

〈APPENDIX 2.〉

'무역을 위한 원조(AiT)': 공여국 및 주요 분야별 (2002-2005년 평균)
약정금액, US 백만 달러 (2005년 불변가격)

	무역정책 및 규범	경제 인프라	생산역량 강화*	총 무역을 위한 원조(AiT)	공여국의 총 ODA 중 AiT의 비율(%)
호주	7.1	51	97	155	15.6
오스트리아	0.1	21	19	41	17.1
벨기에	3.6	48	158	210	26.8
캐나다	16.2	38	226	280	20.3
덴마크	0.5	181	193	374	37.3
핀란드	2.1	26	41	70	20.4
프랑스	3.9	330	325	660	21.9
독일	13.3	520	606	1140	27.3
그리스	0.3	7	5	12	7.6
아일랜드	0.1	7	21	28	9.7
이탈리아	2.2	137	86	225	43.3
일본	50.8	3749	964	4764	62.3
룩셈부르크	0.2	1	13	14	12.1
네덜란드	16.5	130	365	512	24.8
뉴질랜드	1.4	3	12	17	13.9
노르웨이	8.0	84	141	233	19.0
포르투갈	0.1	33	8	41	19.9
스페인	1.3	229	158	388	34.3
스웨덴	15.0	95	101	210	17.1
스위스	27.9	30	165	222	33.9
영국	26.8	298	386	711	22.9
미국	219.7	1581	1622	3423	25.4
DAC 공여국 합계	417	7,601	5,712	13,731	31.3
AiDF	43	240	291	574	48.0
AsDF	31	330	363	724	49.1
EC	171	1261	971	2403	36.4
IDA	32	1747	1320	3099	47.3
IDB 특별기금	4	110	108	222	48.2
〈표4.10〉 KOICA의 AiT 사업모델 IFAD	..	15	146	161	40.1

* 주: '생산역량강화'는 '무역개발'을 포함한 금액

【출처】 WTO/OECD (2007b)

〈APPENDIX 3.〉

EU 회원국의 '무역관련 원조(TRA)' 규모 (2001-2006)

TRA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Total 2001- 2006	% of EU total 2001- 2006	2006 %	Average
Austria	0.24	0.47	0.58	2.76	6.72	4.95	15.72	0.2	0.3	2.62
Belgium*	9.89	8.05	51.09	38.64	26.81	23.71	158.20	2.0	1.5	26.37
Bulgari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0.0	0.00
Cyprus*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0.0	0.00
Czech Republic*	0.48	0.00	0.00	0.00	0.06	0.03	0.56	0.0	0.0	0.09
Denmark	10.82	4.45	34.93	2.75	0.50	48.34	101.78	1.3	3.1	16.96
Estonia*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0	0.0	0.00
Finland	4.09	5.82	9.20	0.00	16.05	30.53	65.68	0.8	1.9	10.95
France	9.65	125.90	85.47	56.90	85.47	147.77	511.17	6.4	9.3	85.19
Germany	90.86	76.52	91.07	68.67	90.89	27.89	445.90	5.6	1.8	74.32
Greece	4.38	6.03	2.37	1.03	0.06	3.52	17.38	0.2	0.2	2.90
Hungary*	0.11	0.00	0.01	0.00	0.00	0.00	0.12	0.0	0.0	0.02
Ireland	0.44	0.40	0.59	0.30	0.69	5.61	8.03	0.1	0.4	1.34
Italy	7.11	4.49	2.68	7.16	1.86	5.73	29.04	0.4	0.4	4.84
Latvi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0.0	0.00
Lithuania*	0.00	0.00	0.00	0.00	0.00	0.06	0.06	0.0	0.0	0.01
Luxembourg*	0.25	0.05	0.01	0.04	0.04	0.00	0.39	0.0	0.0	0.06
Malt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0.0	0.00
Netherlands	44.68	54.58	125.27	65.19	76.16	195.24	561.12	7.1	12.3	93.52
Poland*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0.0	0.00
CPortugal	1.10	15.32	2.28	1.35	1.90	0.99	22.94	0.3	0.1	3.82

(표 계속)

TRA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Total 2001- 2006	% of EU total 2001- 2006	2006%	Average
Romani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0,0	0,00
Slovaki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0,0	0,00
Slovenia*	0,00	0,00	0,00	0,00	0,00	1,00	1,00	0,0	0,1	0,17
Spain	1,07	2,41	5,20	1,57	6,13	46,92	63,29	0,8	3,0	10,55
Sweden	10,21	4,58	17,31	8,60	31,05	22,07	93,83	1,2	1,4	15,64
United Kingdom	79,95	49,17	76,16	38,56	64,00	77,08	384,92	4,8	4,9	64,15
MS Total	275,34	358,24	504,23	293,52	408,37	641,44	2481,13	31,2	40,5	413,52
EC	912,44	755,00	922,52	958,06	983,46	940,90	5472,38	68,8	59,5	912,06
Grand total	1187,78	1113,24	1426,75	1251,58	1391,83	1582,34	7953,51	100,0	100,0	1325,59
% MS	11	14	20	12	16	26	100			
% EC	17	14	17	18	18	17	100			
% Grand total	15	14	18	16	17	20	100			

※ 주: Doha Development Database를 활용하였으나, *표시된 국가는 Monterrey 설문결과와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출처】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8)

〈APPENDIX 4.〉

「EU '무역을 위한 원조(AfT)' 전략」

(2007.10.15 정식채택)

CONCLUSIONS OF THE COUNCIL AND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MEETING WITHIN
THE COUNCIL ON

EU Strategy on Aid for Trade:

Enhancing EU support for trade-related needs in developing countries

1. Aid for Trade and the EU's Overall Aims

The EU Strategy on Aid for Trade (AfT) will help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Community (EC) to support all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to better integrate into the rules-based world trading system and to more effectively use trade in promoting the overarching objective of eradication of povert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

As an element of the broader development policies and objectives to reach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supporting demand-driven reforms of trade related policies as well as removing supply side constraints related to productive capacities, economic infrastructure and trade related adjustment, AfT is crucial for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implement and benefit from trade agreements.

AfT is an important complement to trade negotiations, in particular to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amplifying the potential benefits for developing countri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n ambitious, comprehensive and balanced agreement on DDA, the EU notes that AfT is a complement, but not a substitute, to a successful outcome of the DDA. AfT also aims at helping

ACP regions and countries to fully benefit from trade opportunities and reforms, including those of the EPAs, while the collective EU delivery of AfT does not depend on the outcome of the EPAs negotiations,

The EU AfT Strategy aims at delivering an effective response to countries own trade-related priorities in the context of their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It will help the EU achieve better policy coherence in the areas of development and trade. It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improving complementarity and promoting the division of labour among EU donors, in particular by putting into practice the EU Code of Conduct on Complementarity and Division of Labour in Development Policy . In this context, the subsequent wording "the EU will" should be understood as referring to Member States and the Commission acting on a voluntary and flexible basis, fully respecting existing competences.

The Strategy is developed in the follow up to the 2006 WTO AfT Task Force recommendations and covers all the AfT categories it identified:

- (1) Trade policy and regulations (TPR); (2) Trade development (TD); (3) Trade-Related infrastructure; (4) Building productive capacity; (5) Trade-related adjustment; (6) Other trade-related needs.

The first two categories above are referred to as Trade-Related Assistance (TRA). By the end of 2005, the EU made specific financial commitments in relation to these two areas, pledging to strive to increase its collective expenditures on them to € 2 billion per year from 2010 – € 1 billion of it in Community aid and € 1 billion in bilateral aid from the Member States. Following the 2006 WTO Task Force recommendations, categories 3 – 6 are referred to as the "wider aid for trade agenda". Although no specific financial commitments have been listed by the EU for these categories, the OECD figures show that the EU is already a major donor in trade-related infrastructure and productive capacity.

The Strategy is composed of actions organised under the following pillars:

Increasing the collective volumes of EU AfT within the ambitious development commitments to raise overall EU aid gradually;

Enhancing the pro-poor focus and quality of EU AfT;

Increasing EU-wide and Member States' donors capacity in line with globally agreed aid effectiveness principles;

Building upon, fostering and supporting ACP regional integration processes with an ACP-specific angle of the Joint EU AfT Strategy;

Supporting effective AfT monitoring and reporting.

2. Quantitative AfT Ambitions within the Gradual Increase of Overall EU Aid

- (a) The EU will strive to increase its total AfT in coherence with the gradual increases in overall development aid towards the established 2010 and 2015 targets and in response to needs prioritized by partner countries. This will ensure additionality and that increases in AfT are not achieved at the expense of support to other priority sectors and programmes essential to reach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 (b) As regards Trade-Related Assistance (TPR and TD) and in striving to increase Member States' and EC's collective spending on TRA to € 2 billion annually by 2010, the EU will:

Implement the road map to reach this target taking into account the Commission's assessment that a linear trend from the present situation to the Member States' € 1 billion target would imply that their collective commitment should rise to at least € 600 million in 2008;

Measure and monitor the EU's collective financial commitment on TRA on the basis of the agreed definitions at the time the commitment was made (December 2005);

If Member States collectively are not on track to reach the 2010 target in TRA commitments, analyse and address the underlying reasons.

- (c) The EU will promote an effective response to the wider AfT agenda (i.e. AfT beyond TRA) by continuing and strengthening Member States' and EC support for demand-driven, pro-poor development strategies, which incorporate building productive capacities, trade-related infrastructure and trade-related adjustment, and by encouraging enhanced participation of other international donors and the private sector. To help achieve this, the EU will:

Ensure that, by 2010, the increase in total EU expenditure on trade development is not undertaken at the expense of the overlapping AfT category "building productive capacity"; this will be monitored by tracking the parallel evolution of these two categories;

Seek to establish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notion of "trade-related adjustment" at EU level, in conjunction with promoting a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this concept;

Enhanc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 other AfT donors, 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cluding emerging donor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WB)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 (d) The EU will encourage partner countries to increase, with Member States' and EC support as required, their parallel efforts to include AfT in their poverty reduc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mplementation plans and national budgets in ways which ensure the demand-driven, pro-poor character of their national trade development strategies. To support this, the EU will:

Seek to broaden significantly the inclusion of trade and AfT in poverty reduc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by 2010, through:

- o enhanced joint policy dialogue;
- o supporting partner countries' use of participatory processes, including local civil societies and trade actors (e.g. private sector, consumer organizations, producer organizations) when establishing poverty reduc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 o engagement with other donor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that end.

Give special attention to countries/regions with no or little inclusion of trade and AfT in their poverty reduc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 (e) The EU agrees to enhance the Integrated Framework (IF), in particular by active in-country participation, and, recognizing that non-LDCs also face important AfT needs, to further intensify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creating a similar in-country process for these countries, especially IDA-only countries. To achieve this, the EU will:

In LDCs, engage in the enhanced IF (EIF) and in particular its in-country process, by

- lending full support to partner countries efforts to manage the DTIS process, including acting as a donor facilitator if so requested by the government;
- taking advantage of the DTIS process to engage in a policy dialogue serving to translate trade-related needs in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PRS) and equivalent, and giving appropriate follow up to identified priorities;

- ensuring that EU decisions to support AfT programmes include explicit consideration as to how the programs take account of needs identified during the IF process;

- continuing to take an active rol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concerning the IF at multilateral level.

In non-LDC countries, continue to engage in coordinated, country-led trade needs assessments, response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with EU and other donors and agencies present in a country, including by standing ready to appoint an EU lead donor to facilitate this process; particular attention will be given to IDA-only countries.

3. Enhancing the Pro-poor Focus and Quality of EU AfT

The EU will intensify its activities in a range of areas in order to ensure the quality of its AfT. In particular, in response to partner countries' own trade-related priorities, in the context of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it will help facilitate, implement and adjust to trade reform and liberalization paying specific attention to their impact on poverty reduction.

(a) To enhance the impact of AfT on sustainable poverty reduction and the further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as a cross-sector dimension of AfT, the EU will:

Continue to assist governments in their efforts to include poverty and gender issues in trade needs assessments and subsequent action plans, including by supporting active involvement of relevant community-based organisations;

Exchange information with partners regarding best practices in maximising the poverty reduction impact of AfT.

(b) To promote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of AfT, the EU will:

Continue to support partner governments' capacity and stakeholders' engagement to incorporate sustainability concerns into national trade strategies, trade regimes and AfT programmes, including effective management of impact assessment processes and to follow up on their recommendations;

Support essential cross sector dimensions including gender issues and the promotion of positive interactions between AfT and the decent work agenda;

Explore possibilities for developing shared EU approaches to relevant sustainability claims systems, including fair trade, in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in particular local ones and small producers.

(c) To promote local ownership and broad stakeholder participation, the EU will:

Continue to support partner countries' capacity to establish and manage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in needs assessments and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trade and AfT strategies and programmes. In LDCs, this should be made in coherence with IF process. This includes specific support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ssociations and marginalised groups such as small-scale farmers and women's groups, to participate in and contribute more effectively to such processes;

Identify and share best practices on designing and implementing AfT programmes, in particular trade development/productive capacity programmes, in close cooperation and synergy with the private sector. In this context, the role and practical experience of multilateral trade agencies should be considered.

- (d) To achieve greater complementarity and cooperation between donors, the EU will:

Step up efforts to prepare joint response strategies relating to AfT for countries and regions during the period until 2010; and, in this context, take joint action, including other donors as appropriate, to respond to key AfT priorities identified through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s. This will help prepare the ground for enhanced engagement in Joint EU Programming exercises;

Step up joint efforts to support the capacity of partner countries to manage AfT with a comprehensive approach, using sector-wide approaches (SWAPs) where appropriate;

Continue to pursue joint delivery modalities in AfT, including by

- o establish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different joint delivery modalities are appropriate for AfT and exchange best practices;
- o continuing efforts to identify areas and countries in which there is potential for increasing use of joint delivery modalities and striving to increase significantly its use by 2010, on a voluntary basis and where conditions are met,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co-financing;
- o exploring further the role that sector and general budget support can play in AfT;

Examine the feasibility of adapting and applying the experience of technical assistance instruments provided in the context of EU accession and neighbourhood countries to TRA in other countries and regions;

Reinforce its dialogue on AfT with all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i.e. the multilater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World Bank, regional banks and the European Investment Bank (EIB), in order to identify potential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joint initiativ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business / productive capacity financing and infrastructure.

- (e) With a view to supporting regional integration and achieving greater complementarity and cooperation at regional level, the EU will:

Collectively upgrade AfT at regional level so as to further strengthen its support to regional organisations' implementation of their regional integration strategies, including by:

- o supporting regional organisations' capacity to organise coordination and wider stakeholder involvement at the regional level;
- o assisting, where needed, regional organisations in the further identification and prioritisation of trade-related needs;
- o providing adequate responses to priorities, using joint delivery mechanisms where possible.

Support the translation of regional needs into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ies, taking care to channel support activities to the appropriate geographical level of intervention .

4. Increasing EU-wide and Member State donors' capacity in line with globally agreed aid effectiveness principles

The Council has agreed to adjust and strengthen human resources as necessary to implement the Joint EU AfT Strategy. It has also asked that joint EU initiatives to develop and share expertise amongst the EU and with other donors be explored. To achieve this, the EU will:

Exchange information – in accordance with and using the synergies of the relevant WTO/OECD questionnaires – on present AfT capacities of Member States, at headquarters and in countries and regions;

Exchange information on training events and identify opportunities for opening them to other Member States and Commission officials and for organising joint training activities;

Regularly exchange information, best practice and expertise amongst EU donors on key issues of AfT (for example: AfT and poverty reduction; AfT and indicators; AfT at regional level; use of different delivery modalities in the

field of Aft) and on approaches to multilateral level activities, e.g. at informal meetings of EU Trade and Development Experts.

5. Building upon, fostering and supporting ACP regional integration processes with an ACP-specific angle of EU Aft

As stressed by the Council in its conclusions relating to th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EPAs) , one aim of the EU Aft Strategy is to support ACP regions and countries to take full advantage of increased trading opportunities and maximise the benefits of trade reforms, including those of the EPAs, while the collective EU delivery of Aft does not depend on the outcome of such negotiations. This includes the range of principles and actions outlined in the previous sections of this Strategy,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 EU Code of Conduct on Complementarity and Division of Labour in full respect of existing competences. The points below indicate certain ACP specific angles of this:

- (a) The Council Conclusions on Aft of May 2007 state that the Strategy will indicate the overall share of the Community and Member States increase in TRA available for needs prioritised by ACP countries. In the context of efforts to increase the collective EU TRA to € 2 billion annually by 2010, in the range of 50% of the increase will be available for these ACP needs. The spend will reflect policy and programming decisions at country and region levels.
- (b) A prerequisite to deliver on both TRA and wider Aft commitments is to enhance the integration of trade-related concerns into ACP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mplementation plans or national budgets. In this context, the EU will enhance its dialogue on these issues with ACP countries and other don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present at country level, with a view to achieving integration of trade concerns into the ACP countries' poverty reduc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by 2013.

- (c) To promote an effective response to the wider Aft agenda in ACP countries and regions, the EU will:

Continue and strengthen the support to trade-related infrastructure through increased support to national, regional and continental initiatives, including the EU Africa Infrastructure Partnership, giving priority to use of existing schemes;

Reinforce support to productive capacity building on the basis of coherent regional and national strategies, involving local stakeholders and the private sector, and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business and investment climate;

Contribute to the absorption of net fiscal impact resulting from tariff liberalisation in the context of EPAs in full complementarity with fiscal reforms;

On the basis of the above, seek to increase support to the wider Aft agenda in a manner which is proportionate to overall ODA increase in ACP countries;

Further explore the contribution that could be made by the EIB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 (d) With a view to the application of aid effectiveness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 and in order to support strengthened regional integration of ACP regions, the EU will:

Support the technical capacity of regional and national ACP institutions for identifying, prioritising, designing, implementing and monitoring Aft regional programmes;

Work together within the Regional Preparatory Task Forces (RPTF) during the EPAs negotiations, and subsequently within the framework of country and regional donor coordination and in the relevant institutions, to support the identification of EPA related needs and coordination of support activities at regional and national level; this coordination will aim at ensuring good interaction between AfT national and regional programmes;

Focus regional AfT in ACP countries on initiatives which target a deepening of regional integration, such as elimination of remaining intra-regional barriers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strengthening and modernising regional customs rules and arrangements, strengthening and harmonising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promoting and strengthening regional conformity assessment institutions, as well as the integration of financial and capital markets and the free movement of persons;

Further support capacity development in ACP countries and regions in trade-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in the areas of competition policy and law, investment,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rticipate on a voluntary basis in regionally-owned funding mechanisms, such as the regional funds, on the basis of a structured dialogue between regional institutions and EU donors, whilst seeking contributions from other donors and institutions, notably regional development banks and the World Bank as well as from regional and national ACP authorities;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AfT related to EPAs through arrangements to be established in this context and in coherence with regular aid programme monitoring processes.

6. Monitoring, Reporting and Evalu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are an integral part of the overall AfT agenda. They are needed to assess AfT delivery,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d should

overall support a results-based management of AfT. They should be carried out in a participatory manner, based on locally-owned mechanisms and institutions wherever possible.

In order to avoid duplication of work, the EU will ensure maximum synergy between AfT monitoring and reporting foreseen within the WTO/OECD, the monitoring foreseen in the context of the IF and the EU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its own AfT Strategy, as well as its reporting on the Monterrey commitments on AfT. The need to develop coherent reporting practices for all categories of Af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line with the above, the EU will

Engage fully in the WTO AfT reviews by:

- o supporting high quality CRS reporting to the OECD ;
- o completing the WTO/OECD donor questionnaires and submitting them also under joint EU cover via the Commission;
- o developing jointly specific additional information relevant to the WTO Regional reviews where appropriate;
- o supporting partner countries in providing locally-owned contributions to this exercise, both at country and at the regional level; in the case of LDCs, ensuring synergies with reporting under the IF;
- o participating actively in drawing conclusions of the global review and acting on them,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avoiding "AfT orphans".

Agree on guidance for coherent reporting practices at EU level by end-2007, in particular on trade development and trade-related adjustmen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har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for monitoring and evaluating impacts of Af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poverty reduction and gender issues.

Organise technical exchanges on monitoring and evaluation results, and draw joint conclusions on their implications in order to constantly improve and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EU's AfT.

Share information, knowledge and expertise with partner countries and with other stakeholders.

7. Implementation and Review

The Council invites Member States and the Commission to ensure that this Strategy is implemented as set out in this document. It entrusts the Commission, in cooperation with Member States, with the tasks of organising technical meetings in order to a) define a clear work plan specifying follow-up activities at the various levels of intervention (national, regional and multilateral) and identifying the actors (Commission and Member States) which will be responsible for taking forward these activities, and b) prepare progress reports.

The Council will review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Strategy in the context of the Monterrey reporting.

〈APPENDIX 5.〉

우리정부의 제1차 Global Aid-for-Trade Review 연설문

(2007.11.21)

Stat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nk you, Mr. Chairman,

Let me begin by expressing my delegation's sincere thanks to DG Pascal Lamy and the WTO Secretariat for hosting the 1st Global Aid-for-Trade Review.

Mr. Chairman,

As a country which has made its economic growth through export-driven development policy unde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Korea fully understands how important Aid-for-Trade is for developing countries. Even though we are still en ro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our resources for Aid-for-Trade are limited, we are making every effort to share our own experience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Aid-for-Trade.

Korea has contributed 200,000 USD to UNCTAD IF - related programs for 2006. For the WTO/DDA Global Trust Fund, Korea has donated about 1.4 million USD. Also, in response to the urgent request for establishing EIF, my government was able to pledge one million dollars at the Pledging Conference held in Stockholm, Sweden last October. Korea is also working with UNDP to support training program for trade officials in sub-saharan countries with an earmarked 1.6 million USD.

In parallel with these multilateral contributions, Korea has implemented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focusing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urrently,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double its aid for technical assistance by 2010 and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Aid-for-Trade program.

Mr. Chairman,

I can hardly go beyond what has already been pointed out by the distinguished panelists and colleagues, but allow me to add a few general comments.

Firstly, I would like to underline the importance of this exercise at this point of time. Having participated in the previous sessions, I come to believe that now is the time to start drawing the overall picture of Aid-for-Trade. Putting together all ideas and sorting out key strategies should be done as soon as possible.

Secondly, my delegation echoes the view that effective monitoring and evaluation is vital for better Aid-for-Trade. This will contribute to the sound management of the results of Aid-for-Trade as well as provide incentives for donors to increase the Aid-for-Trade flow. In this context, the catalytic role of WTO as a coordinator in Aid-for-Trade is important in order to fully integrate developing countries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irdly, the next steps for Aid-for-Trade should be to prioritize our work and concentrate on the chosen programs, given the limited financial resources and various requirements of individual donors and beneficiaries. In this respect and bearing in mind the long term goals, I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lesson we learned from our experience that human resource development is the most fundamental basis for stead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r. Chairman,

In conclusion, together with other donors, we stand ready to share our own experience and lessons gained through our national development with developing countries so that they can benefit from the opportunities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creates, and we look forward to observing substantial progress in this process.

Thank you.

참고문헌

【국내문헌】

- 박복영 외 (2007)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 개도국 적용 가능성-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세종연구소 (2008) 『제19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한국의 대 개도국 외교-평가와 제언』 세종연구소
- 정재호, 이명현 (2005) 『특혜관세제도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국제협력단 (2007a) 「2007 국제기구 사업실적」, 한국국제협력단
- (2007b)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2008~2010)」, 한국국제협력단
- (2008) 「Annual Report 2007」, 한국국제협력단

【국외문헌】

- AfDB/OECD (2007) *African Economic Outlook*
- Africa Institute of South Africa (2006) *Inside AISA*, Numbers 3 and 4: OCT/DEC 2006 ISSN 1607-4238
- BMZ (2003) *Making Gloalization Equitable: Trade-Related Cooperation*, BMZ
- Carin Smaller (2006) *Can Aid Fix Trade?: Assessing the WTO's Aid for Trade Agenda*,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
- COMESA (2008) *Report of Third Meeting of the COMESA Ministers responsible for Gender and Women's Affairs*, CS/WIB/M/III/5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8)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Aid for Trade Monitoring Report 2008*, SEC(2008) 431
- Danielle Langton (2008) *U.S.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hip with Sub-Saharan Africa: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nd Beyond*,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K (2004) *Making Globalization a Force for Good*, DTI

DFID (2000) *Eliminating World Poverty: Making Globalization Work for the Poor*, DFID

(2005) *DFID's work on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2005–2007*, DFID

(2008) *Annual Report 2008*, DFID

Dominique Njinkeu, et al. (2008) *Aid for Trade and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2008) *Economic Report on Africa 2008: Africa and the Monterrey Consensus– Tracking Performance and Progress*, UNECA

European Commission (2006) *Making Trade Work for Development*, European Commission

Frankel, Jeffrey A., and David Romer (1999) *Does Trade Cause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9 No.3

Harry G. Broadman (2007) *Africa's Silk Road: China and India's New Economic Frontier*, The World Bank

Ivar Foss, et al. (2004) *Development of Trade in Africa*, Sida and Norad

Jan Willem Gunning, et al. (1994) *Trade, Aid and Development: Essays in Honour of Hans Linnemann*, St. Martin's Press

Jean-Marc Faurès and Guido Santini (2008) *Water and the Rural Poor: Interventions for improving livelihoods in sub-Saharan Africa*, FAO

Jens Andersson (2007) *Review of Sida Support to Trade in Light of International Experience: Pre-study for a possible evaluation of Sida's trade-related assistance*, UTV Working Paper 2007:2, Sida

Jian-Ye Wang (2007) *IMF Working Paper: What Drives China's Growing Role in Africa*, IMF

Kim Forss and Mikael Lundstrom (2004) *An Evaluation fo the program " Export Promotion of Organic Products from Africa", phase II*, Sida

Marc Proksch and Noordin Azahari (2007) *Aid for Trade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sia-Pacific Trade and Investment Review: Vol.3, No.2

Martyn Davies, et al. (2008) *How China delivers development assistance to Africa*,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Stellenbos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05) *Trade, Growth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Danish Support for the Promotion of Trade,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08) *From Goals To Results in Danish Development Assista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 (2008) *Finland's Aid for Trade Action Plan (2008–201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orway (2007) *Aid for Trade: Norway's Action Pl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orway

NEPAD (2005) *A SUMMARY OF NEPAD ACTION PLANS*, NEPAD

OECD (2006a) *Aid for Trade: Making it Effective*, OECD

(2006b) *Trade-Related Assistance: What Do Recent Evaluations Tell Us?*, OECD

(2006c) *Promoting Pro-Poor Growth: Infrastructure*, OECD

(2006d) *The Rise of China and India: What's in it for Africa*, OECD

(2008) *Business for Development 2008: Promoting Commercial Agriculture in Africa*, OECD

OECD/DAC (2001) *Strengthening Trade Capacity for Development*, OECD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08) *2008 Comprehensive Report on U.S. Trade and Investment Policy Toward Sub-Saharan Africa and Implementation of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Rodríguez F. and Rodrik D. (2001) *Trade Policy and Economic Growth: A Skeptic's Guide to the Cross-National Evidence*, NBER Macroeconomics Annual 2000, MIT

Sachs, J.D. et al. (2004) *Ending Africa's Poverty Trap*,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2004

Sida (2005) *Sida's Policy for Trade-Related Development Cooperation*, Sida

(2007) *Plan for Sida's trade-related development cooperation*, Sida

(2008) *Sida's Portfolio within Trade-Related Development Cooperation*, News from the Trade Team, April

Swedish Chambers (2007) *Annual Report 2006*, Swedish Chambers

UNCTAD (2004)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04: Linking International Trade with Poverty Reduction*, United Nations

(2007)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Transnational Corporations, Extractive Industries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2008) *Aid for Trade and Development: Global and Regional Perspectives*, United Nations

UNDP (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UNDP

UNIDO (2007) *A Practical Contribution to Aid for Trade*, UNIDO

USAID (2002) *Foreign Aid in the National Interest: Promoting Freedom, Security, and Opportunity*, USAID

(2003) *U.S. Contributions to Trade Capacity Building: Improving Lives Through Trade & Aid*, USAID

(2005) *Participation, Empowerment, Partnership: Seeking Sustainable Results through U.S. Trade Capacity Building*, USAID

World Bank (2004) *World Development Report 2005: A Better Investment Climate For Everyone*, World Bank 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Global Monitoring Report 2007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Gender Equality and Fragile States*,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2008a) *Africa Development Indicators 2007*,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2008b)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The World Bank

WTO/OECD (2007a) *2006 Joint WTO/OECD Report on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TRTA/CB)*, WTO/OECD

(2007b) *Aid for Trade at a Glance 2007: 1st Global Review*, WTO/OECD

(2007c) *Aid for Trade at a Glance 2007: Country and Agency*

Chapters, WTO/OECD

秋山孝允 笹岡雄一編著 (2006) 『日本の開発援助の新しい展望を求めて』 国際開発高等教育機構(FASID)

FAO日本事務所 (社) FAO協会 (2003) 『サハラ以南のアフリカの食糧不足と農業・農村開発』

Overseas Merchandise Inspection Co., Ltd.(OMIC) (2007) 『ODAと農産物貿易に関する政策一貫性に関する基礎調査』 農林水産省

外務省 (2007) 『政府開発援助(ODA)白書 2007年版』

清田博幸 (2001) 『サブサハラ・アフリカにおける貿易政策改革：貧困削減への取り組みにおける開発援助の有効性』 JICA国際協力総合研修所

是永東彦 (2005) 『EUの対アフリカ政策と農業』 農林水産省

小林啓明 (2007) 「中国の援助政策一対外援助改革の展開一」 開発金融研究所報第35号 国際協力銀行(JBIC)

白井早由里 (2005) 『マクロ開発経済学一対外援助の新潮流』 有斐閣

JICA (2005) 「課題別指針：アプローチと重点項目一民間セクター開発 貿易投資促進」 企画・評価部企画課

(2008a) 「Monthly JICA 2008 May」 JICA

(2008b) 「Monthly JICA 2008 August」 JICA

JICA国際協力総合研修所 (2003) 『開発課題に対する効果的アプローチ：貿易・投資促進』 JICA

宋志勇 (2007) 「中国とアフリカの貿易・投資」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田中太朗他 (2005) 「サブ・サハラアフリカの貧困削減のための政策提言一ウガンダの経済状況から考察する」 ISFJ 政策フォーラム

西川潤 高橋基樹 山下彰一編著 (2006) 『国際開発と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 日本評論社

平野克己 (2007) 「アフリカ経済一成長と低開発」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湊直信他 (2007) 「援助国中国の対アフリカ政策」 最新開発援助同行レポート No.24

【자료 및 자문제공】

BMZ Mr. Birgit Hofmann
Division 315 – Globalisation, Trade and Investment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FID Ms. Fiona Shera
Head of Trade and Development
Trade Policy Unit

EC Mr. Franco Conzato
Délégation Permanente de la Commission
européenne auprès de l'OCDE et de l'UNESCO

JICA Mr. Tadashi Suzuki
Operations Strategy Department

Sida Mr. Erik Ringborg
Advisor, Trade Team
Division for Market Development
Department for Infrastructure and Economic Cooperation

USAID Mr. Bruno Cornelio
Senior Economics Officer
Economic Growth, Environment & Agriculture
Offi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연구자료 정책연구 2008-10-150
ISBN 978-89-88133-79-8 10320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통한 KOICA의 대 아프리카 지원방안

발행	2008년 12월
편집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우: 461-833)
전화	031)7400-114
팩스	031)7400-655
홈페이지	www.koica.go.kr
인쇄	비전테크(주)

비매품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함